

# 조지아의 통관환경 연구

2021. 9

정재현 · 김다람

# 조지아의 통관환경 연구

2021. 9

정재현 · 김다량

## 연구진

### 연구책임자

정재현 부연구위원

### 공동연구원

김다량 특수전문직 3급(관세사)

# 목 차

I. 개관 .....	9
1. 일반 개황 .....	9
2. 경제 개황 .....	11
가. 주요 경제지표 .....	11
나. 對세계 수출입 동향 .....	12
다. 외국인 투자 동향 .....	16
3. 우리나라와의 교역 관계 .....	18
4. 자유무역협정(FTA) 현황 .....	22
가. 개요 .....	22
나. 조지아-EU DCFTA .....	23
다. 조지아-중국 FTA .....	26
II. 관세 및 통관제도 .....	28
1. 관세 및 통관 관련 조직 및 법 .....	28
가. 관세 및 통관 관련 조직 .....	28
나. 관세 및 통관 관련 법령 .....	33
2. 관세의 신고와 납부 .....	35
가. 관세 신고 및 담보 설정 .....	35
나. 관세 납부 .....	37
3. 관세평가제도 .....	39
가. 개요 .....	39

나. 거래가격 결정방법(제1방법) .....	40
다. 그 외의 과세가격 결정방법 .....	44
4. 관세율 및 품목분류 제도 .....	49
가. 관세율 제도 .....	49
나. 품목분류 제도 .....	62
5. 원산지 제도 .....	63
가. 개요 .....	63
나. 원산지 증명서 발급제도 .....	65
다. 원산지 결정 기준 .....	69
6. 권리구제제도 .....	72
가. 사전심사제도(advance ruling) .....	72
나. 사후구제제도 .....	75
7. 벌칙 .....	77
가. 개요 .....	77
나. 관세벌칙의 종류 .....	79
8. 골드리스트와 AEO 제도 .....	83
가. 단순화된 수출입 통관 절차(Gold List) .....	83
나.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AEO) .....	85
Ⅲ. 수출입 통관 절차 .....	88
1. 개관 .....	88
가. 관세행정의 현대화(전자통관제도) .....	88
나. 통관 장소의 종류 .....	89
다. 운송수단의 종류 .....	91
2. 수입 통관 절차 .....	92
가. 개요 .....	92
나. 수입신고 준비 등 .....	95

다. 수입 통관 제출서류 .....	98
라. 반입신고와 수입신고 등 .....	99
마. 서류심사 및 물품검사 .....	101
바. 통관 후 심사 .....	104
3. 수출 통관 절차 .....	105
4. 조지아 통관 동향 .....	109
가. UNECE의 2018년 조지아의 통관 동향 .....	109
나. 조지아 국세청의 2020년 통관 동향 .....	111
다. 현지 애로사항 .....	112
참고문헌 .....	115

## 표 목차

〈표 I-1〉 조지아 주요 경제지표 .....	12
〈표 I-2〉 최근 5년간 조지아 對세계 수출입 현황 .....	13
〈표 I-3〉 2020년 조지아 수출입 상위 10개국 .....	14
〈표 I-4〉 2020년 조지아 수출입 상위 10개 품목 .....	15
〈표 I-5〉 최근 5년간 조지아 외국인 투자(FDI) 현황 .....	16
〈표 I-6〉 최근 5년간 조지아 산업별 외국인 투자(FDI) 현황 .....	17
〈표 I-7〉 최근 3년간 조지아 외국인 투자(FDI) 상위 10국가 .....	18
〈표 I-8〉 최근 5년간 조지아 對우리나라 수출입 현황 .....	19
〈표 I-9〉 2020년 조지아 對우리나라 수출입 상위 10품목 .....	20
〈표 I-10〉 최근 5년간 조지아 對우리나라 주류 수출 현황 .....	21
〈표 I-11〉 최근 10년간 조지아 對우리나라 담배 수입 현황 .....	21
〈표 I-12〉 조지아 자유무역협정(FTA) 현황 .....	22
〈표 II-1〉 조지아 「관세법」 구성 .....	33
〈표 II-2〉 WTO의 농산물 구분 .....	50
〈표 II-3〉 WTO의 비농산물 구분 .....	51
〈표 II-4〉 조지아 관세율 분포 요약 .....	55
〈표 II-5〉 조지아 관세율 분포: 양허관세 및 최혜국대우 관세 .....	56
〈표 II-6〉 조지아 산업별 관세율 수준 .....	57
〈표 II-7〉 관세율 부과 품목(5%) .....	59

〈표 II-8〉 관세율 부과 품목(12%) .....	60
〈표 III-1〉 수입 통관 시기에 따른 통관 절차 .....	94

## 그림 목차

[그림 II-1] 조지아 재무부 조직도 .....	30
[그림 II-2] 조지아 국세청 조직도 .....	32
[그림 II-3] 조지아의 원산지 증명서 자율발급 문구 .....	68
[그림 II-4] 조지아-중국 FTA 역내가치기준 계산식 .....	71
[그림 II-5] 조지아의 AEO 로고 .....	87
[그림 III-1] 수출입에 활용되는 운송수단의 종류 .....	92

# I. 개관

## 1. 일반 개황<sup>1)</sup>

- 정식 국가명칭은 조지아공화국(Republic of Georgia)으로 동유럽과 서아시아가 교차하는 캅카스(Kavkaz) 지역에 위치한 국가임
  - 국토 총면적은 6만 9,700㎢로 한반도 면적이 약 1.44배 넓음
  - 북쪽에 러시아, 남서쪽에 터키, 남쪽에 아르메니아 그리고 동남쪽으로 아제르바이잔과 국경을 접하고, 서쪽으로 흑해에 접하여 바다를 통해 그리스와 우크라이나로 이어짐
  - 유럽 대륙국가보다 낮은 위도에 위치하고, 높은 산맥으로 이루어진 지형으로 국토 전역이 높은 산지와 포도재배에 적당한 계곡으로 이뤄져 있고 산맥 사이에 완만한 경사의 평야가 펼쳐져 있음
  - 기후는 전반적으로 습도가 높은 대륙성 아열대기후이나, 서부는 습한 아열대성 기후, 동부는 아열대부터 온난지대까지 다양한 기후대가 존재함
  
- 총인구는 2021년 7월 추정 약 493만 3,674명으로 세계 126위 수준임
  - 조지아의 민족은 조지아인(86.8%), 알제리인(6.3%), 아르메니아인(4.5%), 기타 러시아인, 오세티아인, 우크라이나인, 그리스인 등(2.3%)으로 구성됨
  
- 행정구역은 9개의 지방(Regions)과 두 개의 자치공화국(autonomous republics), 1개의 시로 구분되며, 수도는 동남부 쿠라강 유역에 위치한 트빌리시(Tbilisi)임

---

1) CIA World Factbook, "GEORGIA," 2020. 9, <https://www.cia.gov/the-world-factbook/countries/georgia/>, 참고하여 저자 작성, 검색일자: 2021. 5. 26.

- 9개의 지방은 구리아(Guria), 이메레티(Imereti), 카헤티(Kakheti), 크베모 카르틀리(Kvemo Kartli), 므츠헤타 므티아네티(Mtskheta Mtianeti), 라차레치 후미크베 모스바네티(Racha-Lechkhumi and Kvemo Svaneti), 사메그렐로제모스바 네티(Samegrelo and Zemo Svaneti), 삼츠헤자바헤티(Samtskhe Javakheti), 시다 카르틀리(Shida Kartli)로 구성됨<sup>2)</sup>
- 두 개의 자치공화국은 조지아의 북서부에 위치한 압하지야(Abkhazia)와 남서부에 위치한 남오세티야(Yuzhnaya-Osetiya)이며, 수도는 각각 수후미(Sukhumi)와 츠хин발리(Tskhinvali)임
  - 두 공화국 모두 1992~1993년 조지아와 내전을 거쳤으며, 러시아의 중재로 휴전 중이나 사실상 자치공화국으로서의 지위를 향유함
- 공용어는 조지아어이며 조지아 내 소수민족 언어인 민그렐어(Megrelian), 라즈어(Laz), 스반어(Svan) 등이 있음
- 종교는 조지아정교(83.4%), 이슬람교(10.7%), 아르메니아 사도(2.9%), 기타 가톨릭, 개신교, 유대교 등(1.2%)의 순으로 조사됨
- 화폐단위는 라리(Lari, GEL)이며, 1라리는 100테트리(Tetri)에 해당됨
  - 1, 2, 5, 10, 20, 50테트리, 1, 2라리 동전과 1, 2, 5, 10, 20, 50, 100, 200라리 지폐가 통용됨
  - 2021년 8월 기준 공식환율(GEL/USD)은 3.10987라리임<sup>3)</sup>
    - 2014년까지 약 1.7라리를 유지하던 환율은 2015년부터 약 2.0라리를 넘었고, 2017년 1월 약 2.66라리로 환율이 크게 올라 최근 5년 중 2020년 3월에 3.49749라리로 가장 높은 환율수치를 기록했음

2) 남오세티야(Yuzhnaya-Osetiya)의 이탈지역은 시다 카르틀리의 북부, 이메리티와 라차레치 후미크 베모스바네티의 동부, 그리고 므츠헤타 므티아네티의 서부 일부지역으로 이루어져 있음

3) XE, "USD to GEL Chart," 2021. 8. 23., <https://www.xe.com/currencycharts/?from=USD&to=GEL&view=5Y>, 검색일자: 2021. 8. 23.

- 정부체제는 의회민주주의국가이며 의원 내각제 및 다당제 시스템을 갖추
  - 대통령은 직접선거로 선출되며 임기 5년이며 1회에 한해 연임이 가능함<sup>4)</sup>
  - 총리는 정부수반으로 내각을 구성해 정부를 운영하며 행정입법을 제정하고 의회에 대한 책임을 짐
    - 국가를 대신해 국제조약을 체결하는 조지아의 대외적 대표자임
  - 의회는 단원제이며 의원 수는 150명이고 임기는 4년임

## 2. 경제 개황

### 가. 주요 경제지표

- 조지아의 경제성장률은 2020년 -6.1%로 코로나19의 여파에 따른 저성장 기조를 보였으나 2021년 3.5%로 반등하여 점차 회복 중임
  - 명목GDP와 1인당 명목GDP는 2016년부터 점차 상승하다가 2020년에 동시 하락하였고 2021년 들어 상승세로 돌아와 2018년 수준으로 회복됨
  - 실업률은 10~20% 구간에서 등락을 거듭하는 등 높은 실업률을 나타내며, 2016년 21.7%에서 소폭 감소 추세이다가 2021년 21.9%로 다시 증가함
  - 소비자물가증감률은 변동폭이 큰데, 2017년 6%로 최고치를 기록했다가 2021년 3.8%로 기간 중 중위 수준임

---

4) 2018년 헌법수정으로 대통령선거 시스템이 개편되었는데, 개편방식에 의하면 150명의 의원과 아브하지야와 아자리야의 자치공화국 대표, 자치권을 갖는 지방정부 대표 150명 등 총 300명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이 대통령을 선출할 계획임

〈표 1-1〉 조지아 주요 경제지표

(단위: 십억조지아라리, 라리, %)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sup>1)</sup>
명목GDP	34.921	36.612	38.386	40.307	37.849	39.173
1인당 명목GDP	9,365.80	9,825.11	10,292.14	10,825.14	10,219.20	10,568.64
경제성장률	2.9	4.8	4.9	5.1	-6.1	3.5
실업률	21.7	21.6	19.2	17.6	18.5	21.9
소비자물가 증감률 <sup>1)</sup>	2.135	6.035	2.615	4.853	5.202	3.804

주: 1) Inflation rate, average consumer price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https://www.imf.org/en/Publications/WEO/weo-database/2021/April/select-subjects?c=915>; [https://www.imf.org/external/datamapper/NGDP\\_RPCH@WEO/GEO](https://www.imf.org/external/datamapper/NGDP_RPCH@WEO/GEO); 조지아 통계청, "Employment and Unemployment," <https://www.geostat.ge/en/modules/categories/683/Employment-Unemployment>, 검색일자: 2021. 6. 8.

## 나. 對세계 수출입 동향

- 2020년 조지아의 對세계 수출은 3,342백만달러, 수입은 8,011백만달러로 총교역량은 11,353백만달러에서 -4,669백만달러의 對세계 무역적자를 기록
  - 조지아의 對세계 수출은 2019년 3,765백만달러로 2016~2020년 기간 중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며, 2017년에는 전년 대비 29.5% 증가한 2,735백만달러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
  - 조지아의 對세계 수입은 2018년 9,131백만달러로 2016~2020년 기간 중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며, 증가율 또한 전년 대비 15% 증가하여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
  - 조지아의 對세계 교역규모는 2019년 12,831백만달러로 2016~2020년 기간 중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며, 증가율 또한 전년 대비 17% 증가하여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
  - 조지아의 對세계 무역수지는 2016년 -5,175백만달러에서 2018년 -5,769백만

달러로 증가하다가 점차 감소하여 2020년 -4,669백만달러로 2016~2020년 기간 중 최저치를 기록

〈표 1-2〉 최근 5년간 조지아 對세계 수출입 현황

(단위: 백만달러, %)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수출	2,113	-4.1	2,735	29.5	3,362	22.9	3,765	12.0	3,342	-11.2
수입	7,288	-5.6	7,939	8.9	9,131	15.0	9,066	-0.7	8,011	-11.6
교역규모	9,401	-5.3	10,674	13.5	12,493	17.0	12,831	2.7	11,353	-11.5
무역수지	-5,175	-6.2	-5,204	0.5	-5,769	10.8	-5,301	-8.1	-4,669	-11.9

자료: 한국무역협회, 「세계무역」, <https://stat.kita.net/stat/world/trade/CtrlmpExpList.screen>,  
검색일자: 2021. 6. 10.

- 2020년 기준 조지아의 최대 수출국은 중국으로 476백만달러를 수출하였으며, 이는 총수출액의 약 14.3%에 해당함
  - 중국에 이어 아제르바이잔, 러시아, 불가리, 우크라이나, 터키, 아르메니아 순으로 많은 수출을 하였음
    - 스위스와 스페인은 전년 대비 각 28.9%, 82.6%의 증가율을 보이며 상위 수출국에 이름을 올림
- 2020년 기준 조지아의 최대 수입국은 터키로 1,407백만달러를 수입하였으며, 이는 총수입액의 약 17.5%에 해당함
  - 터키에 이어 러시아, 중국, 미국,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순으로 많은 수입을 하였음
    - 브라질은 전년 대비 39.3%의 증가율을 보이며 상위 수입국에 이름을 올림
- 조지아는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2020년 6백만달러를 수출, 58백만달러를 수입하였으며, 이는 각각 41위, 26위의 규모임

- 수출의 경우 전년 대비 -33.3%를 기록하여 전 세계 수출 증감률인 -11.2%보다 큰 폭으로 줄었음
- 수입은 전년 대비 -13.4%를 기록하여 전 세계 수입 증감률인 -11.6%과 비슷한 수준임

〈표 1-3〉 2020년 조지아 수출입 상위 10개국

(단위: 백만달러, %)

수출				수입			
순위	국가명	금액	증감률	순위	국가명	금액	증감률
1	중국	476	108.8	1	터키	1,407	-12.8
2	아제르바이잔	441	-11.6	2	러시아	888	-9.0
3	러시아	441	-11.6	3	중국	709	-17.5
4	불가리아	312	9.9	4	미국	541	38.7
5	우크라이나	217	-11.4	5	아제르바이잔	493	-11.5
6	터키	191	5.4	6	아르메니아	422	58.1
7	아르메니아	188	-54.4	7	독일	406	-8.4
8	스위스	107	28.9	8	우크라이나	391	-5.8
9	스페인	84	82.6	9	이탈리아	183	-19.0
10	미국	80	-39.4	10	브라질	163	39.3
41	한국	6	-33.3	26	한국	58	-13.4

자료: 한국무역협회, 「세계무역」, <https://stat.kita.net/stat/world/trade/CtrProdImpExpList.screen>,  
검색일자: 2021. 6. 10.

- 조지아가 2020년 가장 많이 수출한 품목은 구리광으로 전년 대비 12.3% 증가한 729백만달러를 수출하였음
  - 신변장식용품(8위)과 귀금속광(10위)의 전년 대비 증감률은 각각 34%, 751.3%으로 높은 수치를 보임
  - 포도주(4위), 기타 주류(5위) 및 물(6위) 등 원자재 수출도 주류를 이룸

- 2020년 조지아가 가장 많이 수입한 품목은 승용자동차이며, 781백만달러를 수입하였고 이는 주요 수출품목(2위)과 유사함
- 2020년 대부분의 수입 상위품목들의 전년 대비 증감률은 하락하였으나, 귀금속광(9위)의 경우 1,106.8%라는 굉장히 높은 수치를 보임
- 광물성연료 에너지인 석유조제품(3위)과 석유가스(5위)의 전년 대비 증감율은 각각 -34.2%, -10.1%로 하락함
  - 기계류인 승용자동차(1위), 통신기기(6위), 화물자동차(10위)의 전년 대비 증가율은 각각 -29.5%, -22.3% 및 -0.1%로 나타남

〈표 1-4〉 2020년<sup>1)</sup> 조지아 수출입 상위 10개 품목

(단위: 백만달러, %)

순위	수출				수입			
	품목명	HS code	금액	증감률	품목명	HS code	금액	증감률
1	구리광	2603	729	12.3	승용자동차	8703	781	-29.5
2	승용자동차	8703	404	-44.9	구리광	2603	533	-11.6
3	합금철	7202	247	-18.5	석유조제품	2710	498	-34.2
4	포도주	2204	210	-5.6	소매의약품	3004	327	-7.9%
5	기타 주류	2208	132	3.8	석유가스	2711	294	-10.1
6	물	2201	116	-12.7	통신기기	8517	164	-22.3
7	소매의약품	3004	99	-42.6	밀과 메슬린	1001	107	-0.9
8	신변장식용품	7108	97	34.0	시가와 켈런	2402	88	-15.4
9	기타 견과류	0802	94	40.9	귀금속광	2616	77	1,106.8
10	귀금속광	2616	89	751.3	화물자동차	8704	72	-0.1

주: 1) 추계치

자료: 조지아 통계청, "External Trade," <https://www.geostat.ge/en/modules/categories/637/export> 및 <https://www.geostat.ge/en/modules/categories/638/import>, 검색일자: 2021. 6. 10.

## 다. 외국인 투자 동향

- 조지아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는 2020년 616백만달러였으며, 이는 전년 대비 52.9% 감소한 금액임
  - 외국인 직접투자는 2017년 1,978백만달러로 전년 대비 19.7%로 증가하다가 점차 소폭 하락 후 2020년 코로나19 위기로 크게 위축됨

〈표 1-5〉 최근 5년간 조지아 외국인 투자(FDI) 현황

(단위: 백만달러, %)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sup>1)</sup>
FDI	1,652.6	1,978.3	1,306.3	1,310.8	616.9
증감률	-4.4	19.7	-33.9	0.3	-52.9

주: 1) 추계치

자료: 조지아 통계청, "Foreign direct Investments," <https://www.geostat.ge/en/modules/categories/191/foreign-direct-investments>, 검색일자: 2021. 6. 11.

- 2020년 조지아에 외국인 직접투자가 가장 많았던 산업군은 재무부문에 400백만 달러의 투자를 유치하였으며, 최근 5년간 투자액이 크게 증가하였음
  - 채굴 분야(2위)의 2020년 투자액은 101백만달러, 부동산업(3위)은 71백만달러로 높은 투자액을 기록하였음
  - 호텔 및 레스토랑업의 경우 2016~2019년 기간 동안 100백만달러 수준의 안정적인 투자액을 유치하였으나 코로나19 위기로 인해 2020년 들어 -221백만달러의 투자 감소를 나타냄

〈표 1-6〉 최근 5년간 조지아 산업별 외국인 투자(FDI) 현황

(단위: 천달러)

분야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sup>1)</sup>
농림축산업	9,611.1	14,147.4	-1,796.0	5,700.4	8,901.5
채굴업	49,730.7	51,835.2	62,278.6	52,359.0	101,494.9
제조업	123,557.5	99,343.2	169,523.8	115,349.4	68,085.7
에너지 부문	145,008.1	278,975.1	122,337.3	261,558.0	5,808.1
건설업	176,511.7	176,713.0	173,752.2	35,273.6	62,194.6
호텔 및 레스토랑	119,912.8	109,486.4	82,259.2	120,163.7	-221,461.5
운송업	575,719.0	475,462.0	203,345.0	54,765.6	12,525.1
통신업	87,073.9	49,469.9	-40,273.4	72,063.8	48,010.7
건강 및 사회복지업	29,572.5	5,917.7	12,383.1	13,535.5	10,206.6
부동산업	55,475.8	222,644.1	130,716.7	8,661.8	71,808.4
재무 부문 <sup>2)</sup>	124,062.2	308,777.0	274,021.5	272,126.4	400,345.7
기타 <sup>3)</sup>	156,341.9	185,510.6	117,741.9	299,216.5	48,945.7

주: 1) 추계치

2) 보험업 및 소액금융업 포함

3) 무역업, 교육업, 기타 사회 및 개인 봉사활동 커뮤니티 등 포함

자료: 조지아 통계청, "Foreign direct Investments," <https://www.geostat.ge/en/modules/categories/191/foreign-direct-investments>, 검색일자: 2021. 6. 11.

□ 최근 3년간 조지아에 가장 많은 투자를 한 국가는 영국으로 2018년 3위, 2019년과 2020년 1위를 차지함

○ 네덜란드, 터키, 룩셈부르크 및 러시아 등 유럽권의 투자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미국과 파나마도 꾸준히 투자순위에 올라오고 있음

〈표 1-7〉 최근 3년간 조지아 외국인 투자(FDI) 상위 10국가

(단위: 백만달러)

순위	2018년		순위	2019년		순위	2020년 <sup>1)</sup>	
	국가명	금액		국가명	금액		국가명	금액
1	아제르바이잔	246	1	영국	236	1	영국	307
2	네덜란드	210	2	터키	175	2	네덜란드	172
3	영국	182	3	아일랜드	133	3	터키	108
4	미국	103	4	미국	111	4	미국	93
5	파나마	76	5	네덜란드	100	5	몰타	27
6	중국	75	6	파나마	76	6	룩셈부르크	26
7	체코	75	7	룩셈부르크	68	7	러시아	25
8	러시아	73	8	러시아	54	8	독일	23
9	룩셈부르크	50	9	중국	43	9	덴마크	22
10	터키	49	10	일본	39	10	이라크	17
13	한국	32	15	한국	22	28	한국	2

주: 1) 추계치

자료: 조지아 통계청, "Foreign direct Investments," <https://www.geostat.ge/en/modules/categories/191/foreign-direct-investments>, 검색일자: 2021. 6. 11.

### 3. 우리나라와의 교역 관계

- 조지아는 2020년 우리나라에 6,259천달러를 수출하였으며, 우리나라로부터 58,213천달러를 수입하여 51,954천달러의 무역수지 적자를 보였음
  - 조지아의 對우리나라 수출은 2017년 17,450천달러로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점차 감소하여 2020년 전년 대비 16.1% 감소하였음
  - 우리나라로부터의 수입은 2018년 103,402천달러로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2020년 전년 대비 17.3% 감소하는 등 최근 5년간 증가 후 감소의 양상을 보임

- 무역수지는 지속적인 적자를 보이고 있으며, 2018년 88,189천달러의 가장 많은 적자를 보였음

〈표 1-8〉 최근 5년간 조지아 對우리나라 수출입 현황

(단위: 천달러, %)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sup>1)</sup>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수출	14,635	464.4	17,450	19.2	15,213	-12.8	7,456	-51.0	6,259	-16.1
수입	49,900	-15.1	81,688	63.7	103,402	26.6	70,432	-31.9	58,213	-17.3
교역규모	64,535	5.2	99,138	53.6	118,615	19.6	77,889	-34.3	64,472	-17.2
무역수지	-35,264	-37.2	-64,237	82.2	-88,189	37.3	-62,975	-28.6	-51,954	-17.5

주: 1) 추계치

자료: 조지아 통계청, "External Trade," <https://www.geostat.ge/en/modules/categories/637/export> 및 <https://www.geostat.ge/en/modules/categories/638/import>, 검색일자: 2021. 6. 10.

- 조지아가 2020년 우리나라에 가장 많이 수출한 품목은 구리광으로 전년 대비 31.8% 증가한 2,347천달러를 수출하였으며, 차량용 부분품, 플라스틱과 고무 기타제품 및 주스 등의 수출도 많았음
  - 자동차 부분품(2위)과 엔진 부분품(10위)은 전년 대비 각각 62.3%, 49% 증가했으며, 플라스틱(3위)과 고무 기타제품(4위)도 전년 대비 각각 116.3%, 177.4% 크게 증가함
  - 과일주스(6위)와 포도주(7위)도 전년 대비 각각 767.7%, 348.5%의 높은 수치로 수출이 증가함
- 조지아는 2020년 우리나라로부터 승용자동차를 가장 많이 수입하였으며, 약 11,278천 달러 규모의 수입이 이루어졌음
  - 진단 실험실용 시약과 담보된 참조물질(2위)이 전년 대비 1,149.1%의 매우 높은 수치로 수입이 증가했으며, 화장품(7위)과 프로필렌(9위)이 각각 222.8%, 200.4%로 증가함

〈표 1-9〉 2020년 조지아 對우리나라 수출입 상위 10품목

(단위: 천달러, %)

수출					수입			
순위	품목명	HS code	금액	증감률	품목명	HS code	금액	증감률
1	구리광	2603	2,347	31.8	승용자동차	8703	11,278	-2.7
2	자동차부분품	8708	822	62.3	진단 실험실용 시약 및 담보된 참조물질	3822	10,920	1149.1
3	플라스틱 기타제품	3926	569	116.3	철판 (폭 60cm이상, 도금)	7210	7,230	-12.2
4	구리 웨이스트와 스크랩	7404	400	-71.6	불도저와 그레이더	8429	6,765	17.1
5	차량용 조명 신호기기	8512	373	33.5	소매의약품	3004	3,942	9.6
6	과실주스	2009	323	767.7	석유조제품	2710	3,030	-25.9
7	포도주	2204	300	348.5	화장품	3304	1,915	222.8
8	가황고무 기타제품	4016	105	177.4	에틸렌	3901	995	-18.3
9	납의 괴	7801	92	-88.9	프로필렌	3902	890	200.4
10	엔진 부분품	8409	68	49.0	공기타이어 (신품)	4011	778	-39.4

자료: 조지아 통계청, "External Trade Portal," <http://ex-trade.geostat.ge/en>, 검색일자: 2021. 6. 10.

□ 조지아의 과실주스(HS 2009호), 포도주(HS 2204호) 및 주류(HS 22류, 포도주 제외)의 최근 5년간 우리나라로의 수출 현황을 살펴보면, 2020년도에 수출금액이 급격하게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음<sup>5)</sup>

○ 과실주스의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수출 상세내역을 살펴보면 2013년 0.01천 달러와 2014년 2.77천달러로 집계되었으며, 수출규모가 상당히 작았음

5) 조지아의 최근 5년간 한국산 주류 수입 현황을 살펴보면 과실주스(HS 2009호)와 포도주(HS 2204호)는 한건도 없었으며, 포도주를 제외한 주류의 경우 2016년 943.54천달러, 2017년 359.30천달러, 2018년 133.20천달러, 2019년 187.31천달러 및 2020년 222.70천달러로 집계됨

〈표 1-10〉 최근 5년간 조지아 對우리나라 주류 수출 현황

(단위: 천달러, %)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과실주스	2.78 <sup>1)</sup>	-	14.82	433.09	40.64	174.22	37.26	-8.31	323.29	767.65
포도주	23.10	-61.99	61.38	165.71	162.09	164.07	67	-58.66	300.51	348.52
주류	64.68	-79.01	52.09	-19.46	5.87	-88.73	1,635.99	27,770.36	36.85	-97.75
총합	87.78	-	128.29	-	208.6	-	1,740.25	-	660.65	-

주: 1) 2010~2016년 총합

자료: 조지아 통계청, "External Trade," <https://www.geostat.ge/en/modules/categories/637/export> 및 <https://www.geostat.ge/en/modules/categories/638/import>, 검색일자: 2021. 6. 21.

- 조지아의 담배(HS 24류)의 최근 10년간 우리나라로부터 수입 현황을 살펴보면, 2012년 1,058천달러로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이후 수입량이 소폭 감소하다가 최근 5년에 들어서 크게 감소함
- 담배의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수입 상세내역을 살펴보면 2019년도에만 127.68천 달러가 집계되어 최근 5년간 우리나라산 담배 수입량이 2010~2015년에 비해 확연히 감소한 것을 알 수 있음

〈표 1-11〉 최근 10년간 조지아 對우리나라 담배 수입 현황

(단위: 천달러, %)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20년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담배	1,058.10	22.79	876.61	-17.15	872.71	-0.44	805.43	-7.70	127.68	-84.14

자료: 조지아 통계청, "External Trade," <https://www.geostat.ge/en/modules/categories/637/export> 및 <https://www.geostat.ge/en/modules/categories/638/import>, 검색일자: 2021. 6. 21.

## 4. 자유무역협정(FTA) 현황

### 가. 개요

- 조지아는 2021년 6월 기준 EU와의 ‘심층 및 포괄적인 자유무역지대협정(Deep and Comprehensive Free Trade Area, 이하 DCFTA)’을 포함하여 총 16개의 FTA가 발효 중임

〈표 1-12〉 조지아 자유무역협정(FTA) 현황

구분	FTA 협정 종류	범위	시행일자
1	FTA 설정에 관한 CIS 협정 <sup>1)</sup>	상품	1994. 12. 30.
2	조지아-러시아 FTA	상품	1994. 5. 10.
3	조지아-우크라이나 FTA	상품	1996. 6. 4.
4	조지아-아제르바이잔 FTA	상품	1996. 7. 10.
5	조지아-아르메니아 FTA	상품	1998. 11. 11.
6	조지아-카자흐스탄 FTA	상품	1999. 7. 16.
7	조지아-투르크메니스탄 FTA	상품	2000. 1. 1.
8	FTA 설정에 관한 괌(GUAM) 국가 간 협정 <sup>2)</sup>	상품	2003. 12. 10.
9	조지아-몰도바 FTA	상품	2007. 5. 19.
10	조지아-터키 FTA	상품	2008. 11. 1.
11	조지아-우즈베키스탄 FTA	상품	2010. 10. 15.
12	조지아-EU DCFTA <sup>3)</sup>	상품 및 서비스	2014. 9. 1.
13	조지아-EFTA <sup>4)</sup>	상품 및 서비스	2017. 9. 1.
14	조지아-중국	상품 및 서비스	2018. 1. 1.
15	조지아-홍콩	상품 및 서비스	2019. 2. 13.
16	조지아-영국	상품 및 서비스	2021. 1. 1.

주: 1)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벨라루스, 조지아, 몰도바, 카자흐스탄, 러시아, 우크라이나,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및 키르기스 공화국

2) 아제르바이잔, 조지아, 몰도바 및 우크라이나

3) DCFTA의 섹션IV(무역 및 무역관련 문제)의 경우 EU와 유럽원자력공동체, EU 회원국 및 조지아 간 연합협정의 일부임

4) 아일랜드,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 및 스위스

자료: WTO, "Georgia and the WTO," [https://www.wto.org/english/thewto\\_e/countries\\_e/georgia\\_e.htm](https://www.wto.org/english/thewto_e/countries_e/georgia_e.htm), 검색일자: 2021. 6. 11.; UNECE, *Regulatory and Procedural Barriers to Trade in Georgia*, 2018, p. 106, [https://unece.org/fileadmin/DAM/trade/Publications/ECE\\_TRADE\\_443E\\_Georgia.pdf](https://unece.org/fileadmin/DAM/trade/Publications/ECE_TRADE_443E_Georgia.pdf), 검색일자: 2021. 5. 10.

- 2018년 기준 조지아는 중국 및 홍콩과 각각 FTA를 체결했으며 인도 및 이스라엘과 각각 FTA 체결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검토 중임<sup>6)</sup>
- 2018년 조지아-중국 FTA 및 조지아-홍콩 FTA가 발효되면서, 조지아는 EU 시장 수출을 겨냥한 중국의 외국인 직접투자의 선택지가 될 가능성이 높아짐

## 나. 조지아-EU DCFTA

- 조지아-EU DCFTA의 연혁은 2008년 10월부터 시작되었으며 2009년 EU 위원회의 협상 시작을 위한 권장분야 마련,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공식회담을 진행, 그리고 2014년 9월 1일 일부 협정내용이 발효된 후 2016년 7월 최종 발효의 순서를 거침<sup>7)</sup>
- 2008년 10월 13일부터 14일까지 EU 위원회의 실태 조사 무역 사절단은 DCFTA 협상을 시작하기 위해 트빌리시를 방문하였음
- 2009년 3월, EU 위원회는 조지아 정부에 DCFTA 협상을 위한 조지아의 준비에 관한 4개의 권고 사항을 전달함
  - 기술무역장벽, 위생 및 식물 위생적 조치(식품 안전), 지적 재산권 및 경쟁에 대한 기술적 장벽
- EU 요구 사항에 따라 조지아 정부는 권장 분야(지적 재산권 제외)에 대한 포괄적인 전략을 개발함
  - 식품 안전 전략과 입법과 유사한 프로그램
  - 표준화, 인증, 적합성 평가, 기술 규정 및 계측 분야의 전략 등
  - 경쟁 정책 전략
- 조지아-DCFTA 협정 회담은 공식적으로 2011년 12월에 시작되어 6회의 토론을 거쳐 2013년 7월에 종료됨

6) Michael Emerson and Tamara Kovziridze, "Deepening EU-Georgian Relations - what, why and how?," *Rowman & Littlefield International*, 2018, p. 44.

7) DCFTA, "Agreement," <http://www.dcfta.gov.ge/en/agreement>, 검색일자: 2021. 6. 11.

- 2013년 11월 28일부터 29일까지 리투아니아 수도인 빌뉴스(Vilnius)에서 열린 ‘동부 파트너십 정상회담(Eastern Partnership Summit)’에 따라 협정이 시작됨
  - 2014년 6월 27일, 조지아 총리는 브뤼셀에서 협정에 서명했고, 2014년 9월 1일, 협정의 일부 부분이 발효되었으며, 나머지 부분은 2016년 7월 1일에 최종 발효되면서 2016년 7월 18일 조지아 의회는 협정을 비준함
- 조지아-EU DCFTA 발효에 따라, 양자 간 공산품에 대해 관세가 완전 철폐되었으며, 농산물의 경우 일부 품목에 대해 수수료와 관세할당 등이 적용됨<sup>8)</sup>
- 조지아에서 EU로 수출되는 특정 과일과 야채에는 종가세 성격의 EU 진입가격 수수료(EU Entry Price Fee)가 적용됨<sup>9)</sup>
    - EU는 對조지아 총 관세품목의 0.3%(총 28개)에 대해 EU에서 정한 진입가격보다 낮은 송장가격으로 수입된다면 EU 수입업체가 고정 가격과 송장가격의 차액을 부담하도록 함
    - 단 EU 수입신고금액이 EU 진입가격과 같거나 그 이상인 경우에는 추가적인 부담이 없음
  - 조지아에서 EU로 수출되는 마늘에는 연간 220톤의 관세할당량이 부과되며 합계가 초과되면 MFN 관세율이 적용됨
  - EU는 對조지아의 농산물과 가공농산물 등 총 관세품목의 3%(총 277개)에 대해 우회덤핑방지제도를 도입함<sup>10)</sup>
    - 1년간 우회덤핑방지를 적용받는 물품의 수입량이 고정 기준치의 70%에 도달하면 EU는 수입물품의 정확한 수량을 파악해 조지아에 통보하고, 조지아가 해당

8) Trade EU, “EU-Georgia Deep and Comprehensive Free Trade Area,” <https://trade.ec.europa.eu/access-to-markets/en/content/eu-georgia-deep-and-comprehensive-free-trade-area>, 검색일자: 2021. 9. 13.

9) EU 진입가격의 상세정보는 EU-조지아 DCFTA 부록II-C를 참고할 것([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PDF/?uri=CELEX:02014A0830\(02\)-20180601&from=EN#page=219](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PDF/?uri=CELEX:02014A0830(02)-20180601&from=EN#page=219), 검색일자: 2021. 9. 13.)

10) EU 우회덤핑방지제도의 대상목록은 EU-조지아 DCFTA 부록II-B를 참고할 것([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PDF/?uri=CELEX:02014A0830\(02\)-20180601&from=EN#page=217](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PDF/?uri=CELEX:02014A0830(02)-20180601&from=EN#page=217), 검색일자: 2021. 9. 13.)

물품의 생산능력 향상 또는 수확의 풍부성 등 우회덤핑이 아니라는 정당성을 제시한다면 우회덤핑 관세를 면제하도록 함

- 조지아-EU DCFTA 발효로 인해 조지아의 對EU 수출 증가로 이어지는 등 시장 접근성이 용이해짐<sup>11)</sup>
  - 조지아-DCFTA 발효 후 첫해인 2016년에는 조지아의 對EU 수출이 소폭 증가하는데 그쳤지만 對러시아·우크라이나 무역이 크게 감소하면서 EU 방향으로 무역구조가 크게 바뀜
    - 2017년 EU로의 수출은 주로 공산품 수출 증가에 기인함
  - 조지아-DCFTA는 조지아와 터키 간 원산지 규정 중 유사누적 적용을 승인하고 위생 및 검역조치 조치 및 무역에 대한 기술적 장벽의 규정을 EU 법률과 유사하게 개정함에 따라, DCFTA의 긍정적인 효과는 증장기적으로 크게 커짐
  
- 조지아는 EU DCFTA 활용을 위해 교통법 관련 규정의 상당한 완화와 교통 인프라 확립을 위한 대규모 투자를 계획 중이며 이를 통해 흑해-캅카스-카스피해 지역의 교통 및 물류 허브가 되고, 국제 및 지역 교통 시스템에 인프라를 완전히 통합하는 것을 목표로 함<sup>12)</sup>
  - 조지아-EU DCFTA는 특히 운송사업자의 자격, 차량과 선박의 기술적 안전성, 검사기관의 활동 등에 관한 EU의 해상, 도로, 철도 및 내륙 수로 운송에 대한 세부 지침과 규정을 반영함
    - 항공 운송의 경우, DCFTA는 'EU-조지아 공통 항공 협정 2010'을 참조하며, 최종적으로 조지아와 EU의 항공 운송 시장이 통합됨을 규정함
  - 조지아는 교통법을 EU의 지침과 규정과 유사한 내용으로의 개정을 시작해, EU의 교통망에 동참함으로써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다는 평가를 받음

11) Emerson and Kovziridze, 2018, p. 44.

12) Emerson and Kovziridze, 2018, p. 140.

#### 다. 조지아-중국 FTA<sup>13)14)</sup>

- 조지아-중국 FTA의 협상은 2015년 12월에 시작되어 2016년 10월에 완료, 2017년 5월에 협정이 체결되었으며 2018년 1월 1일에 발효되어 시행됨
  - 2015년 9월, 리커치양(李克強) 중국 총리는 중국을 방문한 크리비카슈빌리 조지아 총리와의 회견에서 양측이 가능한 조속히 FTA 협상을 시작한다고 밝힘
  - 2016년 6월, 장까오리(張高麗) 중국 부총리는 조지아를 방문해 마르그벨라슈빌리 조지아 대통령과 크리비카슈빌리 총리와 함께 FTA 협상 가속화에 대한 공통된 인식을 가졌음
  - 2017년 5월 13일, 양국은 ‘중화인민공화국정부와 조지아정부 FTA’를 체결함
  
- 조지아-중국 FTA 협상은 완료까지 1년이 채 걸리지 않았지만 여러 차례 밀접한 협상과 교섭이 오갔다는 평가가 있음
  - 조지아-중국 FTA는 중국이 유라시아 국가들과 체결한 최초의 FTA이자 일대일로(一帶一路) 구상 이후 중국이 개시하고 달성한 최초의 자유무역협정(FTA)임
    - 제19차 중국공산당 전국대표대회(CPC)의 ‘자유무역지대 설립 촉진 및 개방 세계 경제 건설’을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임
  
- 조지아-중국 FTA 발효에 따라, 상품무역과 관련하여 조지아는 중국 수입품목의 96.5%에 대해 즉시 관세를 철폐하고 중국은 조지아 수입품목의 93.9%에 대해 즉시 관세를 철폐함
  - 관세 즉시 철폐에 따라 조지아의 對중국 수입총액의 99.6%가 무관세로 수입되며, 중국의 對조지아 수입총액의 93.8%가 무관세로 수입될 예정임

13) China FTA Network, “China-Georgia FTA Comes into Force Today,” 2018. 1. 1., [http://fta.mofcom.gov.cn/enarticle/chinageorgiaen/chinageorgiaennews/201801/36885\\_1.html](http://fta.mofcom.gov.cn/enarticle/chinageorgiaen/chinageorgiaennews/201801/36885_1.html), 검색일자: 2021. 8. 23.

14) 코트라, 「중국과 조지아 FTA 공식 체결」, 2017. 6. 26., <https://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5/globalBbsDataView.do?setIdx=244&dataIdx=159485>, 검색일자: 2021. 8. 23.

- 조지아 수입품목의 경우 90.9%(수입총액 중 42.7%)는 즉시 무관세가 적용되며 나머지 3%(수입총액 중 51.1%)는 5년 이내에 점진적으로 무관세가 적용될 예정임

- 서비스 무역 측면에서 조지아와 중국은 WTO 협정에 따라 서로의 시장을 더욱 개방할 예정이며 환경과 무역, 경쟁, 지적 재산권, 투자 및 전자 상거래와 같은 많은 분야에서 광범위한 합의를 도출했다고 평가함
  - 서비스무역 부분의 시장진출, 국민대우, 최대수혜국 우대조항 등 규정을 제정하고 금융서비스, 인적교류, 운송 및 관련 서비스, 중의약 협력 등 네 가지 서비스에 대한 규정을 첨부함
  
- 중국은 조지아와의 FTA 협정 발효를 계기로 쌍방의 실질적인 협력 수준을 전면적으로 향상시켜 일대일로(一帶一路) 건설을 확고히 추진하고 공동번영을 이룩할 것을 목표로 함
  - '운수 및 관련서비스'라는 규정은 유라시아 접경에 위치한 조지아의 지정학적 특징에 따라 실크로드 경제벨트의 중요성을 부여하기 위해 중국이 체결한 FTA 중 최초로 단독으로 설립한 별도 규정임
    - 조지아-중국은 교통운송과 관련 인프라 시스템을 향상시키고 교통운송 및 물류 영역에서 협력을 더 강화하기로 함
  - '여행서비스' 규정의 경우 조지아는 주요 산업 중 하나인 관광업 활성화를 위해 여행시장을 전면 개방하였고 중국은 베이징, 톈진, 상하이 등 세 곳에서 시범적으로 시행하는 중국 거주민 해외여행 서비스 개방조치를 무역협정에 포함하며 중국-조지아 합자여행사 등록을 허가함

## II. 관세 및 통관제도

### 1. 관세 및 통관 관련 조직 및 법

#### 가. 관세 및 통관 관련 조직

- 조지아는 재무부 산하에 조세 및 관세정책부(Tax and Customs Policy Department)를 별도로 두고 있음<sup>15)</sup>
  - 조세와 관세정책부 아래에는 조세와 관세 모델링과(Division of Tax and Customs Modelling), 조세정책설계과(Division of Tax Policy Design), 관세정책설계과(Division of Customs Policy Design), 국제 조세과(International Taxation Division) 등 네 개의 부서로 구분됨
  
- 조세 및 관세정책부는 크게 다섯 가지의 업무로 구분됨<sup>16)</sup>
  - 외국인 및 민간 투자를 위한 안정적, 지속 가능성 및 매력적인 투자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
    - 조지아 세법과 EU의 국제 조세 관행 및 간접세 분야 등 EU 지침과 근접한 조화를 이루는 등 조세법을 강화 및 단순화
  - EU 법률 및 세계무역기구(WTO) 요구 사항과 기존 규정의 조화를 이루기 위해 세관 규정과 법문을 정교화

15) 조지아 재무부, "Tax and Customs Policy Department," <https://www.mof.ge/en/4531>, 검색일자: 2021. 5. 31.

16) 상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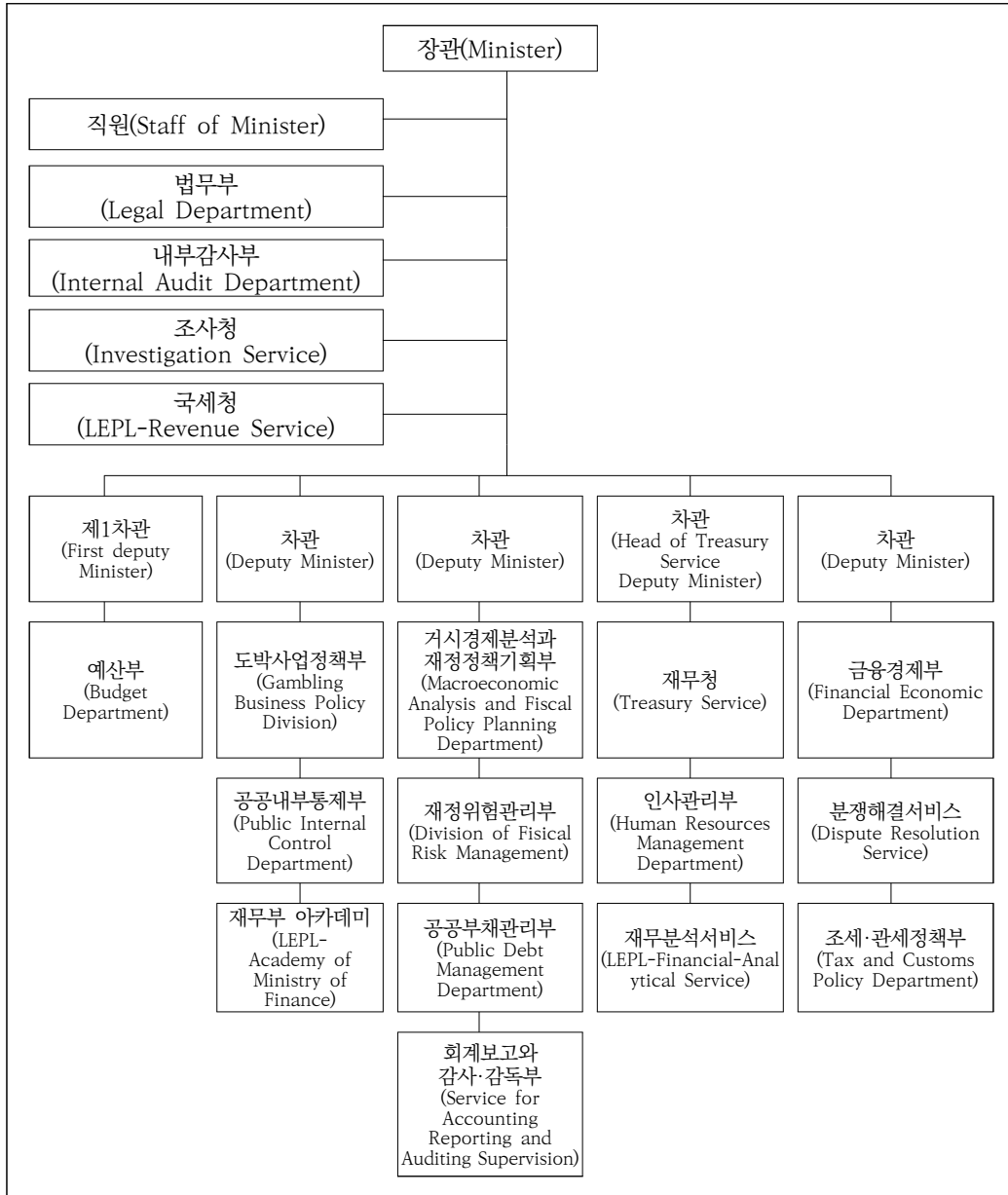
- 이중 과세 방지 및 재정 회피 방지를 위한 협정 초안 작성, 협상 수행, 협정 체결을 위한 활동 조정 및 국내법에 의해 예상되는 기타 기능 등 수행
    - 조세 분야에서 수용될 기타 국제 협정의 초안 작성과 체결
    - 국내법에 의해 예상되는 기타 활동 조정 등
  - 관세 및 세무 분야에서 국제기구와의 심층 협력
  -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관리와 세금 및 관세 수단의 올바른 선택 방법 연구
    - 세법에 대한 테스트 및 모델 변경 사항과 조세 개혁의 직간접적 결과에 대한 경제적 분석 수행 등
- 또한 재무부 산하의 국세청(Georgia Revenue Service of the Ministry of Finance)에서 조세 절차와 국경 통제 기능을 하나의 주 기관으로 통합 및 운영하고 있음<sup>17)</sup>
- 국세청 산하 세관부서(Customs Department)에서 크게 국제무역관련 규제와 절차요건을 관할하고 무역원활화 조치를 주도하며 세부적으로 관세 관리, 위생 및 식물위생(SPS) 관리, 국경 통제 그리고 여행자 통제(대체로 트럭 운전자) 등을 담당함<sup>18)</sup>
    - 원산지 증명서, 의약품 허가서, 운송 절차서 등 무역 관련 규제 및 절차 요건에 대한 재계의 견해를 접수
    - AEO 체계 등 새로운 무역 촉진 방안 검토 중
    - 무역재계 대표와의 정례회동
    - 법률 관련 검토 및 의견 수렴을 위해 법률 초안을 공개 게시<sup>19)</sup>
    - HS Code, 원산지, 세관 평가 및 기타 규제 요건(쿼터 및 제한)에 대한 온라인 사전 판결을 제공

17) UNECE, *Regulatory and Procedural Barriers to Trade in Georgia*, 2018, p. 32, [https://unece.org/fileadmin/DAM/trade/Publications/ECE\\_TRADE\\_443E\\_Georgia.pdf](https://unece.org/fileadmin/DAM/trade/Publications/ECE_TRADE_443E_Georgia.pdf), 검색일자: 2021. 5. 10.

18) UNECE, 2018, p. 39.

19) The Legislative Herald of Georgia(조지아 법무부 관할 법정 검색 엔진, <https://www.matsne.gov.ge/>)

[그림 II-1] 조지아 재무부 조직도



자료: 조지아 재무부, "Tax and Customs Policy Department," <https://www.mof.ge/en/4479>, 검색 일자: 2021. 5. 31. 바탕으로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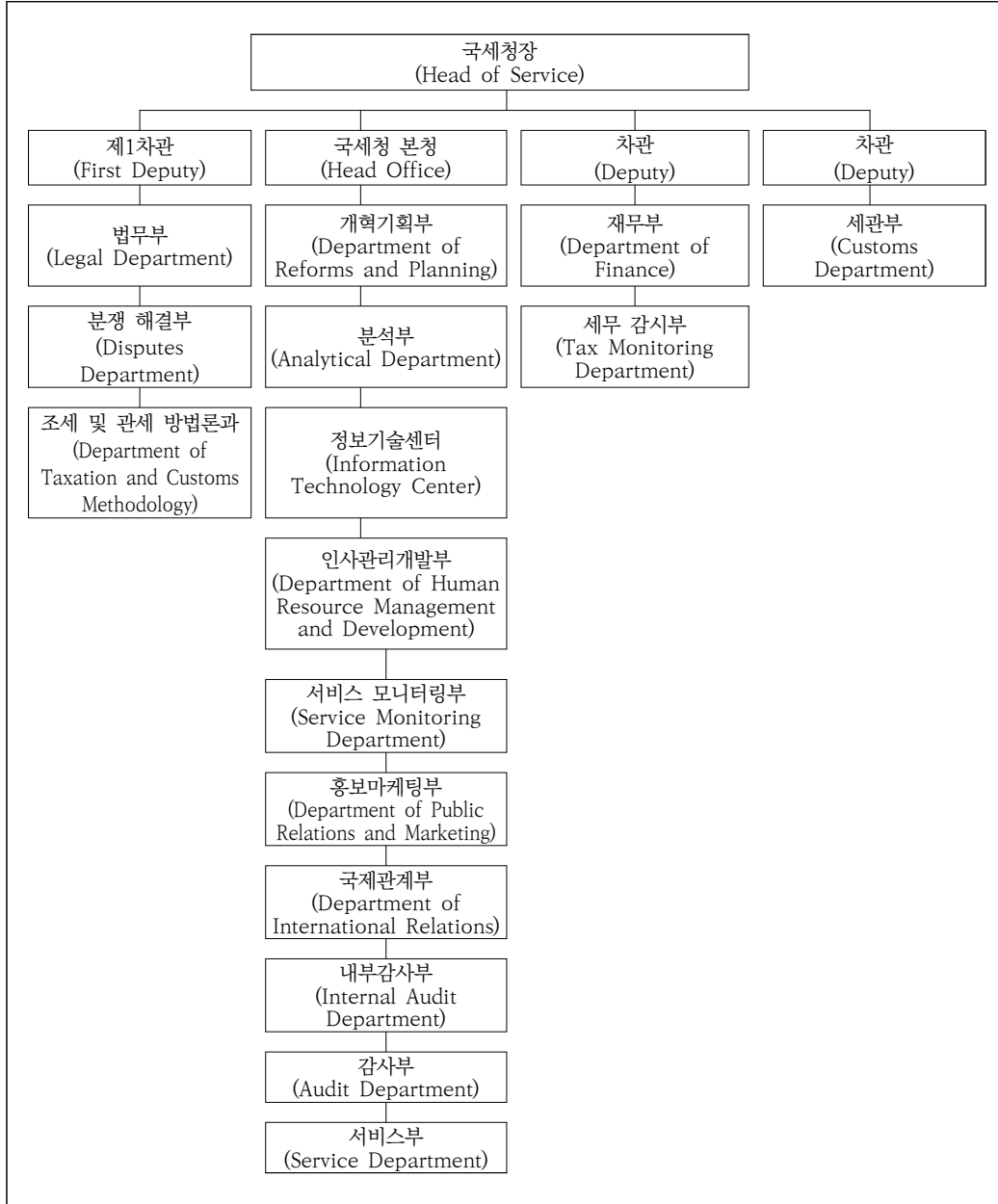
- 신청된 통관 절차, 서류 요건 및 관련 서비스 요금에 대한 최신 정보를 온라인으로 제공
  - 통관을 위해 원스톱샵(one-stop-shop)으로 운영되는 세관통관구역(Customs Clearance Zones, CCZ)에 헬프 데스크를 제공
  - 국경세관지점(Customs Crossing Points, CCP)에 서비스 센터 제공
  - 무역관련 거래자가 관련 세관 공무원에게 접근할 수 있도록 온라인에 포괄적인 연락처를 게시
  - 온라인 헬프 데스크 및 핫라인 제공
- 2021년 5월 기준 세관부서장은 Mamuka Jangulashvili로 2018년 9월부터 현재까지 임기를 유지 중임
- 국경통관의 경우 국세청과 내무부의 순찰 경찰부(Patrol Police Department of the Ministry of Internal Affairs)가 함께 공조하여 국경통관을 관리함<sup>20)</sup>
- 국세청은 동식물 위생검역과 관세 등의 통제를 수행하며 순찰 경찰부는 국경을 넘나드는 범죄 및 불법행위로부터 무역을 보호함
- 2017년 10월 기준 국세청의 세관직원은 본청 직원 166명을 포함하여 총 1,640명으로 구성됨<sup>21)</sup>
- 수도 트빌리시의 국세청에 운영지원 126명과 IT 직원 40명이 있고, 세관통관지역(CCZ)과 국경세관지점(CCP)에 1,474명이 근무함
- 2020년 기준 세관부서를 포함하여 국세청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수는 남자 1,897명, 여자 1,848명이며 21세부터 30세까지의 비율이 12%, 30세부터 40세까지의 비율이 54%, 40세부터 50세까지의 비율이 18%, 그리고 50세 초과 직원의 비율이 16%로 집계됨<sup>22)</sup>

20) UNECE, 2018, p. 49.

21) UNECE, 2018, p. 54.

22) 조지아 재무부와 국세청, *2020 Annual Report*, 조지아 국세청, 2020, p. 31.

[그림 II-2] 조지아 국세청 조직도



자료: 조지아 국세청, "Structure," 2020. 6. 17., [https://old.rs.ge/Default.aspx?sec\\_id=5442&lang=1](https://old.rs.ge/Default.aspx?sec_id=5442&lang=1),  
 검색일자: 2021. 5. 31. 바탕으로 저자 작성

## 나. 관세 및 통관 관련 법령

- 조지아 정부는 2011년 「조세법」과 「관세법」을 단일 법률로 통합하였으며, 이에 따라 조지아의 「관세법」은 관세제도와 통관제도가 나뉘어 분법화된 형태임<sup>23)</sup>
- 조지아 「조세법」(TAX CODE OF GEORGIA) 중 관세의 신고와 관세율에 대한 내용은 제8장 제28절(제195조~제199조)에 규정되어 있음<sup>24)</sup>
- 조지아 「관세법」(CUSTOMS CODE OF GEORGIA)은 총 12장, 총 214조로 구성되어있으며 수출입 통관절차, 보세구역 및 관세분쟁 등의 사항 등을 규정함<sup>25)</sup>

〈표 II-1〉 조지아 「관세법」 구성

구분	장 제목	구분	절 제목	조항
제1장	통칙	제1절	조지아 「관세법」의 범위 및 원칙, 목적 및 정의	제1조~제8조
		제2절	조지아 「관세법」이 규정한 권리와 의무	제9조~제26조
		제3절	세관통제	제27조~제32조
		제4절	세관분쟁	제33조
제2장	무역보호조치와 물품의 관세가격	제5절	무역보호조치 (품목분류와 원산지)	제34조~제36조
		제6절	물품의 관세가격	제37조~제46조
제3장	관세납부를 위한 관세부채 및 담보	제7절	관세부채의 발생	제47조~제54조
		제8절	관세납부를 위한 담보	제55조~제61조
		제9절	관세부채의 소멸	제62조~제65조
제4장	조지아 세관 영역으로 물품 반입	제10절	입항 요약 신고	제66조~제68조
		제11절	물품의 반입 및 임시보관	제69조~제79조

23) WTO, *TRADE POLICY REVIEW\_GEORGIA REPORT BY THE SECRETARIAT*, 2015. 11. 10., p. 10, [https://www.wto.org/english/tratop\\_e/tpr\\_e/g328\\_e.pdf](https://www.wto.org/english/tratop_e/tpr_e/g328_e.pdf), 검색일자: 2021. 6. 22.

24) 조지아 법무부, "TAX CODE OF GEORGIA," 2019. 12. 10., <https://matsne.gov.ge/en/document/view/1043717?publication=152>, 검색일자: 2021. 7. 19.

25) 조지아 법무부, "CUSTOMS CODE OF GEORGIA," 2020. 7. 15., <https://matsne.gov.ge/en/document/view/4598501?publication=2>, 검색일자: 2021. 7. 19.

〈표 II-1〉의 계속

구분	장 제목	구분	절 제목	조항
제5장	통관절차 중 물품의 지위, 통관절차, 세관신고서 확인, 물품 반출 및 국세청의 물품 처분 등	제12절	통관절차 중 물품의 지위	제80조~제81조
		제13절	통관절차	제82조~제95조
		제14절	세관신고서 등록 및 물품반출 확인	제96조~제101조
		제15절	물품의 처분	제102조~제104조
제6장	보세구역 물품 신고 및 관세 면제	제16절	보세구역 물품 수출입	제105조~제106조
		제17절	관세면제의 사례	제107조~제109조
제7장	특별통관절차 (환승 및 보세가공)	제18절	일반조항	제110조~제117조
		제19절	운송절차	제118조~121조
		제20절	통관절차	제122조~제127조
		제21절	보세구역 절차	제128조~136조
		제22절	임시수입절차	제137조~제140조
		제23절	최종사용절차	제141조
		제24절	보세가공 후 수입	제142조~제147조
		제25절	보세가공 후 수출	제148조~제154조
제8장	조지아 세관 영역에서 물품 반출	제26절	물품 반출 관련 세관절차	제155조~제157조
		제27절	수출절차	제158조~제159조
		제28절	재수출	제160조~제162조
제9장	위반 및 책임	제29절	일반조항	제163조~제164조
		제30절	관세범죄 및 책임의 유형	제165조~제179조
제10장	관세의 면제	제31절	일반조항	제180조
		제32절	관세의 면제	제181조~제212조
제11장	경과 및 최종규정	제33절	경과 및 최종규정	제213조~제214조

자료: 조지아 법무부, "CUSTOMS CODE OF GEORGIA," 2020. 7. 15., <https://matsne.gov.ge/en/document/view/4598501?publication=2>, 검색일자: 2021. 7. 23.

## 2. 관세의 신고와 납부

### 가. 관세 신고 및 담보 설정

- 「조세법」 제195조 및 「관세법」 제47조에 따라 관세의 납세의무자는 수출을 제외하고 조지아의 세관국경을 넘어 물품을 운송 및 신고한 자로 함
- 「조세법」 제196조에 따라 관세의 과세표준은 조지아 이외의 지역에서 조지아 세관국경을 넘는 물품의 관세 가격으로 함
- 「관세법」 제47조에 따라 수입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함
  - 다음의 물품 또한 관세부과대상임
    - 보세구역에서 조지아로 반출되는 물품
    - 관세가 부분적으로 면제되는 임시수입물품
- 「관세법」 제47조에 따라 과세물건 확정시기는 수입신고서 등록과 동시에 발생함
- 「관세법」 제53조에 따라 관세는 관세가 발생하는 시점인 수입신고 당시의 법령에 따라 부과됨
  - 관세의 정확한 발생시점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특정물품에 대하여 관세가 발생하였다고 국세청이 확인한 그 시점을 발생시점으로 봄
- 「관세법」 제55조에 따라 관세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가 발생할 수 있는 자는 조지아 「관세법」에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관세 납부에 대한 담보를 제출해야 함
  - 담보를 철회하지 않은 경우 해당 담보는 물품에 대한 사후 통관으로 발생한 관세 충당에 사용될 수 있음

- 「관세법」 제56조에 따라 관세 담보는 일반적으로 납부할 관세가 확정된 경우 해당 금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함
  - 포괄담보로서 향후 금액이 변동되는 경우 총 담보금액은 납부할 관세금액을 보장할 수준에서 설정되어야 함
  
- 「관세법」 제58조에 따라 관세담보의 종류는 은행담보, 보험증권, 담보금(현금), 기타 은행과 보험에 준하는 담보 및 재무부 장관 명령에 의해 결정된 기타 담보 등으로 구분됨
  - 국세청은 제공된 담보가 관세채무이행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담보 제공자에게 특정기간 동안 담보를 유지하도록 요구할 수 있음
  - 관세담보가 담보금(현금)으로 제공되더라도 국세청은 담보 기간 동안의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없음
  
- 「관세법」 제59조에 따라 국세청은 납세의무자의 관세납부의무가 두 건 이상인 경우 포괄담보를 제공하도록 허가할 수 있음
  - 포괄담보의 제공이 가능한 자는 조지아 거주자이면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로 제한함
    -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로서 조지아의 조세, 관세 및 관련 행정법을 심각하게 위반하지 않았으며 신청자의 경제 활동과 관련된 범죄가 없는 자
    - 통관절차의 일반 사용자이거나 세관창고 운영에 대한 허가를 보유하고 있거나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공인 기준 중 안전관리 및 보안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능력 또는 전문 자격의 실질적인 기분을 보유하는 자
  - 포괄담보 제공 가능자로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공인 기준 중 다음 요건에 부합하는 자는 경감된 담보를 제공하거나 포괄담보의 의무에서 해제될 수 있음
    - 신청자가 수행하는 기업 운영 및 물품의 흐름에 대한 높은 수준의 통제가 있으며

상업용 및 적절한 경우 운송 기록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통해 보장되어야 하며,  
세관 통제가 허용되는 경우

- 지급능력과 재정적 안정성 조건의 충족 등 양호한 재무 상태를 보유할 것

- 「관세법」 제60조에 따라 국세청은 제공된 담보금액이 충분하지 않거나 해당 담보금액이 규정된 기간 내에 관세 납부 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추가 담보를 요구하거나 납세의무자 대신 제3자에게 담보를 제출하도록 허가할 수 있음
- 「관세법」 제61조에 따라 국세청은 관세 납세의무를 이행했거나,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제공된 담보를 해제함
  - 관세가 일부 납부됐거나 관세 납세의무가 수입물품 중 일부분에 대해서만 발생한 경우 담보는 해당 부분에 대해서만 충당해야 함

## 나. 관세 납부

- 「관세법」 제65조에 따라 수입신고서 작성으로 인해 관세가 발생한 경우, 관세납부 기한은 해당 물품의 통관 후 영업일 기준 5일 이내 완료되어야 함
  - 해당 기한은 재무부 장관의 명령에 의해 감축되거나 최대 45일 이내로 연장될 수 있음<sup>26)</sup>
    - 수입신고자가 신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한 때에는 수입 통관 후 영업일 기준 10일 이내
    - 골드리스트 참가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수입 통관 후 영업일 기준 5일 이내이며, HS 1001호의 밀을 수입하는 경우 수입 통관 후 영업일 기준 45일 이내
    - 항공 수하물 또는 여행객 휴대 수하물과 우편수입물품으로 최대 1만라리 미만의 물품 등 간이수입신고물품의 경우 간이수입신고번호 부여일로부터 30일 이내

26) 조지아 국세청, "Deadlines," 2019. 8. 15., [https://old.rs.ge/Default.aspx?sec\\_id=4799&lang=1](https://old.rs.ge/Default.aspx?sec_id=4799&lang=1), 검색일자: 2021. 7. 12.

- 「조세법」 제197조에 따라 임시수입물품의 경우 매월 부과될 관세의 3%를 이자로 납부해야 함
  - 해당 금액은 임시수입신고일의 다음 달 15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최종 납부는 임시수입 통관이 완료되는 때 이뤄져야 함
  - 신고자는 전체 이자 금액을 일시불로 납부할 수 있음
  - 임시수입물품의 이자금액의 총합은 부과될 관세를 초과할 수 없음
  
- 「관세법」 제62조에 따라 납세의무가 소멸되는 때는 다음과 같이 관세를 납부하거나 관세 채권이 충당된 때임
  - 조지아 법령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개인은행카드로 세금을 납부
  - 관세 위반과 관련된 형사 사건에서 물품이 위약금으로 압류된 경우
  - 「관세법」에 따라 물품의 처분 조치가 시행된 경우
  - 「관세법」에 따라 불가항력의 결과로 물품이 멸실, 파괴 및 폐기된 경우
  - 「관세법」 위반 물품으로 조지아 세관 영토 내에서 소비 또는 사용되지 않았으며 반출된 것으로 간주하여 관세가 발생한 경우
  - 관세 납세의무가 발생한 세관신고서가 무효처리된 경우
  
- 「관세법」 제63조에 따라 국세청은 「관세법」에서 따로 규정하지 않은 한, 과세대상, 관세율 및 관세 면제율 등을 고려해 납부해야 할 관세 금액을 계산해야 함
  - 국세청은 사후통관심사 대상을 제외하고 신고인이 계산한 관세 금액을 승인할 수 있음
  - 관세는 「관세법」에서 따로 규정하지 않은 한, 은행을 통해 현금 또는 비현금(카드)의 방법으로 조지아 통화인 라리(Lari, GEL)로 납부해야 함
  - 세관신고서상 소수점으로 표기된 관세의 경우 반올림하며 정수로 표현되지 않은 경우 가장 가까운 정수로 반올림해야 함
  
- 「관세법」 제64조에 따라 국세청은 세관신고서 작성으로 발생되지 않은 관세에 대해 납세의무자에게 관세납부통지서를 발송해야 함

### 3. 관세평가제도

#### 가. 개요<sup>27)</sup>

- 조지아의 관세평가의 원칙은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에 기초하여 결정하는 제1방법이며, 거래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제2방법부터 제6방법을 순차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함
  - 관세평가란 종가세 적용 물품의 과세가격에서 해당 물품의 관세율을 곱하여 관세를 산정하는 절차와 방법을 의미함
  - 조지아의 관세평가와 관련된 규정은 1994년 GATT 제7조의 이행에 관한 WTO 협정과 「관세법」 제37조부터 제46조 등이 있음<sup>28)</sup>
  
- (수출 판매된 물품) 물품이 판매대상이며 조지아의 보세구역에 신고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해당 물품은 조지아로 수출 목적으로 판매되었다고 간주됨
  - 조지아에 수출하기 위해 물품을 판매한 후, 세관 창고 포함 재판매된 경우에도 조지아에 수출하기 위해 판매한 물품의 가격이 적용됨
  - 조지아에 수출판매를 위한 물품이 수출 전 제3국에서 사용된 경우, 국세청은 제1방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것을 거부하는 근거로 삼을 수 있음
  
- (실제지급가격의 정의) 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기 위하여, 실제지급금액이란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지급하거나 판매자의 이익을 위해 지급한 총액을 뜻하며 이러한 가격에는 상품의 판매조건으로 직간접적으로 지급되는 모든 금액이 포함됨
  - 물품의 원산지 또는 수출국에서 납부한 간접세 금액은 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되지 않음

27) 조지아 「관세법」 제37조

28) WTO, 2015, p. 38.

- (특수 관계자의 범위) 다음의 경우에 구매자와 판매자 간 상호 관련되는 것으로 간주함
  - 사업주체를 관리할 권한이 있는 자로서 상호 간의 사업을 관리함
  - 사업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서 법적으로 인정되는 사업 파트너인 경우
  - 고용주와 종업원인 경우
  - 제3자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두 사람 모두의 의결권 지분을 5% 이상 보유하거나 지배하거나, 제3자가 그러한 지분을 5% 이상 소유한 경우
  - 이들 중 하나가 다른 하나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지배하는 경우
  - 둘 다 제3자에 의해 직간접적으로 통제되는 경우
  - 양자가 함께 제3자를 직간접적으로 통제하는 경우
  - 양자가 같은 가족 구성원인 경우
  - 이들 중 하나가 독점 대리인, 유통업자 또는 영업권 보유자인 사업관련 당사자로서 언급된 특수 관계자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자로 간주됨
  
- (관세평가 적용 순서) 수입물품의 관세평가는 다음에 따라 순차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또한 신고자는 제4방법과 제5방법의 적용 순서를 변경할 권리가 있음
  - 수입물품 거래가격에 기초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제1방법)
  - 동일 재화의 거래가격에 기초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제2방법)
  - 유사한 재화의 거래가격에 기초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제3방법)
  - 재화의 단가에 기초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제4방법)
  - 생산가격에 기초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제5방법)
  - 합리적 기준에 기초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제6방법)

#### 나. 거래가격 결정방법(제1방법)

- 「관세법」 제38조에 따라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실제지급가격에서 「관세법」 제44조의 거래가격에 가산 또는 공제해야 할 요소를 반영해 조정해야 함
  - 실제지급금액은 객관적이고 근거 있는 자료에 기초해 계산되어야 함

- 「관세법」 제46조에 따라 가산 또는 공제 요소들의 가격이 세관 신고일 당시 계량화할 수 없는 경우 국세청은 신고자가 세관신고서에 근거해 특정기준에 따라 해당 요소의 가격을 결정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음
- 「관세법」 제44조에 따라 구매자에 의해 지급되었으나 실제지급금액에 포함되지 않은 다음 요소들은 거래가격에 가산되어야 하며 이는 문서화된 자료에 근거해야 함
  - 수입자가 물품을 구매하면서 구매 대리인이 제공한 용역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수수료 및 중개 수수료(구매수수료 제외)
  - 수입물품과 하나로 취급되는 컨테이너 비용
    - 컨테이너 재사용이 가능한 경우, 신고자 요청에 따라 국제회계표준에 따라 평가된 가격이 배분되어야 함
  - 수입물품 포장비용(노무비 및 재료비)
  - 구매자가 조지아로 수출하기 위해 생산 및 판매하기 위해 판매자에게 직간접적으로 무상 또는 할인된 가격으로 물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그 물품과 용역의 가격이 실제지급가격에 포함되지 않았다면 해당 가격<sup>29)</sup>
    - 물품과 결합된 재료, 원료, 부품 및 기타 부품
    - 물품 생산에 사용되는 공구, 다이스, 금형 및 기타 구성요소
    - 물품 생산에 소비되는 재료
    - 엔지니어링, 개발, 예술품 작업, 디자인, 설계도면 작업, 계획, 스케치 등으로 조지아 이외의 지역에서 수행되는 작업<sup>30)</sup>
  - 물품의 판매 또는 구매에 대한 약정으로 구매자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물품과 관련된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또는 영업권(노하우) 등의 로열티와 라이선스 비용(권리사용료)

29) 실제지급가격에 가산될 물품 또는 서비스 가격은 구매자가 구입한 가격에 기초하며, 구매자가 해당 물품을 생산한 경우 가격은 구매자의 회계서류에 근거해 결정되며 물품이 감가상각된 경우 감가상각율을 적용해 가격을 산정함

30) 조지아 「조세법」 제162조에 따라 서비스 제공 장소가 조지아가 아니면서 거래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 해당 서비스는 조지아 이외 지역에서 수행된 것으로 간주됨

- 단 로열티 등이 수입물품과 분리될 수 없고 계약서에 조건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
  - 구매자가 제3자에게 권리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 구매계약을 확인해야 함
  - 물품 수입 후 전매, 처분 또는 사용하여 생긴 수익금액 중 일부를 판매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지급하는 금액
  - 조지아 세관영토로 물품을 반입하는 곳까지의 운송비, 적재비 및 취급비(창고비용) 등 운임과 신고인이 부담하는 보험료
- 「관세법」 제44조에 따라 구매자에 의해 지급되었으나 실제지급금액과 별도로 표시한 다음의 원가의 경우 거래가격에서 공제해야 함
- 조지아 법률에 의해 부과되는 세금 및 수수료
  - 조지아 세관영토 도착 후의 운송비
  - 물품 수입 후 발생하는 건설 및 착공, 창고, 유지보수 또는 기술 지원에 대한 비용
  - 조지아 세관 국경을 넘는 절차와 관련된 요금 및 조지아로 반입된 물품의 이동과 관련된 기타 요금
  - 구매자가 체결한 금융계약에 따른 이자 및 수입원자재 구매와 관련된 수수료로서 다음의 경우에 한함
    - 이자 수수료가 물품의 실제가격과 구분되는 경우
    - 금융 계약이 서면으로 작성된 경우
    - 구매자가 물품이 실제로 공시된 가격으로 판매되고 이자율이 금융제공 당시와 금융인이 소재한 국가에서 유사한 금융약정의 유효이자율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 조지아에서 수입물품을 처리할 권리를 획득하는 데 필요한 비용
  - 구매자가 물품의 유통 또는 판매권을 획득하는 데 소요한 비용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거래가격이 아닌 제2방법부터 제6방법을 순차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함

- 물품의 처분 또는 사용상의 제한이 존재하는 경우, 단 다음의 경우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처분 또는 제한으로 보지 않음
    - 조지아 법률에 의해 설정되거나 요구되는 경우
    - 물품의 재판매 지역이 제한되는 경우
    - 기타 물품가격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 물품의 판매 또는 가격의 결정에 대해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
    - 단 금액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경우 해당 금액은 구매자가 간접 지급한 금액으로 간주되며 실제지급금액에 포함됨
  - 구매자가 물품을 후속적으로 판매, 처분 또는 사용한 수익의 일부를 판매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지급하는 경우
    - 단 해당 사후 귀속이익을 가산요소로 조정 가능한 경우 실제지급금액에 포함됨
  - 구매자와 판매자 간 특수 관계가 있고 해당 관계가 물품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
- 국세청은 특수 관계자 간 거래에 대해 제1방법 적용 배제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 신고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신고자는 변론의 권리를 가짐
- 국세청은 신고자 또는 기타 방법으로 취득한 정보를 토대로 구매자와 판매자의 특수관계가 물품 가격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한 경우 해당 의견을 신고자에게 통지해야 함
  - 신고자는 국세청 의견과 관련하여 적절한 설명을 제공할 권리를 가짐
- 신고자가 특수 관계가 물품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국세청에 제공한 경우, 해당 물품은 제1방법을 적용해 과세가격을 결정해야 함
- 특수 관계자 간 거래 물품 가격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근접하는 가격(비교가격)인 경우
    - 판매자가 특수 관계가 없는 구매자에게 판매한 동종·동일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 제4방법(국내판매가격) 또는 제5방법(생산가격)에 따라 결정된 동종·동일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과세가격

## 다. 그 외의 과세가격 결정방법

### 1) 동종·동질 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결정방법(제2방법)

- 「관세법」 제39조에 따라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거래가격에 기초하여 결정할 수 없는 경우, 과세가격은 조지아로 수출하기 위해 판매되고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물품으로 평가대상 물품과 거의 동시에 수출된 동종·동질 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결정함
  - '동시 또는 거의 동시에 수출'이란 해당 물품 수출일과 평가 대상인 수입물품의 수출인 간의 차이가 30일을 초과하지 않음을 의미함
  - '동종·동질 물품'이란 평가 대상인 수입물품과 물리적 특성, 품질, 평판 및 원산지가 동일한 물품을 의미하며, 다른 기준과 관련하여 위의 정의를 준수하는 경우 외양의 사소한 차이는 고려되지 않음
    - 단 조지아에서 엔지니어링, 가공, 예술적 디자인, 도면 및 스케치를 생산한 물품은 동종·동질 물품 범위에 해당되지 않음
  
- 동종·동질 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때 거래내용 등이 평가대상 물품과 가장 유사한 물품의 가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며, 그러한 물품이 없는 경우 국세청에 의해 조정된 동종·동질 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함
  - 조지아에 수출하기 위해 동일한 상업 수준 및 평가 대상 물품과 동일한 수량으로 판매된 동종·동질 물품의 거래 가격을 우선 고려
  - 상기에 따른 가격조건이 없는 경우, 국세청이 상업적 수준과 수량의 차이를 고려해 조정된 동종·동질 물품의 거래가격을 고려
    - 국세청의 조정은 보유한 증거에 근거하여 거래가격 결정방법(제1방법)에 근거해 이루어지며 조정의 합리성과 정확성 입증을 위해 물품의 과세가격이 상승 또는 하락될 수 있음
  
- 동종·동질 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때 동일한 생산자가 생산한

동일 물품의 거래가격에 대한 데이터를 찾을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사람이 생산한 물품의 거래가격을 고려할 수 있음

- 또한 동종·동질 물품의 거래가격이 둘 이상 식별된 경우, 과세가격은 가장 낮은 가격을 기초로 결정함

## 2)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결정방법(제3방법)

□ 「관세법」 제40조에 따라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동종·동질 물품의 거래가격에 기초하여 결정할 수 없는 경우, 과세가격은 조지아로 수출하기 위해 판매되고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물품으로 평가대상 물품과 거의 동시에 수출된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결정함

- '동시 또는 거의 동시에 수출'이란 해당 물품 수출일과 평가 대상인 수입물품의 수출인 간의 차이가 30일을 초과하지 않음을 의미함
- '유사물품'이란 평가 대상인 수입물품과 동일한 원산지를 갖고, 모든 면에서 동일하지 않지만 비슷한 물리적 특성과 구성요소를 가지며 평가대상 물품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고 상업적으로 대체사용이 가능한 물품을 뜻함
  - 단 조지아에서 엔지니어링, 가공, 예술적 디자인, 도면 및 스케치를 생산한 물품은 동종·동질 물품 범위에 해당되지 않음

□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때 거래내용 등이 평가대상 물품과 가장 유사한 물품의 가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며, 그러한 물품이 없는 경우 국세청에 의해 조정된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함

- 조지아에 수출하기 위해 동일한 상업 수준 및 평가 대상 물품과 동일한 수량으로 판매된 유사물품의 거래 가격을 우선 고려
- 상기에 따른 가격조건이 없는 경우, 국세청이 상업적 수준과 수량의 차이를 고려해 조정한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고려
  - 국세청의 조정은 보유한 증거에 근거하여 거래가격 결정방법(제1방법)에 근거해 이루어지며 조정의 합리성과 정확성 입증을 위해 물품의 과세가격이 상승 또는 하락될 수 있음

-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때 동일한 생산자가 생산한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에 대한 데이터를 찾을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사람이 생산한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고려할 수 있음
- 또한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이 둘 이상 식별된 경우, 과세가격은 가장 낮은 가격을 기초로 결정함

### 3) 국내 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결정방법(제4방법)

- 「관세법」 제41조에 따라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에 기초하여 결정할 수 없는 경우, 과세가격은 첫 번째 상업 단계에서 특수 관계가 없는 자에게 가장 많은 양으로 판매된 평가대상과 동일한 물품,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국내 판매 단위가격에서 국내 판매와 관련하여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비용들을 공제한 가격으로 함
- 제4방법에 사용되는 평가대상과 동일한 물품,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은 평가대상 물품과 거의 동시에 수입된 것이어야 하며, 또한 조지아로 수입되었을 때와 동일한 상태(변경되지 않은 상태)로 조지아 내에서 판매된 경우로 제한함
  - ‘거의 동시에 수입’된 사례가 없는 경우 수입 후 90일 이내의 기간까지 감안하여 활용할 수 있음
  - ‘수입되었을 때와 동일한 상태’로 조지아 내에서 판매된 경우가 없다면 과세가격은 신고자 요청에 따라 조지아 내에서 가공된 후 특수 관계가 없는 자에게 가장 많은 양으로 판매된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국내 판매 단위가격을 기초로 결정되어야 하며, 이 경우 가공 단계에서 발생한 부가가치는 과세가격에서 공제해야 함
- 국내 판매와 관련하여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다음과 같음
  - 일반적으로 선지급하거나 지급하기로 합의된 수수료 또는 조지아에서 동종·동류 물품<sup>31)</sup>의 판매 관련 수익과 일반 경비에 해당하는 비용 등

31) 동종·동류물품이란 평가대상 물품과의 원산지과 관계없이 기본적인 물리적 특징이 평가 물품과 동일한 유형이며 학술적 명명법상 동일한 범주에 속하고 물품의 특성이 최대한 비슷한 물품을 뜻함

- 조지아에서 발생하는 통상적인 운송 및 보험 비용과 기타 관련 비용
- 물품의 수입 또는 판매와 관련된 세금 및 기타 관세

#### 4) 생산가격을 기초로 한 결정방법(제5방법)

- 「관세법」 제42조에 따라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국내 판매 단위가격에 기초하여 결정할 수 없는 경우, 과세가격은 다음의 물품 생산에 소요된 비용을 더한 가격을 기초로 결정함
  - 물품 생산에 사용된 재료의 제작(조립) 및 가공비용 등
    - 평가 대상 물품과 하나로 취급되는 컨테이너 원가 및 물품 포장비용(노무비와 재료비 포함)
    - 구매자가 조지아로 수출하기 위해 생산 및 판매하기 위해 판매자에게 직간접적으로 무상 또는 할인된 가격으로 물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적절히 배분한 금액
  - 조지아에 수출하기 위해 수출국 내 생산자가 생산한 평가대상 물품과 동종·동류인 물품을 판매 시 반영하는 이익과 일반 비용
    - ‘일반 비용’ 물품 생산에 사용된 재료의 제작 및 가공비용에서 규정하지 않은 수출물품의 생산과 판매에 발생하는 직접원가와 간접원가를 포함함
  - 평가 대상 물품을 세관 영토로 반입하기까지 소요되는 운임 및 보험료

#### 5) 합리적 기준에 따른 결정방법(제6방법)

- 「관세법」 제43조에 따라 제38조부터 제42조에 근거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 과세가격은 다음의 합리적인 기준을 활용해 결정함
  - 1994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 제7조의 조항(GATT 제7조)
  - 1994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 제7조 이행을 위한 협정서의 일반 원칙 및 조항(GATT 제7조의 일반원칙 조항)
  - 조지아 「관세법」상 관세평가 일반 원칙 및 조항

- 합리적 기준에 의해 과세가격을 결정할 경우 가능한 이전에 결정된 물품의 과세가격 사례에 기초해야 하며, 다음의 가격은 활용될 수 없음
  - 조지아에서 생산된 물품의 국내 판매 가격
  - 수출국 국내 시장의 물품 가격
  - 외국에서의 수출 물품 가격
  - 물품의 최소 과세기준가격
  - 물품의 임의 선택 가격 또는 가공된 가격
  - 물품의 두 가지 가격 중 가장 큰 가격을 선택하는 원칙
  - 동종·동질 또는 유사물품에 대하여 제5방법(산정가격) 이외의 방법으로 결정된 생산원가
  
- 합리적 기준에 의해 과세가격을 결정할 경우 해당 가격의 정보는 개방된 출처에서 얻은 데이터를 포함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관세평가의 정확성을 확립하는 데에만 사용됨

## 6) 기타 관세평가 방법

- 「관세법」 제45조에 따라 자동화된 데이터 처리 또는 기타 소프트웨어 전송 매체의 관세평가는 해당 소프트웨어 가격만을 고려하며, 해당 소프트웨어가 전송 매체 가격과 분리되지 않는 경우 전송매체의 과세가격은 조지아 「관세법」 제38조부터 제44조에 따라 결정됨
  - '소프트웨어 전송 매체'에는 집적 회로 및 이와 유사한 장치 또는 부품 일부도 포함되지 않음
  
- 국세청은 중고품(중고차량 포함)의 관세평가에 제1방법(거래가격)을 적용하지 않으며, 해당 물품의 신고서 등 서류와 물품 이미지 등을 심사하고 물리적 검사 등을 기반으로 종합해 과세가격을 결정함<sup>32)</sup>

---

32) WTO, 2015, p. 38.

## 4. 관세율 및 품목분류 제도

### 가. 관세율 제도

#### 1) WTO의 World Tariff Profiles 2021<sup>33)</sup>

- WTO는 매년 WTO 회원국을 대상으로 양허관세(final bound duties)와 최혜국대우 관세(MFN applied duties)를 구분하여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함
  - 조지아는 2000년 6월 14일 WTO에 가입하였음
  - 양허관세(final bound duties)란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에 따라 개별 WTO 회원국들의 최대 적용 가능한 관세율 수준을 뜻하며, 최혜국대우 관세(MFN)란 WTO의 회원국 간 수입물품에 대해 부과하는 실질적인 관세율을 뜻함<sup>34)</sup>
  - 분석에 사용되는 HS는 수입신고에 사용된 01류부터 97류까지이며, 각 국가에서 채택한 HS 협약 버전에 따른 HS 6단위(sub-heading, 소호) 기준으로 제한함
    - HS 6단위에 대한 관세율은 HS 6단위의 하위품목의 관세율을 단순 평균하여 계산됨
- 해당 국가에 대한 수출입 물품의 관세적용 비중과 어떤 시장의 물품이 관세 적용률이 높은지 확인하기 위해 물품은 농산물과 비농산물로 구분됨
  - 농산물과 비농산물은 기본적으로 HS 류 기준으로 구분되며, 보다 세밀한 구분을 위해 일부 제품은 HS 6단위 기준으로 분류함
- 농산물은 동식물성 생산품, 낙농제품, 커피와 차, 곡물과 그 조제품, 종자와 기름, 설탕 및 과자류, 음료 및 담배, 면섬유와 기타 농산물 등으로 구분됨

33) WTO·ITC·UNCTAD, *World Tariff Profiles 2021*, pp. 41~42, [https://www.wto.org/english/res\\_e/booksp\\_e/tariff\\_profiles21\\_e.pdf](https://www.wto.org/english/res_e/booksp_e/tariff_profiles21_e.pdf), 검색일자: 2021. 7. 27.

34) World Bank, "Types of Tariffs," [https://wits.worldbank.org/wits/wits/witshelp/content/data\\_retrieval/p/intro/c2.types\\_of\\_tariffs.htm](https://wits.worldbank.org/wits/wits/witshelp/content/data_retrieval/p/intro/c2.types_of_tariffs.htm), 검색일자: 2021. 8. 2.

〈표 II-2〉 WTO의 농산물 구분

농산물	HS 구분	설명
동물성 제품	- 01, 02 - 1601~02	- 산 동물, 육과 식용 설육 - 소시지 및 기타 육류조제품
낙농제품	- 0401~06	- 밀크와 크림, 유장, 버터, 치즈
과일, 채소, 식물	- 07, 08, 1105~06 - 2001~08 - 0601~03 - 1211 - 13, 14	- 식용채소, 과실과 견과류, 감자의 분, 건조한 채두류와 과실의 분 - 채소, 과실, 견과류나 기타 식물의 조제품 - 산 수목과 기타 산 식물, 절화 - 향료, 의료용 식물 - 식물성 수액과 기타 식물성 생산품
커피와 차	- 0901~03 - 18 <sup>1)</sup> - 2101	- 커피, 차, 마태 - 코코아와 그 조제품 - 커피, 차, 마태의 조제품
곡물 및 조제품	- 0407~10 - 10 - 1101~04 - 1107~09 - 19 - 2102~06 - 2209	- 조란, 천연꿀, 기타 식용의 동물성 생산품 - 곡물 - 밀가루, 곡분, 곡물의 분쇄물 및 기타 가공곡물 - 맥아, 전분과 이눌린, 밀의 글루텐 - 곡물과 곡분의 조제품 및 베이커리 제품 - 각종 조제식료품(커피 등 조제품 제외) - 식초
종자, 지방 및 기름	- 1201~08 - 15 <sup>2)</sup> - 2304~06 - 3823	- 채유에 적합한 종사 및 분 - 동식물성 지방 - 대두, 낙화생, 기타의 오일 케이크 - 공업용 모노카르복시 지방산 등
당류와 설탕과자	- 17	- 당류와 설탕과자
음료와 담배	- 2009 - 2201~08 - 24	- 과실주스 - 물, 음료, 주류, 주정 등 - 담배와 담배 대용물
면섬유	- 5201~03	- 면(카드와 코움 여부 불문)과 면 웨이스트

〈표 II-2〉의 계속

농산물	HS 구분	설명
기타 농산물	- 05 <sup>3)</sup> - 0604 - 1209~10 - 1212~14 - 1802 - 2301.10 - 2302~03 - 2307~09  - 2905.43	- 기타 동물성 생산품 - 기타 장식용 식물 - 파종용 종자와 과실, 호프 - 기타 식용식물, 짚, 사료용 식물 - 코코아의 각, 피 - 비식용의 육어류의 분과 수지박 - 밀기울과 전분박, 비트펄프 등 - 와인리스와 생주석, 사료용 식물성 물질과 사료용 조제품 - 만니톨

주: 1) 1802호 제외  
2) 1504.10, 1504.20 제외  
3) 0508, 0511.91 제외

자료: WTO·ITC·UNCTAD, *World Tariff Profiles 2021*. p. 41, [https://www.wto.org/english/res\\_e/booksp\\_e/tariff\\_profiles21\\_e.pdf](https://www.wto.org/english/res_e/booksp_e/tariff_profiles21_e.pdf), 검색일자: 2021. 7. 27.

□ 비농산물에는 수산물, 광물 및 금속제품, 석유 및 화학제품, 목재와 종이제품, 식물 및 의류, 가죽과 신발, 기계 및 전자기기, 수송장비 및 기타 비농산물 등으로 구분됨

〈표 II-3〉 WTO의 비농산물 구분

비농산물	HS 구분	설명
어류와 수산제품	- 03 - 0508, 0511.91 - 1504.10~20 - 1603~05  - 2301.20	- 어류 - 산호와 패각, 어류 등 사체 - 어류의 간유, 지방과 그 분획물 - 육, 어류, 갑각류 등의 추출물, 조제품, 캐비아 등 - 어류, 갑각류 등의 분
광물 및 금속	- 2601~17, 2620 - 72~76 <sup>1)</sup> - 78~83 <sup>2)</sup>  - 25, 2618~19, 2621	- 금속광물, 회와 잔재물 - 철강, 철강제품, 구리, 니켈, 알루미늄 - 납, 아연, 주석, 기타 비금속, 비금속제 공구, 비금속제 각종 제품 - 암석광물, 철강 슬래그 등, 기타 슬랙과 회

〈표 II-3〉의 계속

비농산물	HS 구분	설명
	- 2701~04, 2706~08, 2711~15, - 31, 3403 - 68~71 <sup>3)</sup> - 9113.10~20	- 광물성연료  - 비료, 조제 운할류 - 시멘트, 도자, 유리제품 등 - 휴대용 시계의 줄로서 귀금속과 비금속제
석유제품	- 2709~10	- 원유, 석유조제품
화학공업제품	- 2705 - 28~30 <sup>4)</sup> - 32~33 <sup>5)</sup> - 34 <sup>6)</sup> - 3506~07, 3601~04  - 37~39 <sup>7)</sup>	- 석탄가스 - 무기·유기화학품, 의료용품 - 유연·착색제, 정유·화장품 - 비누·왁스 - 변성전분, 조제접착제, 화약, 폭약 등 점화용 불꽃제품 - 사진영화용 재료, 화학공업생산물, 플라스틱
목재 및 종이	- 44~45 - 47~49 - 9401~04 <sup>8)</sup> - 9619.00	- 목재, 코르크 - 펄프, 종이와 그 제품, 인쇄물 - 가구 - 위생용품
직물	- 3005.90, 3306.20 - 3921.12~13, 3921.90 - 4202.12, 4202.22, 4202.32, 4202.92 - 50~60 <sup>9)</sup> - 63 - 6405.20, 6406.10, 6501~05, 6601 - 7019.11~19, 7019.40~59 - 8708.21, 8804, 9113.90 - 9404.90, 9612.10	- 탈지면, 거즈, 붕대 등, 치실 - 플라스틱 판 슈트 - 플라스틱 또는 방직용 케이스와 가방  - 방직용 섬유 - 기타 방직용 섬유제품 - 방직용 신발류와 그 부분품, 모자, 우산  - 유리섬유(슬리버와 로빙의 실, 직물)와 기타 직물 - 안전벨트, 낙하산 등, 휴대용 시계의 줄  - 침구, 타자기용 리본 등

〈표 II-3〉의 계속

비농산물	HS 구분	설명
의류	- 61~62	- 편물제와 비편물제 의류
가죽, 신발, 기타	- 40~41 <sup>10)</sup> - 4201~05 <sup>11)</sup> - 4302~04 - 64 <sup>12)</sup> - 9605	- 고무, 원피와 가죽 - 가죽제품 - 모피, 인조 모피와 각 제품들 - 신발 - 개인용 여행세트
기계류	- 7321~22 - 84 <sup>13)</sup> - 8508.60, 8528.42, 8528.52, 8528.62 - 8608, 8709	- 스토브, 레인지, 방열기 - 기계류 - 기타 진공청소기, 음극선관 모니터, 기타 모니터, 프로젝터 등 - 기계식 교통관제기기, 단거리 화물운반차량
전기기기	- 8467.21~29 - 85 <sup>14)</sup>	- 전동식 드릴, 톱 등 - 전기기기
수송장기	- 86 <sup>15)</sup> - 8701~08, 8711~14, 8716 - 8801~03, 89	- 철도차량 - 자동차와 그 부분품, 전차, 자전거 등, 트레일러 - 항공기와 그 부분품, 선박
기타 비농산물	- 2716, 3406, 3605~06 - 4206, 46 - 6506~07, 6602~03, 67, 6807 - 8304~05, 8519~23 <sup>17)</sup> - 8710, 8715, 8805 - 90~93, <sup>18)</sup> 9405~06, 95~97 <sup>19)</sup>	- 전기에너지, 양초, 성냥과 발화성 합금, 조제연료 등 - 동물 거트제품, 조물제품 - 기타의 모자와 부착품, 지팡이와 부분품 등, 우모, 조화, 인모제품, 아스팔트 제품 - 비금속제 사무비품과 사무용품, 음향, 영상 재생기기와 부분품, 기록 및 저장매체 - 전차와 장갑차량, 유모차, 지상장치와 훈련장치 - 광학·측정·의료기기, 시계, 악기, 무기, 램프와 조명기기, 조립식 건축물, 완구와 운동용구, 잡품, 예술품과 골동품

주: 1) 7321~22 제외  
 2) 8304~05 제외  
 3) 6807, 7019.11~19, 7019.40~59 제외  
 4) 2905.43~45, 3005.90 제외  
 5) 3301, 3306.20 제외  
 6) 3403, 3406 제외

〈표 II-3〉의 계속

- 
- 7) 3809.10, 3823, 3824.60, 3921.12~13, 3921.90 제외
  - 8) 9404.90 제외
  - 9) 5001~03, 5101~03, 5201~03, 5301~02 제외
  - 10) 4101~4103 제외
  - 11) 4202.12, 4202.22, 4202.32, 4202.92 제외
  - 12) 6405.20, 6406.10 제외
  - 13) 8467.21~29 제외
  - 14) 8508.60, 8528.42, 8528.52, 8528.62, 8519~8523 제외, 단 8523.52 포함
  - 15) 8608 제외
  - 16) 8708.21 제외
  - 17) 8523.52 제외
  - 18) 9113 제외
  - 19) 9605, 9612.10, 9619.00 제외
- 자료: WTO·ITC·UNCTAD, 2021, p. 42.

## 2) 양허관세와 최혜국대우 관세의 구조<sup>35)</sup>

- 조지아의 2021년 전체 품목의 양허관세(Bound duty)는 7.2%, 최혜국대우 관세(MFN)는 1.4%로 양허관세가 5.8% 정도 높음
  - 농산물의 경우 2020년 기준 양허관세는 12.5%, 최혜국대우 관세는 5.9%로 양허관세가 6.6% 정도 높음
  - 비농산물의 경우 2020년 기준 양허관세는 6.3%, 최혜국대우 관세는 0.6%로 양허관세가 5.7% 정도 높음
  - 무역가중평균(Trade weighted average)의 경우 2019년 기준 전체 품목은 9.5%이며, 농산물은 1.2%, 비농산물은 8.3%임

---

35) WTO·ITC·UNCTAD, *World Tariff Profiles 2021*, p. 95, [https://www.wto.org/english/res\\_e/booksp\\_e/tariff\\_profiles21\\_e.pdf](https://www.wto.org/english/res_e/booksp_e/tariff_profiles21_e.pdf), 검색일자: 2021. 7. 27.

〈표 II-4〉 조지아 관세율 분포 요약

(단위: %)

구분	전체	농산물	비농산물
양허관세	7.2	12.5	6.3
2020년 MFN 관세	1.4	5.9	0.6
2019년 무역가중평균	9.5	1.2	8.3

자료: WTO·ITC·UNCTAD, 2021, p. 95.

- 조지아에서 최대 적용 가능한 관세율 수준인 양허관세의 경우 농산물은 10~15%이 적용되는 품목의 비율이 71.7%로 압도적으로 높았고, 비농산물 또한 동일구간이 적용되는 품목의 비율이 32.3%로 가장 높음
  - 비농산물의 경우 0~10%의 총적용비율이 67.58%이며 0~15%의 총적용비율이 약 99.7%로, 대부분의 품목이 0~15% 관세율 적용구간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 무관세 적용 비율이 27.5%, 5~10% 적용 비율이 22.1%, 그리고 0~5% 적용 비율이 17.9%의 순으로 나타남
  
- 최혜국대우 관세의 경우 농산물은 무관세 적용 품목의 비율이 49.9%로 가장 높고, 비농산물 또한 동일구간이 적용되는 품목의 비율이 93.9%로 압도적으로 높음
  - 농산물의 경우 10~15%의 관세율 적용 품목의 비율이 46.1%로 무관세 적용 품목의 비율과 유사한 수준임
  
- 조지아로 수입된 물품이 적용받은 관세율 구간을 살펴보면, 농산물의 경우 10~15%의 관세율 적용 구간이 57%로 가장 높았으며, 비농산물의 경우 무관세 적용품목이 79.9%로 압도적으로 높았음

〈표 II-5〉 조지아 관세율 분포: 양허관세 및 최혜국대우 관세

(단위: %)

구분		무관세	0 초과 5 이하	5 초과 10 이하	10 초과 15 이하	15 초과 25 이하	25 초과 50 이하	50 초과 100 이하	100 초과
농 산 물	양허관세	8.0	1.6	6.2	<b>71.7</b>	10.1	2.2	0.1	0.1
	2020년 MFN 관세	<b>49.9</b>	2.5	0.5	46.1	0.8	0.1	0.1	0
	2019년 수입 <sup>1)</sup>	31.9	8.8	1.3	<b>57.0</b>	1.0	0	0	0
비 농 산 물	양허관세	27.5	17.9	22.1	<b>32.3</b>	0.3	0	0	0
	2020년 MFN 관세	<b>93.9</b>	1.3	0	4.5	0	0	0	0
	2019년 수입 <sup>1)</sup>	<b>79.9</b>	2.0	0	4.7	0	0	0	0

주: 1) 전체 수입 중 해당 구간의 관세율을 적용받아 수입된 비중  
 자료: WTO·ITC·UNCTAD, 2021, p. 95.

- 산업별로 세분화하여 관세율을 살펴보면 양허관세가 가장 높은 품목은 농산물의 경우 음료, 담배(28.4%)이며 비농산물은 의류(12.6%)임
  - 농산물은 종자, 지방 및 기름(3.7%)과 면섬유(9%)를 제외하고 단순 평균세율이 10%를 초과하였음
    - 종자, 지방 및 기름은 무관세 비중이 66.3%에 달함
  - 비농산물은 의류와 석유제품(12%), 가죽, 신발(10.4%)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관세율 수준이 10% 미만임
    - 어류와 수산물(1.1%)은 무관세 비중이 무려 90.8%에 달함
  
- 최혜국대우 관세가 가장 높은 품목은 농산물의 경우 음료, 담배(10.5%)이며 비농산물은 광물, 금속(1.9%)임
  - 농산물은 양허관세와 유사하게 종자, 지방 및 기름(0.1%)과 면섬유(0%) 및 기타 농산물 (0.3%)을 제외하고 단순평균세율이 4.8~8.9% 범위 내에 있음

- 무관세 비중의 경우 종자, 지방 및 기름은 99.4%, 면섬유는 100%, 그리고 기타 농산물은 97.8%에 달함
- 비농산물은 광물, 금속(1.9%)와 목재와 종이제품(1.7%)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관세율 수준이 0.6% 미만임
  - 또한 비농산물의 무관세 비중이 84.4~100% 범위 내 있음
- 수입 점유율이 가장 높은 품목은 광물, 금속(21%)이며 수송장비(14.8%)와 화학제품(11.9%)이 그 뒤를 잇고 있음
  - 전체 품목 중 농산물 전체의 수입 점유율은 12.7%이며 비농산물은 87.3%로 나타남

〈표 II-6〉 조지아 산업별 관세율 수준

(단위: %)

품목	양허관세			최혜국대우 관세			수입	
	평균 세율	무관세 비중 <sup>1)</sup>	최고 세율	평균 세율	무관세 비중 <sup>1)</sup>	최고 세율	비중 <sup>2)</sup>	무관세 비중 <sup>3)</sup>
동물제품	11.9	0.9	12	8.4	27.0	12	1.6	10.6
낙농제품	12.1	0	25	4.8	46.2	12	0.8	62.6
과실 및 채소, 식물제품	13.2	0	30	8.9	25.7	12	1.6	17.1
커피, 차	12.3	0	20	4.6	54.2	12	1.0	24.1
곡물 및 그 조제품	14.0	1.1	36	6.8	45.1	36	3.2	52.4
종자, 지방 및 기름	<b>3.7</b>	<b>66.3</b>	<b>12</b>	0.1	99.4	12	1.1	62.9
설탕 및 과자류	11.2	0	12	10.5	12.4	12	0.7	0.8
음료, 담배	<b>28.4</b>	<b>0</b>	<b>342</b>	<b>12.1</b>	<b>2.1</b>	<b>61</b>	2.3	4.7
면섬유	9.0	0	12	<b>0</b>	<b>100</b>	<b>0</b>	0	100
기타 농산물	10.6	1.5	15	0.3	97.8	12	0.4	97.2
어류 및 수산물	<b>1.1</b>	<b>90.8</b>	<b>12</b>	<b>0</b>	<b>100</b>	<b>0</b>	0.4	100
광물, 금속	7.0	31.9	20	<b>1.9</b>	<b>84.4</b>	<b>12</b>	<b>21.0</b>	<b>89.0</b>
석유제품	12.0	0	12	<b>0</b>	<b>100</b>	<b>0</b>	8.0	100

〈표 II-6〉의 계속

품목	양허관세			최혜국대우 관세			수입	
	평균 세율	무관세 비중 <sup>1)</sup>	최고 세율	평균 세율	무관세 비중 <sup>1)</sup>	최고 세율	비중 <sup>2)</sup>	무관세 비중 <sup>3)</sup>
화학제품	6.2	8.8	12	0.6	91.7	12	11.9	76.8
목재와 종이제품	3.9	65.5	12	1.7	86.2	12	4.6	90.3
식물	8.2	0.3	12	0	99.5	5	2.4	92.9
의류	<b>12.6</b>	<b>0</b>	<b>15</b>	<b>0</b>	<b>100</b>	<b>0</b>	2.1	100
가죽, 신발 등	10.4	10.7	12	<b>0</b>	<b>100</b>	<b>0</b>	2.4	100
기계류	3.2	38.6	12	0.2	98.7	12	9.3	98.8
전기기기	2.5	50.3	12	0.1	98.8	5	6.4	99.6
수송장비	9.9	16.3	12	0	92.4	0	14.8	20.8
기타 제조업 제품	7.0	34.3	12	0.1	99.5	12	3.9	98.6

주: 1) 해당 품목군의 전체 HS 6단위 중 무세인 HS 6단위의 비중

2) 해당 품목군의 수입 점유율

3) 해당 품목군의 전체 수입 중 최혜국대우 관세가 무세인 수입의 비중

자료: WTO·ITC·UNCTAD, 2021, p. 95.

### 3)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세금의 종류<sup>36)</sup>

-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세금의 종류는 관세, 부가가치세 및 소비세이며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관세와 소비세는 물품별 세율 차이가 존재함
- 관세는 「조세법」 제197조에 따라 수입신고액의 5% 또는 12%가 부과되며 주류의 경우 종량세가 부과됨<sup>37)</sup>

36) 조지아 법무부, "TAX CODE OF GEORGIA," 2019. 12. 10., <https://matsne.gov.ge/en/document/view/1043717?publication=152>, 검색일자: 2021. 5. 25.

37) 물품의 수출, 환승 및 재수출은 관세 및 수수료가 면제됨

○ 5% 또는 12%로 기재되지 않은 품목의 관세율은 0%라고 볼 수 있으며 전체 품목의 약 90%가 0%의 관세율이 적용됨<sup>38)</sup>

□ 5%의 관세율이 적용되는 품목은 육과 식용 설육, 낙농품, 코코아와 그 조제품, 화장품, 비누와 왁스, 플라스틱, 철강제품 및 전자기기 등임

〈표 II-7〉 관세율 부과 품목(5%)

부		류	
01	동물성 생산품	02	육과 식용 설육
		04	낙농품 등 기타 동물성 생산품
04	조제식료품	18	코코아와 그 조제품
06	화학공업생산품	33	정유(essential oil)와 화장품 등
		34	비누와 왁스 등
07	플라스틱과 고무	39	플라스틱과 그 제품
15	비금속과 그 제품	73	철강제품
16	기계류와 전자기기	85	전자기기와 그 부분품 등

자료: 조지아 법무부, "TAX CODE OF GEORGIA," 2019.12.10., <https://matsne.gov.ge/en/document/view/1043717?publication=152>, 검색일자: 2021. 5. 25.

□ 12%의 관세율이 적용되는 품목은 동식물성 생산품과 지방, 조제식료품, 광물성 생산품과 화학공업생산품, 플라스틱, 목재, 석과 도자제품, 귀금속 및 철강제품 등임

38) 미국 상무부 프라이버시 쉴드, "Georgia - Import Tariffs," <https://www.privacyshield.gov/article?id=Georgia-Import-Tariffs>, 검색일자: 2021. 5. 20.

〈표 II-8〉 관세율 부과 품목(12%)

부		류	
01	동물성 생산품	01	산 동물
		02	육과 식용 설육
		04	낙농품 등 기타 동물성 생산품
02	식물성 생산품	07	채소
		08	과실과 견과류
		09	커피와 향신료
		11	밀가루와 곡분
03	동식물성 지방	15	동식물성 지방
04	조제식료품	16	육과 어류 조제품
		17	당류와 설탕과자
		19	곡물과 곡분의 조제품 및 베이커리 제품
		20	채소와 과실의 조제품
		21	조제식료품
		22	음료와 주류
		23	사료
		24	담배
05	광물성 생산품	25	소금 등 암석광물
06	화학공업생산품	34	비누와 왁스 등
07	플라스틱과 고무	39	플라스틱과 그 제품
09	목재와 그 제품	44	목재와 그 제품
13	석·도자·유리제품	68	돌과 시멘트 제품 등
		69	도자제품
14	진주·귀석·귀금속	71	진주·귀석·귀금속
15	비금속과 그 제품	73	철강제품

자료: 조지아 법무부, "TAX CODE OF GEORGIA," 2019. 12. 10., <https://matsne.gov.ge/en/document/view/1043717?publication=152>, 검색일자: 2021. 5. 25.

- 주류에는 종량 관세율이 적용되며, 범위는 1리터당 0.2유로에서 1.5유로로 분포되어 있으며 위스키나 럼주 등 2208호의 기타의 주류는 알코올 부피 또는 헥토리터당 1.5유로를 부과함
  - 종량관세 적용 품목은 포도주(HS 2204), 베르뭇(HS 2205), 기타의 발효주(HS 2206), 주정(HS 2207), 기타의 주류(HS 2208) 및 식초(HS 2209) 등이 있음
  
- 승용차(HS 8703호)에 대한 관세는 엔진 배기량( $\text{cm}^3$ )당 0.05라리를 부과하고 차량 제조년도당 5%의 관세율을 부과하여 계산됨
  - 2021년도에 제작된 엔진  $3\text{cm}^3$ 의 승용차의 관세는 157.5라리로 계산됨<sup>39)</sup>
  
- 부가가치세(VAT)는 「조세법」 제169조에 따라 물품 수입액의 18%가 부과됨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수입신고액에 관세와 물품 수입에 부수적인 서비스 비용을 합친 금액으로 함
  
- 소비세(Excise)는 「조세법」 제188조(일반물품) 또는 제188의 1조(주류)에 따라 물품별 차등 부과됨
  - 담배(HS 24류)의 경우 완제품은 수량(1개비 또는 1갑)당 1.7라리에서 2.2라리의 소비세가 부과되고, 원재료는 중량(1kg)당 60라리가 부과됨
    - 전자담배 원재료(HS 3824호)는 부피( $1\text{ml}$ )당 0.2라리를 부과함
  - 승용차(HS 8703호)와 이륜자동차(HS 8711호)의 경우 엔진 배기량( $\text{cm}^3$ )과 차량 제조년도별로 1.5라리부터 2.4라리의 범위 내에서 차등 부과함
  - 석유가스제품 및 천연가스(HS 27류)의 경우 부피( $1,000\text{cm}^3$ ) 또는 중량(1톤)을 기준으로 120라리부터 200라리의 범위 내에서 차등 부과됨
    - 석유제품과 석유 증류물 및 폐유 등은 중량(1톤)당 350라리부터 800라리 범위 내에서 차등 부과됨

39) 조지아 국세청, "Auto/Moto Levy Calculator," <https://www.rs.ge/CarClearance-en?cat=2&tab=1>, 검색일자: 2021. 7. 27.

- 바이오 디젤(HS 3826호), 열분해성 액체제품(HS 3911호), 화학공업제품(HS 29류), 플라스틱 제품(HS 39류), 윤활제(HS 3403호) 등은 중량(1톤)당 150라리부터 800라리 범위 내에서 차등 부과됨
  - 주류(HS 22류)의 경우 부피(1L) 또는 순수 알코올 부피(1L)를 기준으로 0.12%에서 22.5%의 범위의 소비세율이 적용됨
- 「관세법」 제32조에 따라 통관 수수료는 기본적으로 무료이나 일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음
- 이해관계인 요청에 따라 근무시간 외, 국경세관지점(CCP)의 외부 또는 국세청 권한 내 통관절차를 수행하는 외부장소에서 통관을 진행하는 경우
  - 「관세법」 적용에 대한 국세청의 사전결정 또는 정보 제공을 위해 신청자가 국세청에 제시한 물품에 대한 분석 및 검증 등을 수행하고, 신청자에게 물품을 반송하기 위해 우편 서비스를 이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세관 신고를 확인할 목적으로 물품을 분석 및 검사하는 등 국세청의 권한 내 활동과 관련된 비용 이외의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한 경우
  - 재화의 특성이나 잠재적 위험으로 인해 예외적인 통제 조치를 시행한 경우
  - 통관 절차상 법령으로 정해진 기타 서비스

## 나. 품목분류 제도

- 조지아는 2009년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HS 협약)’에 가입하였고, 2011년부터 상품분류에 HS code를 활용 중임<sup>40)</sup>

40) UNECE, *Gap Analysis of Current Legal and Technical Framework for Electronic C2C Exchange of Transit Information between Georgia and Neighboring Countries*, 2014. 10. 28., p. 15, <https://unece.org/DAM/trans/doc/themes/UNDAC2C/UNDA1213AA-02e14.pdf>, 검색일자: 2021. 8. 5.

- 「관세법」 제35조에 따라 물품은 대외경제활동 국가상품명칭(Foreign Economic Activity of National Commodity Nomenclature, FEANCN)<sup>41)</sup>에 근거하여 식별 및 분류되어야 하며, FEANCN은 조지아 재무부 장관의 명령에 의해 규정됨
  - FEANCN은 HS 협약에 따른 명명법과 일치하는 상품분류코드 체계이며, 국가 경제의 세부사항을 고려하여 조지아의 FEANCN는 11자리 숫자로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음
  
- 조지아 국세청은 HS code 조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수출입 물품의 HS code를 입력하면 적용되는 관세, 부가가치세 및 소비세의 정보가 도출됨<sup>42)</sup>
  - 현재 제공되는 정보는 HS 2012이며, HS 2017로 데이터 업데이트 중에 있음

## 5. 원산지제도

### 가. 개요<sup>43)</sup>

- 조지아의 원산지제도는 적용목적에 따라 비특혜 원산지제도(non-preferential origin)와 특혜 원산지제도(preferential origin)로 구분하여 운영됨
  - 비특혜 원산지제도는 반덤핑조치, 수입물량 제한 또는 관세 할당량 제한 등의 무역구제조치 이행을 위해 사용되거나 무역통계작성 목적 및 원산지 표시법령 (made in label) 이행을 위해 활용됨

41) 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키르기스스탄, 아르메니아 등 독립국가연합(CIS)국가 중심으로 이루어진 유라시아 경제연합(EEU)에서 사용하는 상품분류체계로서 최초 6단위는 HS 협약을 기준으로 설정되며 7, 8단위는 EU의 상품분류체계를 기준으로 하며, 9단위는 CIS의 FEACN을 기준으로 함. 10단위 이후부터는 각 국가에서 설정함(자료: 유라시아 경제위원회(EEC), "Classification of Goods according to the FEACN of the CU," [http://www.eurasiancommission.org/en/act/tam\\_sotr/departament/KlassPoTNVED\\_TS/Pages/default.aspx](http://www.eurasiancommission.org/en/act/tam_sotr/departament/KlassPoTNVED_TS/Pages/default.aspx), 검색일자: 2021. 8. 4.)

42) HS code 조회 서비스(<https://www.rs.ge/CommodityCodes-en?cat=1&tab=1>) 참고

43) 조지아 국세청, "Certificate of origin of goods," 2019. 2. 27., [https://old.rs.ge/Default.aspx?sec\\_id=5037&lang=1](https://old.rs.ge/Default.aspx?sec_id=5037&lang=1), 검색일자: 2021. 6. 21.

- 비특혜 원산지제도는 조지아 「조세법」(THE TAX CODE)과 시행령 제420호(원산지 국가, 원산지 증명서 양식, 신청 및 발급에 대한 규칙)에 따라 운영됨<sup>44)</sup>
- 특혜 원산지제도는 특정 국가 또는 지역단위와 별도 계약을 체결해 당사자들 간에 거래되는 수출입물품의 관세율을 무세 또는 실행관세율보다 낮게 적용하는 등 관세상의 특혜를 부여하는 경우 활용됨
- 원산지 증명서 발급 후 분실 또는 훼손된 경우 수출자의 신청에 따라 원산지 증명서의 복사본이 발급될 수 있음
  - 복사본은 원본의 발급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함
- 통관 이후 원산지 증명서의 소급적용이 가능하며<sup>45)</sup>, 수출신고서 또는 관련 서류를 국세청 또는 상공회의소에 제출하고 제공된 정보가 올바른지 검증 후 발급됨
  - EU의 소급 발행이 가능한 경우는 ① 오류, 비자발적인 누락 또는 특수 상황으로 인해 수출 시 발행되지 않은 경우 또는 ② 원산지 증명서가 발급되었지만 수입 시 기술적인 이유로 세관당국이 승인하지 못했음을 세관당국이 입증하는 경우로 구분됨<sup>46)</sup>
  - 중국의 경우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소급 발행이 가능하며 소급 발행된 원산지 증명서는 재발행일로부터 1년간 유효함<sup>47)</sup>
    - 소급 발행이 가능한 경우는 ① 불가항력, 비자발적인 오류, 누락 또는 기타 유효한 원인으로 인해 선적 전이나 선적 시에 발행되지 않은 경우 또는 ② 원산지 증명서가 발급되었지만 수입 시 승인되지 않아 수입국의 세관당국이 요청한 경우로 구분됨

44) WTO, 2015, p. 38.

45) PWC, "Certificates of Origin," 2015, [https://www.investingeorgia.org/ru/ajax/downloadFile/567/Certificates\\_of\\_Origin](https://www.investingeorgia.org/ru/ajax/downloadFile/567/Certificates_of_Origin), 검색일자: 2021. 6. 1.

46) 조지아-EU DCFTA협정문, "ARTICLE 17: Movement certificates EUR.1 issued retrospectively,"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PDF/?uri=OJ:L:2014:261:FULL&from=EN>, 검색일자: 2021. 9. 15.

47) 조지아-중국 FTA협정문, "ARTICLE 3.14(5): CERTIFICATE OF ORIGIN," [http://fta.mofcom.gov.cn/georgia/annex/xdzw\\_en.pdf](http://fta.mofcom.gov.cn/georgia/annex/xdzw_en.pdf), 검색일자: 2021. 9. 15.

## 나. 원산지 증명서 발급제도

- 조지아의 원산지 증명서 발급방법은 기관발급과 인증 수출자 제도에 따른 자율발급 제도가 있음

### 1) 기관발급 원산지 증명서<sup>48)</sup>

- 조지아 당국이 발행하는 원산지 증명서의 종류는 총 여섯 가지임
  - 비특혜 원산지 증명서
  - 일반 특혜(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 GSP) 원산지 증명서로서, ‘서식 A’ - 일반특혜(GSP) 원산지 증명서 적용 국가는 미국, 일본, 캐나다임
  - 조지아-CIS FTA 특혜 원산지 증명서로서 ‘서식 CT-1’
  - 조지아-터키 FTA와 조지아-EU DCFTA에 따라 터키로 수출 시 원산지 누적기준 증명을 위한 원산지 증명서로서 ‘EUR 1’
  - 조지아-중국 FTA에 따른 원산지 증명서
  - 조지아-홍콩 FTA에 따른 원산지 증명서
  - 관세특혜지역 또는 국가가 아닌 곳으로 와인제품을 수출하는 경우에 대한 와인 제품 특혜 원산지 증명서<sup>49)</sup>
- 원산지 증명서 발급기관은 조지아 국세청과 조지아 상공회의소가 담당함
  - 원산지 증명서 중 ‘서식 EUR 1’, 조지아-중국 FTA와 조지아-홍콩 FTA 원산지 증명서, 포도주 및 조지아 자유산업지대에서 생산한 물품의 원산지 증명서는 국세청에서만 발급 가능함

48) 조지아 국세청, “Certificate of origin of goods,” 2019. 2. 27., [https://old.rs.ge/Default.aspx?sec\\_id=5037&lang=1](https://old.rs.ge/Default.aspx?sec_id=5037&lang=1), 검색일자: 2021. 6. 21. 및 조지아 국세청, “Certificate of Preferential Origin of Goods,” 2020. 9. 17., <https://www.rs.ge/LegalEntityOriginRegimesTreaties-en?cat=2&tab=1>, 검색일자: 2021. 7. 22.

49) PWC, 2015, [https://www.investingorgia.org/ru/ajax/downloadFile/567/Certificates\\_of\\_Origin](https://www.investingorgia.org/ru/ajax/downloadFile/567/Certificates_of_Origin), 검색일자: 2021. 6. 1.

- 'EUR 1'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4개월이며 조지아-중국 및 홍콩의 원산지 증명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임

- 원산지 증명서 발급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으며 발급신청서와 필요 서류는 전자적 형태로 준비하여 국세청이나 상공회의소에 제출하면 됨
  - 원산지 증명 신청서로서 HS code 4단위, 수량, 수출입자 이름, 주소 및 국가 등을 포함
    - '서식 A'의 경우 HS code 11단위, 조지아-중국 FTA 원산지 증명서의 경우 HS code 6단위가 필요함
  - 비특혜 원산지 증명서의 경우 조지아 정부 법령(Decree) N453의 부록 N4에 따른 물품 소유권과 기준에 대한 신고서
  - 계약서 및 송장
  - 포도주 또는 알코올 주류 수출의 경우 적합성 증명서
  - 기타 원산지 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서류 등
- 국세청 또는 상공회의소는 원산지 증명서 발급 신청을 확인한 후 약 3영업일 이내 발급해야 하며 발급비용은 무료임

## 2) 인증 수출자(Authorized Exporter)<sup>50)</sup>

- 인증 수출자란 조지아산 물품의 특혜관세 적용을 위해 수출업체가 직접 원산지 증명서를 작성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임
  - 인증 수출자는 원산지 증명서를 자율발급하기 때문에 EU 국가 수출 시 필요한 기관 발급 원산지 증명서(EUR 1)의 생략이 가능함

50) 조지아 국세청, "Authorized Exporter," 2020. 9. 15., <https://www.rs.ge/LegalEntityAuthorizedPersons-en?cat=3&tab=1>, 검색일자: 2021. 7. 20.

- 원산지 증명서 자율발급이 가능한 상대 국가들은 조지아와 FTA 협정을 체결한 국가들 중 일부이며 다음과 같음
  - 조지아-EU DCFTA
  - 조지아-터키 FTA
  - 조지아-EFTA(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 스위스)
  - 조지아-우크라이나 FTA
  
- 인증 수출자의 신청 대상은 무역업체 또는 비영리업체이면서 다음의 조건을 충족한 자여야 함
  - 조지아 「관세법」에 따른 벌칙 제재 사실이 없거나 벌칙 적용 후 12개월이 경과한 자
  - 연체된 세금이 없는 자(국세청의 세금채무 지급연기가 인정되는 경우 제외)
  - 최근 12개월간 총 10만라리 이상의 특혜적용대상 물품을 6회 이상 수출한 자
  - 조지아에서의 경제활동 경력이 최소 1년 이상인 자
  
- 인증 수출자의 자격조건을 갖춘 업체는 신청서, 무역업체 또는 비영리업체임을 증명하는 기업등록부와 수출물품이 특혜관세 적용이 가능한지 확인 가능한 원산지 확인서류를 전자적인 방법 또는 서면으로 국세청에 제출해야 함
  - 국세청은 신청서 접수 후 영업일 기준 30일 이내에 인증 수출자 지위 부여 또는 거부에 대한 결정을 통지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추가적으로 영업일 기준 30일을 연장할 수 있음
  - 인증 수출자 지위 부여가 확정된 경우 해당 수출자에게 원산지 증명서 자율발급 허가번호를 부여해야 함
  
- 인증 수출자는 수출물품의 인보이스, 운송장 또는 기타 상업서류를 바탕으로 원산지 식별이 가능한 세부정보를 작성하여 원산지 증명서를 자율 발급할 수 있음
  - 원산지 증명서 발급 대상 물품은 관세가치가 있는 모든 물품이며, 원산지가 여러 가지인 물품을 일괄 수출하는 경우, 물품의 관세가치의 합은 총 6천유로를 초과할 수 없음

- 인증 수출자는 특혜 관세 혜택을 받는 물품에 대해서만 원산지 증명서를 자율발급할 수 있으며 국세청 요구에 따라 관련 자료의 제출 및 변경 통지의 의무와 서류보관 의무를 가짐
  - 국세청이 수출자의 수출신고서나 원산지 증명서와 관련된 수출물품에 대한 모든 서류와 정보를 서면으로 요청하는 경우 해당 자료를 제출해야 함
  - 조지아 법률에 의해 지정된 기간 동안 원산지 신청서와 관련 문서를 보관해야 함
  - 수출자의 원산지 증명서 또는 수출물품과 관련된 필요서류에 대한 정보들의 변경 사항이 발생 시 영업일 기준 10일 이내에 국세청에 통지해야 함
  
- 원산지 증명서의 자율발급 시 인증수출자 번호, 물품의 원산지, 원산지 증명서 작성 장소 및 작성일 및 수출자 이름과 서명 날인이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함
  - 한-EU의 인증 수출자 원산지 자율발급 문구가 동일함

[그림 II-3] 조지아의 원산지 증명서 자율발급 문구

<p>"An exporter of the products covered by this document (customs authorization No... (1)) declares that except where otherwise clearly indicated, these products are of ...(2) preferential origin".</p> <p>.....</p> <p>(Place and date)</p> <p>.....</p> <p>(Signature of an exporter, also the name of a person, who signs the Declaration, shall be clearly indicated)</p>
---

자료: 조지아 국세청, "Authorized Exporter," 2020. 9. 15., <https://www.rs.ge/LegalEntityAuthorizedPersons-en?cat=3&tab=1>, 검색일자: 2021. 7. 20.

## 다. 원산지 결정 기준

### 1) 조지아-EU DCFTA<sup>51)52)</sup>

- 조지아-EU DCFTA에서 관세혜택을 받는 물품은 FTA 협정에 따른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조지아-EU DCFTA의 원산지 결정기준은 완전생산기준과 충분한 작업 또는 가공처리 생산기준이 있음
  - EU 또는 조지아에서 완전히 획득한 물품(완전생산기준)으로 산 동물, 식물 또는 광물 등
  - 비원산지 재료를 EU 또는 조지아에서 충분한 작업 또는 가공처리(세번변경기준 또는 부가가치기준)를 거쳐 생산한 물품
    - 해당 재료가 ‘범유로지중해협약(Pan Euro Mediterranean cumulation, PEM)’의 부록 II에 명시된 제품별 특별 규정(Product Specific Rules, PSR)에 따라 충분히 작업 또는 가공된 경우
  
- FTA 당사국이 아닐지라도 복수 FTA 간 원산지를 누적해 확대 인정하는 ‘범유로지중해협약(PEM)’에 따라 조지아-EU DCFTA도 원산지 누적기준을 허용함
  - 양자누적(bilateral cumulation)은 EU에서 제품 생산을 할 때, 조지아에서 생산된 재료를 EU에서 생산된 재료로 계산할 수 있으며, 그 반대도 성립한다는 규정임
  - 유사누적(diagonal cumulation)은 범유로지중해협약(PEM)에 따라 관세 특혜를 누리는 제3의 협정당사국에 물품이 수출될 때 그 물품의 재료의 원산지가 ‘범유로지중해협약(PEM)’의 협정 당사국인 EU 또는 조지아인 경우, 해당 재료를 EU 또는 조지아산으로 인정한다는 규정임

51) WTO, 2015, pp. 38~39.

52) Trade EU, “EU-Georgia Deep and Comprehensive Free Trade Area,” <https://trade.ec.europa.eu/access-to-markets/en/content/eu-georgia-deep-and-comprehensive-free-trade-area>, 검색일자: 2021. 9. 13.

- 단 유사누적은 수출입 계약 당사국 간에 FTA 협정이 체결되어 있고 동일한 원산지 규정을 적용한 경우에만 인정됨
- 2020년 4월 기준 조지아와 EU의 공통 FTA 협정국은 아이슬란드, 스위스(리히텐 슈타인 포함) 및 노르웨이임

□ 원산지 결정기준의 보충기준으로 허용오차기준, 직접운송원칙 및 최소공정기준 등이 있음

- 허용오차 규정은 생산자가 일반적으로 제품별 특정 규정(PSR)에 의해 금지된 비원산지 재료를 물품의 공장인도가격(ex-works price)의 최대 10%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규정을 의미함
  - 허용오차가 승인되는 범위는 제품별 특정 규정(PSR) 목록상 비원산지 재료의 최대 임계값을 초과할 수 없음
  - 직물과 의류(HS 50류부터 63류)의 경우 특정 허용오차규칙(Notes 5 to 6 of Annex I Introductory notes to the list in Annex II)이 적용됨
- 직접운송원칙이란 물품이 조지아 또는 EU에서 각 국가로 직접 운송되거나 제3국에서 추가 가공처리 없이 운송해야만 관세혜택을 받는 원산지로 인정한다는 규정을 말함
  - 단 하역, 재선적 및 물품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도록 설계된 기타 방법 등 제3국의 세관 감독하에 이뤄지는 일부 작업은 수행이 가능하며, 이 경우 수입당사자의 세관 당국의 입증서류 등이 수반되어야 함
- 최소공정기준이란 최종물품에 불충분한 작업 또는 가공처리를 규정한 것으로 물품의 단순혼합, 부품조립, 포장, 도살, 다림질, 도장, 곡물의 도정 등을 말하며 해당 공정은 원산지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2) 조지아-중국 FTA<sup>53)</sup>

- 조지아-중국 FTA의 원산지결정기준은 완전생산기준과 역내가치기준이 있음
  - 조지아 또는 중국에서 완전히 획득 또는 생산한 물품(완전생산기준)
  - 조지아 또는 중국 원재료로 해당 국가에서 독점적으로 생산한 물품
  - 조지아 또는 중국 원재료로 해당 물품의 최소 40% 이상을 생산한 물품(역내가치 기준)
    - HS 1~24류, 제4001호, 5201호, 5202호 및 5203호의 물품은 부속서 II-A의 제품별 특별 규정(PSR)을 적용함
  
- 원산지결정기준 중 역내가치기준(Regional Value Content, RVC)은 완성물품의 공장인도가격(EXW price)에서 비원산지 재료의 가격(Value of the Non-originating Materials, VNM)을 제외한 금액을 완성물품의 공장인도가격(EXW price)으로 나눈 비율이 40% 이상일 것을 요구함
  - 비원산지 재료의 가격(VNM)은 원산지가 미확정된 물품을 포함하며 수입 당시 관세가격으로 함
  - 부속서 II-A(PSR)를 적용받는 물품의 경우 허용오차 규정이 적용됨
    - 비원산지 재료가 물품 생산에 사용되었으나 품목분류 변경이 없다면, 비원산지 재료의 가격이 물품의 공장인도가격(EXW price)의 최대 10%에 한해 물품 생산에 사용될 수 있도록 허용됨

[그림 II-4] 조지아-중국 FTA 역내가치기준 계산식

$$RVC = \frac{\text{공장인도가격(EXW Price)} - \text{비원산지 재료 가격(VNM)}}{\text{공장인도가격(EXW Price)}}$$

자료: China FTA Network, "China-Georgia FTA," <http://fta.mofcom.gov.cn/topic/engeorgia.shtml>, 검색일자: 2021. 9. 15.

53) China FTA Network, "China-Georgia FTA," <http://fta.mofcom.gov.cn/topic/engeorgia.shtml>, 검색일자: 2021. 9. 15.

- 원산지 결정기준의 보충기준으로 원산지 누적기준, 직접운송원칙 및 최소공정기준이 있음
  - 원산지 누적기준이란 조지아 또는 중국 원재료가 각 상대국에서 물품 생산에 사용된 경우, 해당 재료의 원산지는 생산국의 것으로 본다는 규정임
  - 직접운송원칙이란 물품이 조지아 또는 중국에서 각 국가로 직접 운송되거나 제3국에서 최대 3개월까지 임시보관 후 직접 운송되는 물품만이 관세혜택을 받는 원산지로 인정한다는 규정임
    - 임시보관의 기준은 ① 물품의 운송이 지리적 또는 운송 조건으로 인해 정당화되는 경우 ② 물품의 하역 및 재선적 또는 양호한 상태유지를 위해 필요한 작업 외의 작업을 하지 않는 경우 ③ 제3국 세관당국의 감독하에 보관되는 경우 등이 있음
    - 임시보관의 적합성은 수입당사자의 세관당국의 입증서류 등으로 증명될 수 있음
  - 최소공정기준이란 최종물품에 불충분한 작업 또는 가공처리를 규정한 것으로 물품의 단순혼합, 부품조립, 포장, 도살, 다림질, 도장, 곡물의 도정 등을 말하며 해당 공정은 원산지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6. 권리구제제도

### 가. 사전심사제도(advance ruling)<sup>54)</sup>

- 국세청은 납세자와 그 대리인의 신청에 근거하여 품목분류 또는 원산지에 대한 사전심사를 진행하고 결정을 내릴 수 있음
  - 또한 「관세법」 제24조에 따라 조지아 재무부 장관은 국세청이 품목분류와 원산지 이외의 다른 요소와 관련된 사전판정을 제기하는 경우, 해당 다른 요소에 대한 사전판정을 내릴 권리가 있음

54) 조지아 법무부 “Customs Code of Georgia,” 2020. 9. 30., <https://matsne.gov.ge/en/document/view/4598501?publication=2>, 검색일자: 2021. 7. 22.

- 「관세법」 제22조에 따라 국세청은 당사자의 신청에 기초하여 품목분류 또는 물품의 원산지를 사전 심사하고 결정을 내릴 수 있음
  - 단 다음의 경우 사전심사신청 대상에서 제외됨
    - 국세청의 품목분류 또는 원산지 사전심사 결정
    - 국세청의 품목분류 또는 원산지 사전심사 결정에 대한 절차
  
- 품목분류 또는 원산지 결정에 관한 사전심사 결정내용은 결정이 발효된 후 통관이 완료된 물품에 대해서만 구속력을 가지며, 결정통지서가 송달된 날부터 신청자에 대한 구속력을 가짐
  
- 사전심사 신청 물품의 통관절차를 진행할 때 신청자는 품목분류 또는 원산지의 사전 심사결정서에 기술된 내용과 완전히 동일한 물품임을 증명해야 함
  
- 품목분류 또는 원산지 사전심사 결정은 발효일로부터 3년간 유효하나, 「관세법」 제23조에 따라 조기에 그 효력을 상실할 수 있음
  - 공통적으로는 해당 결정이 개정 또는 폐지된 법률조항에 근거하는 경우가 있으며, 사전심사 결정의 효력은 개정된 법률조항의 발효일로부터 상실됨
    - 품목분류 사전심사 결정의 경우 국제 HS 협정의 개정으로 인해 해당 물품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때
    - 원산지 사전심사 결정의 경우 세계무역기구(WTO)의 원산지 규정 협정과 더 이상 조화롭지 않을 때
  
- 품목분류 또는 원산지 사전심사 결정은 소급으로 인해 그 효력이 중단되지 않으며 또한 사전심사 결정 내용은 수정되지 않음
  
- 부정확하거나 불완전한 정보에 근거하여 품목분류 또는 원산지 사전심사 결정이 내려진 경우 해당 결정은 무효로 함
  - 사전심사 신청자의 무효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음

- 국세청은 법원의 판단과 사전심사 결정의 내용이 양립하지 않는 경우 등, 일정 사유에 대해 사전심사 결정을 취소할 수 있음<sup>55)</sup>
  - 품목분류의 경우
    - 법원의 판단에 따라 대외경제활동 국가상품명칭(Foreign Economic Activity National Commodity Nomenclature, FEANCN)의 각 조항 해석과 양립할 수 없는 경우
    - FEANCN의 각 조항 해석과 더 이상 양립할 수 없는 기타 구체적인 사례가 존재하는 경우
  - 원산지의 경우
    - 법원의 판단과 양립할 수 없는 경우
    - 조지아 재무장관이 결정한 기타 구체적인 사례가 존재하는 경우
  
- 사전심사 결정이 조기에 효력이 중단되기 전 또는 결정 취소 전에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결정의 효력을 연장할 수 있음
  - 사전심사 결정의 효력 연장이 가능한 사례는 국세청의 품목분류 및 원산지 사전심사 결정 취소 사례와 원산지 사전심사 결정의 조기 효력 상실의 사례로 제한됨
    - 조지아 세관 영역에서 수출할 물품에 대한 원산지 사전심사 결정의 경우 제외됨
  - 사전심사 결정의 효력 연장은 조기에 중단 또는 무효화된 날로부터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음
    - 사전심사 신청자는 효력 연장 혜택을 얻기 위해 조기 중단 또는 무효화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국세청에 기간 연장이 요구되는 물품의 수량과 관련 정보를 적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 국세청은 기간 연장에 대한 결정을 내린 후 신청자에게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안에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함

---

55) 법원의 판단에 따라 사전심사결정이 취소되는 경우 사전심사 결정의 효력은 법원의 판단이 시행된 날부터 중지됨

- 사전심사 결정의 공표와 취소에 대한 절차 및 규칙은 조지아 재무부 장관의 명령에 의해 결정됨
  
- 사전심사 결정의 신청은 서류 또는 전자적 형태로 국세청에 신청해야 하며, 국세청은 심사 결과를 영업일 기준 90일 이내 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함
  - 국세청은 판정 전 추가서류 또는 시험식 분석 등을 요청할 수 있음
  - 판정 비용은 조지아 거주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음
    - 조지아 거주 개인의 경우 5천라리, 그 외의 경우 1만라리
  
- 사전심사 신청자는 결정에 대해 통지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30일 이내 항소할 수 있음
  - 항고는 국세청의 조세심판위원회 또는 법원으로 직접 취할 수 있음

## 나. 사후구제제도

### 1) 개요<sup>56)</sup>

- 조세심판위원회(Council of Tax Appeals)는 조지아 재무부 산하의 조세분쟁 해결 기구임
  - 조세심판위원회는 재무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그 외 행정부와 비정부 부문 대표들이 위원을 맡고 있음
  
- 조세심판위원회는 2단계로 구성되며 조세심판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납세자는 법원에 항소할 수 있음
  - 납세자는 1차로 국세청의 상고심 제출 후 이의가 있는 경우 2차로 조세심판위원회에 항소를 제기할 권리가 있음

---

56) 조지아 조세심판위원회, "About Council," <https://taxdisputes.gov.ge/en>, 검색일자: 2021. 5. 31.

2) 권리구제의 절차<sup>57)</sup>

- 납세자는 다음과 같이 세무서 또는 세관의 결정에 불복하여 국세청 또는 법원에 서면 또는 전자적 형태로 항소장을 제출할 수 있음
  - 납세자가 부과된 세금에 불복하는 경우
  - 세무당국이 환급 신청을 거부한 경우
    - 세무당국이 환급 신청 후 15일 이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거부로 간주됨
  - 국세청의 통고처분 등 행정법에 의한 행위를 납세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 등
  
- 모든 항소는 통지를 받은 후 20일 이내에 국세청 또는 법원에 의해 접수되어야 함
  - 세무당국이 접수하지 않으므로 인해 납세자가 조세불복을 호소하는 경우, 세무당국은 접수하도록 요구된 날짜로부터 20일 이내 항소를 접수해야 함
  
- 국세청에 대한 항소가 불발된 경우 납세자는 불발일로부터 5일 이내 재무부 산하 조세심판위원회에 항소를 제기할 수 있음
  
- 조세심판위원회에 대한 항소가 불발된 경우 납세자는 불발일로부터 9일 이내 법원에 항소를 제기할 수 있음
  
- 납세자는 정해진 기한 내 항소를 제기하거나 상위 기관으로 확대 제기해야 하며, 그렇지 않는 경우 고지서, 세금 납부 요구서 또는 분쟁 중인 기타 행정법적 행위가 최종 효력을 발휘하며 항소는 고려되지 않음
  
- 국세청과 조세심판위원회는 불복제기 접수 후 각각 20일의 영업일 동안 항소를 검토해야 함
  - 항소 검토기간을 최대 45일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납세자에게 연장 통지를 서면으로 제공해야 함

---

57) 조지아 조세심판위원회, "Applicants Area," <https://taxdisputes.gov.ge/en>, 검색일자: 2021. 5. 31.

- 국세청과 조세심판위원회는 검토 후 각각 3일의 영업일과 5일의 영업일 안에 납세자에게 검토의견서를 전달해야 함
- 조세심판위원회의 결정은 불복제기 접수 후 90일 이내에 납세자에게 전달되며 해당 판결은 3년간 유효함<sup>58)</sup>
- 납세자 및/또는 납세자의 공인 대리인은 항소 심사 과정의 각 단계에 참석할 수 있음
- 납세자가 최초에 국세청에 불복하기로 선택한 경우, 납세자는 불복 절차 중에 언제든지 법원에 상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세청 또는 조세심판위원회 내의 상고심사가 중단됨
- 조세심판위원회에서 내린 결정과 해당 문건은 조세심판위원회 웹사이트<sup>59)</sup>에서 조지아어로 확인할 수 있음

## 7. 벌칙

### 가. 개요<sup>60)</sup>

- 조지아 「관세법」상 관세위반이란 조지아 「관세법」에서 개인의 불법 행위(작위 또는 부작위)를 의미함

---

58) UNECE, 2018, p. 39.

59) 조지아 조세심판위원회, “Decisions of Council(საბჭოს გადაწყვეტილებები),” <https://taxdisputes.gov.ge/4043>, 검색일자: 2021. 5. 31.

60) 조지아 국세청, “Violation of Customs Law,” 2020. 9. 15., <https://www.rs.ge/LegalEntityCustomsProcedures-en?cat=11&tab=1>, 검색일자: 2021. 7. 19.

- 관세위반에 따른 관세형벌의 종류는 경고, 벌금, 몰품 또는 운송수단의 몰수 등이 있음
  - 관세위반에 대한 책임은 해당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람에게 있으며, 위반자가 둘 이상일 경우 조지아 「관세법」에 따라 연대책임 또는 개별책임을 짐
  - 관세위반이 둘 이상인 경우 벌칙은 위반 행위별로 각각 적용됨
  - 관세위반은 이전 관세위반이 적발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동일한 위반행위를 한 경우 반복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간주됨
- (몰수) 관세위반이 적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세법」에 따라 위반자를 식별할 수 없는 경우, 국세청은 관세위반 몰품 또는 운송수단을 몰수해야 함
    - 위반자는 국세청에 위반관련 설명서를 제출할 권리가 있음
  - (구금과 수색 등) 국세청은 관세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람에 대한 행정적 구금, 개인적인 수색, 소지품 검사 및 소지품과 서류 등의 압수를 시행할 수 있음
  - (압수) 국세청은 관세위반 적발을 위해 모든 절차에서 범죄와 관련된 물품과 운송수단을 압수할 수 있고 위반자가 소유한 기타 재산과 지급담보금에 대해 압수할 수 있음
  - (채권확보) 국세청은 관세채권확보를 위해 관세유치 또는 담보금 유치, 제3자 납부, 재산압류, 압류한 재산의 양도, 은행계좌 추심명령, 납세자의 현금추심 등의 조치를 적용할 수 있음
    - 다만 관세채권확보를 위한 조치는 위반자가 해당위반에 대해 부과된 관세 제재를 자발적으로 집행하거나, 체납관세 납부를 확실히 담보하는 경우 종료되어야 함

나. 관세벌칙의 종류<sup>61)</sup>

- 조지아 「관세법」 Chapter XXX(Types of Customs Offence and Liability)의 제165조부터 제179조에서 「관세법」 위반과 책임의 유형에 대해 규정함
- 「관세법」 제165조에 따라 물품의 제시 기한, 일반적인 신고 기한, 물품 또는 운송수단의 신고 기한 등을 지연하는 등, 위반한 경우 각각의 위반에 대해 50라리의 벌금이 부과되며 모두 합해 최대 1천라리를 초과하지 않음
  - 해당 위반이 통관절차 위반을 수반하는 경우, 통관절차 위반에 따른 벌칙을 우선 적용함
- 「관세법」 제166조에 따라 세관 라벨(식별수단)을 제거하거나 세관 관리구역(customs control zone)내에 존재하는 운송수단 또는 건물을 손상시키거나 국세청의 동의 없이 세관 라벨물품을 손상시키거나 운송수단을 이동시킨 경우, 해당 소유자에게 500라리의 벌금이 부과됨<sup>62)63)</sup>
  - 반복적인 위반자에게는 1천라리의 벌금이 부과됨
  - 세관 라벨이 부착된 운송수단이나 세관 관리구역에 위치한 건물 또는 구조물에 존재하는 물품으로서 또는 라벨이 부착된 수하물 등이 멸실 또는 손상된 경우, 해당 소유자에게 5천라리의 벌금을 부과함
    - 반복적인 위반자에게는 1만라리의 벌금이 부과됨
- 「관세법」 제167조에 따라 세관신고서 또는 관세평가와 관련된 서류를 잘못 제출하여 납부할 관세가 줄어드는 경우, 줄어든 관세만큼 벌금이 부과됨

61) 조지아 법무부 “Customs Code of Georgia,” 2020. 9. 30., <https://matsne.gov.ge/en/document/view/4598501?publication=2>, 검색일자: 2021. 7. 13.

62) 단 ① 경미한 손상이면서 ② 세관 관리구역에 위치한 라벨이 부착된 운송수단, 건물 또는 구조물에 침투할 수 없으며 라벨이 부착된 수하물 등에 접근할 수 없는 경우 개인에 대해 벌금이 부과되지 않음

63) 해상 선박을 통해 조지아 세관 지역으로 수입되는 컨테이너의 경우 개인에 대해 벌금이 부과되지 않음

- 반복적인 위반 행위에는 줄어든 관세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됨
  - 개인이 3천라리까지의 물품에 대한 잘못된 정보가 포함된 세관신고서 또는 관련 필요서류를 제출하여 납부할 관세가 줄어든 경우, 줄어든 관세금액의 40%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됨
    - 반복적인 위반 행위에는 줄어든 관세만큼 벌금이 부과됨
- 「관세법」 제168조에 따라 세관통제를 회피하거나 비밀리에 수출입 물품<sup>64)</sup>을 불법 운반 또는 하역하는 경우, 물품의 관세가치에 상당하는 벌금 또는 물품이나 운송수단의 몰수에 처함
- 반복적인 위반 행위에는 물품 또는 운송수단을 압수하며, 압수하지 않는 경우 물품의 관세가치에 상당하는 벌금이 부과됨
  - 개인이 3천라리까지의 물품에 대한 세관통제를 회피하거나 비밀리에 수출입 물품을 불법 운반 또는 하역하는 경우, 1천라리의 벌금 부과 또는 물품이나 운송수단의 몰수에 처함
    - 반복적인 위반 행위에는 줄어든 관세만큼 벌금이 부과됨
  - 세관통제를 회피하거나 비밀리에 수출입 물품을 불법 운반한 운송수단의 경우, 2천라리의 벌금이 부과됨
    - 반복적인 위반 행위에는 4천라리의 벌금이 부과됨
- 「관세법」 제169조에 따라 조지아 세관 국경을 넘어 3만라리 이상 또는 5만라리를 초과하지 않는 외국통화의 현금과 유가증권 등을 세관통제를 회피하거나 비밀리에 또는 수출입 신고를 생략하는 등 불법적으로 밀수출입한 경우, 3천라리의 벌금 부과 또는 물품 몰수에 처함
- 5만라리 이상 또는 10만라리를 초과하지 않는 외국통화의 현금과 유가증권 등의 불법적으로 밀수출입한 경우, 5천라리의 벌금 부과 또는 물품 몰수에 처함
- 
- 64) 세관통제 회피 및 비밀리에 이동된 수출입 물품의 관세 가치가 1만 5천라리를 초과하는 경우 및 조지아 세관 국경을 불법적으로 통과하여 수입된 물품의 관세 가치가 5천라리를 초과하는 경우, 형사상 책임이 부과되지 않는 경우에 한해 본조에 따른 벌칙이 적용됨.

- 10만라리 이상 또는 그에 상응하는 외국통화의 현금과 유가증권 등을 불법적으로 밀수출입한 경우, 해당 현금과 유가증권 등의 10%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됨
- 미신고 물품이 있을 때 신고 및 미신고 물품의 합계액이 5만라리를 초과하거나 또는 이와 상응하는 외국통화액이 존재하는 경우, 해당 수출입물품은 불법적으로 밀수출입한 것으로 간주됨
  
- 「관세법」 제170조에 따라 국세청의 동의 없이 물품 및 운송수단 등이 세관통제구역에서 벗어나거나 운송수단에 의해 통관 경로에서 벗어난 물품을 적재 또는 하역하는 경우, 1천라리의 벌금이 부과됨
  - 반복적인 위반 행위에는 2천라리의 벌금이 부과됨
  
- 「관세법」 제171조에 따라 통관절차와 통관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500라리의 벌금이 부과됨
  - 반복적인 위반 행위에는 1천라리의 벌금이 부과됨
  - 조지아 「관세법」에 따라 해당 위반행위에 대해 다른 처분이 존재하는 경우, 해당 조항은 적용되지 않음
  
- 「관세법」 제172조에 따라 국세청과 협의 없이 또는 통관절차를 위반하여 물품 또는 운송수단을 불법 처분, 분실 또는 폐기한 경우 해당 물품 또는 운송수단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물품 또는 운송수단의 관세금액만큼의 벌금이 부과됨
  - 불법적으로 처분, 분실 또는 폐기된 물품 또는 운송수단을 배송했고 세금 납부 증명서를 가지고 있는 경우, 해당 물품 또는 운송수단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물품 또는 운송수단의 관세금액 중 10%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됨
  
- 「관세법」 제173조에 따라 납부할 관세가 줄어들지 않지만 세관신고서에 기재된 물품의 관세가격이 증감되는 경우, 물품의 실제 관세가격과 신고한 관세가격 간 차액의 10%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됨

- 반복적인 위반 행위에는 차액의 20%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됨
- 「관세법」 제174조에 따라 세관에 세관국경을 넘나드는 운송수단의 입출항 신고를 하지 않은 해상 항만, 철도 및 공항의 경우 5천라리의 벌금이 부과됨
  - 반복적인 위반 행위에는 1만라리의 벌금이 부과됨
- 「관세법」 제175조에 따라 문서보관기간을 위반한 경우 1천라리의 벌금이 부과됨
  - 「관세법」 제31조에 따라 문서보관기간은 일반적으로 통관절차 완료일로부터 3년임
  - 세관에 전자적으로 서류를 제출할 때 하드카피본의 의무 제출이 아닌 경우에 해당함
- 「관세법」 제176조에 따라 세관창고 운영과 면세점 운영에 대한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운영자에게 2천라리의 벌금이 부과됨
  - 동일 사안의 위반 행위 포함 반복적인 위반 행위에는 6천라리의 벌금이 부과됨
- 「관세법」 제177조에 따라 「관세법」 적용을 위해 권한을 위임받은 자에 대한 저항과 법적 요구사항을 무시하는 행위의 경우, 800라리의 벌금이 부과됨
  - 반복적인 위반 행위에는 2천라리의 벌금이 부과됨
- 「관세법」 제178조에 따라 「관세법」에 명시된 세관 감독, 관리 및 통관절차에 대한 정보를 국세청에 제공하지 않을 경우, 400라리의 벌금이 부과됨
  - 반복적인 위반 행위에는 1천라리의 벌금이 부과됨
  - 국제항공운송의 경우 운송수단과 적하목록 및 여행객에 대한 예비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2천라리의 벌금이 부과됨
    - 반복적인 위반 행위에는 4천라리의 벌금이 부과됨
- 「관세법」 제179조에 따라 의무표시 대상이 되는 소비재이나 표시 없이 통관된 경우, 해당 물품의 관세가격에 상응하는 벌금이 부과됨
  - 벌금은 최소 500라리 이상이어야 함

## 8. 골드리스트와 AEO 제도

- 조지아에서 수출입 통관 절차의 간소화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로는 골드리스트 제도와 AEO 제도가 있음
  - 골드리스트 제도는 물품의 물리적 검사를 간소화하고 일부 품목에 대해 관세납부 기한을 유예할 수 있다는 혜택이 있음
  - AEO 제도는 EU와의 FTA 체결을 통해 도입되었으며 신속통관혜택과 국제공급망 안전관리를 위해 국세청과 파트너십을 체결하여 세관통제에 대한 자율성을 가질 수 있음

### 가. 단순화된 수출입 통관 절차(Gold List)<sup>65)</sup>

- 국세청의 세관부서는 다음의 일정 자격을 갖춘 업체에 대해 ‘Gold List(이하 골드리스트)’라는 제도를 통해 단순화된 통관 절차의 혜택을 부여함<sup>66)</sup>
  - 국세청에 신청서를 제출한 달의 1일부터 지난 12개월 동안 세관신고액이 500만라리 이상인 기업으로 최소 90만라리 이상의 관세를 납부했거나 100건 이상의 수출입 신고서를 제출한 업체
  - 국세청에 신청서를 제출한 달의 1일부터 부가가치세 납세자로 등록되어 있고 세금 체납이 없으며 조지아 「관세법」의 위반 경험이 있다면 해당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업체
- 골드리스트 신청을 원하는 자는 국세청에 서면 및 전자적 방식의 신청서를 모두 제출해야 함

65) 조지아 국세청, “Gold list,” 2020. 8. 11., <https://www.rs.ge/LegalEntityAuthorizedPersons-en?cat=1&tab=1>, 검색일자: 2021. 5. 31.

66) 언급된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세관신고액이 연속 12개월 동안 최소 500만라리를 달성하고 최초 6개월 동안 세관신고액이 최소 300만라리를 달성하는 특별한 상황인 경우, 골드리스트 참가자 지위를 부여받을 수 있음

- 국세청은 골드리스트 지위를 부여받은 자의 각 창고에 대해 5자리 코드를 부여함
- 골드리스트의 혜택은 수입물품을 해당 업체의 창고로 직접 배송할 수 있다는 점과 세관신고서의 전자적 제출 등의 편의 등이 있음
  - 골드리스트 업체의 수입물품은 조지아 세관 국경에서 바로 출고되어 해당 수입 업체의 창고로 운송할 수 있으며 관세, 부가가치세 및 소비세의 납부기한은 수입 통관 후 30일까지 납부할 수 있음<sup>67)</sup>
    - 상품을 자신의 창고로 직배송하는 경우 해당 창고의 유형, 면적, 보관 조건, 주소 및 소유권에 대한 정보를 국세청에 제공해야 함
  - 골드리스트 참여자는 전자통관시스템인 ASICUDA를 통해 세관신고서를 제출하고 기타 필요서류는 전자적으로 보관하도록 요청할 수 있음
  - HS 1001호의 밀을 수입하는 경우 세관영역에서 물품 반출 후 45일 이내에 관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융통성을 부여함
- 국세청은 골드리스트 자격 부여일로부터 매 6개월마다 골드리스트 충족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세금 체납 여부는 자격 부여일로부터 매 3개월마다 확인하며 1년 후부터 매 6개월마다 확인해야 함
- 국세청은 골드리스트 참여자가 「관세법」을 위반했거나 위반을 적발한 경우 골드리스트 자격을 취소해야 함
  - 국세청은 위반일로부터 3개월 이내 골드리스트 자격을 취소해야 함
  - 골드리스트 자격이 취소된 자는 다시 골드리스트를 신청할 수 있으며 해당 내역은 자격 심사에 고려되지 않음
    - 단 자격 취소의 근거가 「관세법」에 따른 책임이거나 관세청 또는 법원 등의 결정이 존재하는 경우는 제외함

67) WTO, 2015, p. 37, [https://www.wto.org/english/tratop\\_e/tpr\\_e/tp428\\_e.htm](https://www.wto.org/english/tratop_e/tpr_e/tp428_e.htm), 검색일자: 2021. 6. 22.

나.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AEO)<sup>68)</sup>

- 조지아는 2016년 EU와 DCFTA를 체결하면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이하 AEO)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 중임
- 조지아의 AEO 제도는 통관절차 간소화 혜택을 부여받는 AEOC 제도와 업체의 통관절차 관련 내부통제와 안전관리 등 공인기준 준수를 기반으로 세관통제 간소화 혜택을 부여받는 AEOS 제도로 나뉨
  - 업체는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하나 또는 동시에 두 가지 혜택을 모두 부여받을 수 있음
- 납세자 중 업무영역이 국제무역과 통관절차와 관련된 자로서 일정 요건에 충족하는 자는 AEO 공인 신청을 할 수 있음
  - 신청 전 공인기준에 부합하는지 자체평가 설문지를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 세관 공무원에게 자문을 요청할 수 있음
  - AEO 공인 신청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음
    - 조지아의 「관세법」과 관세행정 관련 법령의 위반 사실 및 경제활동 관련 형사 범죄가 없는 자
    - 상업 및 운송기록 관리 시스템 보유
    - 지급능력 및 재무안전성 보유
    - 경험 및 전문자격 보유(AEOS 제외)
    - 안전관리 및 보안기준 표준 제공(AEOC 제외)
- AEO 공인의 혜택은 공통적으로 물품검사와 서류심사의 빈도 감소, 신속 통관진행의 우선권 부여 및 국경수출 시 신속국경통과의 우선권이 부여된다는 점임

68) 조지아 국세청, “Authorized Economic Operators (AEO),” 2020. 9. 15., <https://www.rs.ge/LegalEntityAuthorizedPersons-en?cat=2&tab=1>, 검색일자: 2021. 7. 20.

- AEOC의 경우
  - 합의된 장소에서 통관 진행
  - 세관담보가 필요한 경우 담보 생략<sup>69)</sup>
  - 수출입 물품을 본인 소유 창고에 임시보관 가능
  - 세관에 제시가 필요한 수출입 물품인 경우 제시 생략
- AEOC의 경우
  - 수입 시 물품검사대상으로 선정된 경우 세관은 사전에 그 사실을 수입자에게 통지해야 함
  - 국제 공급망의 안전성 개선을 목표로 국세청과 파트너십을 구축하며, 이를 통해 국내 외 잠재적인 무역 파트너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국가 간 AEO 혜택을 동일하게 받을 수 있는 AEO 공인의 상호인정협정(MRA)이 현재 터키, 중국과 협상 진행 중이며 향후 EU와 계획되어 있음
- AEO 공인 유지를 위해 업체는 공인기준을 계속적으로 충족해야 하며 기준 충족에 영향을 미치는 변동사항을 국세청에 통지할 의무가 있음
  - 조직, 인력, 시스템 또는 절차 등에 대한 변경이 발생 시 국세청에 통지해야 함
  - 만약 변경 내용을 통지하지 않거나 공인기준의 불충족이 확인되는 경우 국세청은 해당 공인을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음
    - 취소 후 복권신청은 취소일로부터 3년간 불가능함
- AEO 공인업체는 업체 전용 서식, 물품, 차량 및 포장 등에 AEO 로고를 사용해야 함

---

69) ① 일시적 물품 수입 ② 보세가공 ③ 수입 후 세관구역 반출 시 관세평가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④ 수입신고 세부사항 조정에 동의하지 않지만 물품의 즉시 반출을 요청하는 경우 ⑤ 세관영역 이외의 장소에 물품을 임시 보관하는 경우 등이 있음

[그림 II-5] 조지아의 AEO 로고



자료: 조지아 국세청, “Authorized Economic Operators (AEO),” 2020. 9. 15., <https://www.rs.ge/LegalEntityAuthorizedPersons-en?cat=2&tab=1>, 검색일자: 2021. 7. 20.

### Ⅲ. 수출입 통관 절차

#### 1. 개관

##### 가. 관세행정의 현대화(전자통관제도)<sup>70)</sup>

- 조지아는 2010년, 유엔 무역 개발 회의(UNCTAD)의 전자통관 업무지원 시스템인 세관데이터 자동시스템(Automated System for Customs Data, ASYCUDA)의 개혁으로 관세행정의 현대화가 시작됨
- 조지아에 1998년에 도입된 ASYCUDA는 국제 표준을 이용한 통관 절차(데이터 입력 및 직접 등록, 위험 분석, 관세 및 세금 계산, 납부 및 회계처리 포함)의 완전한 자동화를 지원하는 세관관리시스템임<sup>71)</sup>
  - UNCTAD는 조지아가 ASYCUDA의 도입으로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조지아 인근 국가들 대비 부패 수준이 가장 낮게 유지되었다고 평가함<sup>72)</sup>
- ASYCUDA는 조지아 국세청의 세관정보시스템(Customs Platform, CP)에 완전히 통합된 최신 웹 기반 버전(e-Customs ASYCUDA World)으로 전국 세관에 걸쳐 운영되며, 세관신고서(적하목록, B/L 등 운송서류 및 통관관련 세부서류 등)를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고 위험 식별 시스템에 따른 선별검사를 지원함

70) UNECE, 2018, p. 32~34.

71) ASYCUDA, <https://asycuda.org/en/usercountries-georgia/>, 검색일자: 2021. 8. 31.

72) World Bank의 Doing Business의 경우 2006년 100위에서 2010년 11위로 크게 개선되었으며, 2010년 세관 개혁으로 절감된 편익이 약 3억 8,800만달러에 달했다고 평가함

- ASYCUDA에 대한 사용자 액세스는 비밀번호로 제어되며, 요청 시 거래자에게 부여됨
- 2016년도부터 납세자에 대한 통일된 재무코드를 발행하였으며 이에 따라 ASYCUDA에서 해당 재무코드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관세납부가 가능함
  - 2016년 이전까지 세금 납부를 처리하는 데 125개의 재무코드가 필요했으나, 하나의 재무코드를 사용해 조세납부체계를 간소화·표준화했다는 평가를 받음
  - 또한 과대납부세금은 개별 세금이 아닌 총액으로 기록되어 해당 일자에 자동으로 미납세금과 상계됨
- 조지아의 세관정보시스템(CP)은 전자 데이터 교환 시스템(EDI)을 사용해 통관 관련 규칙과 행정절차에 대한 최신 정보를 배포하고 단일 전자허가 시스템(Unified Electronic System of Licenses, Permits and Certifications)을 통해 온라인으로 통관에 필요한 허가과 승인 서류를 신청할 수 있도록 도와줌<sup>73)</sup>
- 신청자는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전자적으로 제출하고 관련 당국이 결정을 내렸을 때 우편 및 문자 등으로 적절한 통지를 받음
  - e-Customs ASYCUDA World 신고 시스템은 단일 허가 시스템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업체들은 국세청 세관부서에 허가과 승인 서류를 다시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 모든 허가과 승인 서류는 관련 당국이 접근할 수 있는 전자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됨
- 국세청의 세관위험관리는 순찰경찰서 전자 데이터베이스(여권과 차량자료), 법무부(납세자 등록자료), 국가공공기관, 민사 등록부, 조지아 상공회의소 등에 접근할 수 있음

## 나. 통관 장소의 종류

- 통관절차를 진행하는 세관은 본부세관인 세관통관지역(Customs Clearance Zones, CCZ)과 지점세관인 국경세관지점(Customs Crossing Points, CCP)으로 나뉨<sup>74)</sup>

73) 무역업체의 약 43%의 경우 설문조사를 통해 세관신고서, 관련 허가서, EUR 1 원산지 증명서 등을 사무실에서 쉽게 얻을 수 있다고 답변함(자료: UNECE, 2018, p. 43)

74) UNECE, 2018, pp. 50~51.

- 본부세관인 세관통관지역(CCZ)은 총 다섯 개로 트빌리시(Tbilisi), 바투미(Batumi), 포티(Poti), 트빌리시 공항(Airport)과 트빌리시2(Tbilisi 2)임
    - 특히 트빌리시, 바투미 및 포티 세관에서는 세관신고서 작성, 물품 등록 및 검사 등을 시행할 수 있는 현대식 인프라와 전자수단을 갖췄으며, 수백대의 트럭이 동시주차가 가능하도록 설계된 주차시설을 보유함
  - 지점세관인 국경세관지점(CCP)은 총 네 개로 테라비(Telavi), 아할치헤(Akhaltshikhe), 쿠타이시(Kutaisi) 및 루스타비(Rustavi)에 위치함
    - 2021년 8월 기준 철도와 도로의 간지역과 각 지방에 자치단체로 존재하는 국경세관지점(CCP)의 총합계는 20개임<sup>75)</sup>
  - 모든 세관통관지역(CCZ)과 국경세관지점(CCP)은 24시간 내내 작동하며 현대적인 제어장치, 주차구역 및 휴게시설을 갖추고 있음
    - 조지아와 아제르바이잔 사이 국경세관지점(Titeli Khidi CCP)에 위생검역소 설치
    - 조지아와 아르메니아 사이 국경세관지점(Sadakhlo CCP)에 위생검역소 설치
    - 조지아와 터키 국경과 가까운 곳인 세관통관지역(Adlia CCZ)에 위생검역소를 설치하고 운영 중
- 조지아의 무역업체들은 필요한 모든 서류 요건을 갖추고 세관통관지역(CCZ)의 세관원에게 세관신고서 작성과 제출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음<sup>76)</sup>
- 세관통관지역(CCZ)에서는 세관신고서 작성, 물품 수출입 허가서 및 증명서 발급, 통관 관련 전문지식, 서류와 물리적 검사 등 전반적인 통관절차를 운영함<sup>77)</sup>
    - 통관 절차는 조지아 법령에 따른 수출입, 재수출, 해운 수송, 항공·철도 및 도로 운송, 임시 수입, 창고, 보세구역 반출입 등을 포괄함
    - 세관통관지역(CCZ)에는 기타 설비로 주차시스템, 세관문제 상담장소, 무역업자를 위한 무료인터넷 제공, 은행 서비스 및 카페테리아 등을 운영함

75) 조지아 국세청, "Customs Checkpoints," 2020. 8. 21., <https://www.rs.ge/Contact-en?cat=3&tab=1>, 검색일자: 2021. 8. 4.

76) UNECE, 2018, pp. 50~51.

77) WTO, 2015, p. 36.

- 조지아의 세관통관지역(CCZ)과 국경세관지점(CCP)은 다음과 같은 기능 및 시설을 보유함<sup>78)</sup>
  - 양쪽 국경에서 교통을 분리하고 유효한 국제 통관 서류(TIR 협약 등)를 보유한 차량을 우대조치
  - 화물 및 차량의 무작위 점검을 위한 오프로드 제어 구역
  - 주차 및 터미널 시설
  - 스캐너, 검사 피트, 방사선 감지 포털 등 검사 장비
  - 식물위생 실험과 수의실험을 위한 소규모 실험실 등 실험실
  - 국경세관지점(CCP)의 임시창고와 세관통관지역(CCZ)의 대규모 창고 시설 등
  - 훈증 소독 장비 등

#### 다. 운송수단의 종류<sup>79)</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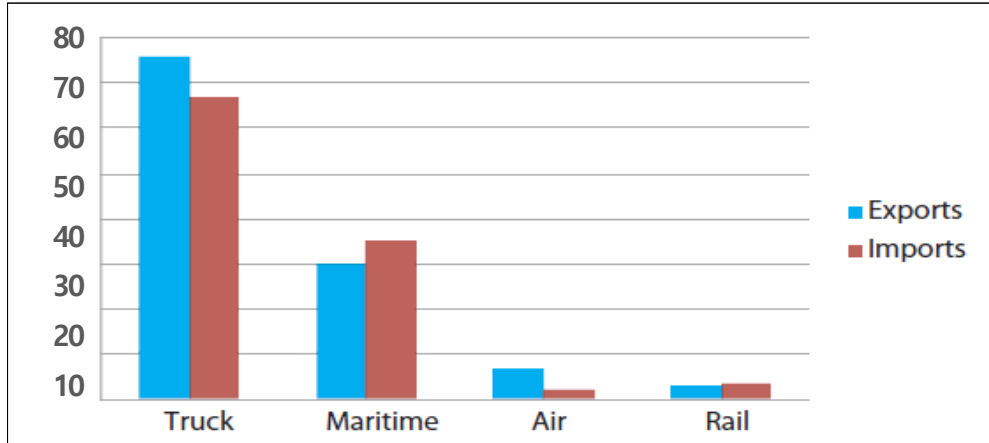
- 조지아 무역에서 가장 빈번하게 활용되는 운송수단은 트럭으로, 목적지에 따라 해상 운송과 함께 복합운송으로 활용됨
  - 벨기에, 중국, 일본, 우크라이나 및 미국으로 수출하거나 인도, 벨기에, 자메이카 및 미국에서 수입하는 경우 해상운송이 필수불가결임
  - 철도운송은 거의 사용되지 않으나, 주로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및 중앙아시아를 통해 수출입하는 물품을 운송하는 데 사용되며 때때로 중국에서 수출입할 때에도 이용됨
    - 조지아의 철도 네트워크는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및 중앙아시아로 진출하는 교두보 역할을 함
  - 항공운송은 소형 화물 운송에 활용되며 일반적으로 긴급 운송에만 사용됨

78) UNECE, 2018, p. 51.

79) UNECE, 2018, pp. 29~30.

[그림 III-1] 수출입에 활용되는 운송수단의 종류

(단위: %)



자료: UNECE, 2018, p. 30.

## 2. 수입 통관 절차<sup>80)</sup>

### 가. 개요<sup>81)</sup>

- 수입 통관 절차는 일반적으로 국경세관지점(CCP)에서 여권검사→서류 조회→물품 및 차량 검사→세관통관지역(CCZ)에서 관세 지급 확인서 제출과 물품 출고 등의 순서로 통관이 진행됨
- 수입자 직접신고 또는 원거리 신고의 경우 통관은 국경세관지점(CCP)에서 물품 운송자의 여권검사 및 서류 조회를 실시<sup>82)</sup>한 뒤 화물트럭은 국경세관지점(CCP)에서

80) 조지아 국세청, "Release into Free Circulation (Import)," 2020. 9. 16., <https://www.rs.ge/LegalEntityCustomsProcedures-en?cat=1&tab=1>, 검색일자: 2021. 7. 23.; 조지아 국세청, "Import," 2018. 12. 17., [https://old.rs.ge/Default.aspx?sec\\_id=4793&lang=1](https://old.rs.ge/Default.aspx?sec_id=4793&lang=1), 검색일자: 2021. 5. 31.

81) UNECE, 2018, p. 51~52.

봉인(sealing)되고 지정일까지 세관통관지역(CCZ) 또는 세관통관지역(CCZ) 철도 노선으로 운반되며 이후 해당 구역에서 물품이 출하됨

- 사전신고는 국경세관지점(CCP), 그리고 지정목적지 통관은 해당 목적지에서 통관 및 물품이 출하됨
- 사전신고로 통관된 물품과 녹색채널로 배정된 물품은 국경세관지점(CCP)에서 출하되며 관세담보서의 제출 없이 15일간 세금납부 연기 혜택이 주어짐

□ 수입 통관 장소에 따라 세관통관지역(CCZ)과 국경세관지점(CCP)으로 나뉘며, 경우에 따라 네 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짐

- 세관통관지역(CCZ)의 서비스 카운터에서 수입자가 직접 통관하는 경우
  - 무역업자 또는 대리인은 국세청에 무역 서류 등을 제시하고, 국세청은 세관신고서 (전자 서식 및 하드 카피)를 10분에서 15분 내에 작성 및 발행<sup>83)</sup>
  - 무역업자의 대리인으로서 트럭 운전사는 위임장을 가지고 있어야 함<sup>84)</sup>
- 세관통관지역(CCZ)에서 수입자 또는 대리인이 없는 상태에서 통관하는 원거리 신고의 경우
  - eCustoms 인터페이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된 세관신고서에 기초하여 무역업자의 위치에 상관없이 세관통관지역(CCZ)에서 통관이 가능함
- 국경세관지점(CCP)에서 사전신고로 통관하는 경우
  - 수입신고서는 국경세관지점(CCP)에 물품이 입고·출하되기 전, 또는 녹색채널의 경우 신고서 평가에 따라 온라인으로 제출되고 수입물품은 국경세관지점(CCP)에서 출하됨
- 단일의 화물 인수자 및 수취인의 경우
  - 온라인으로 제출된 세관신고서에 기초하여 지정된 장소(일반적으로 수입자의 구내/창고)에서 물품을 통관함
  - 트럭은 세관통관지역(CCZ)에서 멈추지 않고 지정된 장소로 즉시 이동함

82) 수출 통관과 마찬가지로 대다수의 화물운전자들은 트럭을 떠나지 않고 심사를 받음

83) 거래자는 EUR 1 증명서와 함께 추가적인 필요 서류를 제출하면 CCZ(CCP 포함)에서 동식물 위생 및 검역증명서를 신청하고 취득할 수 있음

84) 반복적 제출을 방지하기 위해 국세청에는 대리인 인증 데이터베이스를 유지·관리함

〈표 Ⅲ-1〉 수입 통관 시기에 따른 통관 절차

통관 종류	통관 절차	물품출하장소	관세 납부기한
수입자 직접 통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물품 CCZ 도착</li> <li>• CCZ 카운터에서 통관 필요서류 제출(하드카피)</li> <li>• 신고서 발급 위한 대기표 수령</li> <li>• 세관원의 e-Customs ASYCUDA world 통한 신고서 작성</li> <li>• 위험관리시스템 분석에 따라 물품검사여부 결정<sup>85)</sup></li> <li>• CCZ에서 물품 출하 또는 검사</li> </ul>	세관통관지역 (CCZ)	5일
원거리 통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물품 CCZ 노선<sup>1)</sup>에 도착</li> <li>• 수입자는 전자적 방식으로 서류 제출</li> <li>• 위험관리시스템 분석에 따라 물품검사 여부 결정</li> <li>• CCZ에서 물품 출하 또는 검사</li> </ul>	세관통관지역 (CCZ)	5일
사전 통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물품 CCP 도착 전 신고 준비</li> <li>• 무역업자가 세관신고서 온라인으로 제출 또는 세관에 온라인 제출을 지원요청(수정가능)</li> <li>• 위험관리시스템 분석에 따라 물품검사 여부 결정</li> <li>• CCP에서 물품 출하 또는 검사</li> </ul>	국경세관지점 (CCP)	15일
지정 목적지 통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입자는 세관에 지정목적지 전달</li> <li>• 물품은 CCP를 지나 지정목적지로 바로 운송</li> <li>• 수입자는 CCZ에서 또는 전자적으로 통관 필요서류 제출</li> <li>• 위험관리시스템 분석에 따라 물품검사 여부 결정</li> <li>• 지정목적지에서 물품 출하 또는 검사</li> </ul>	지정 목적지	5일

주: 1) 철도 또는 도로 운행 시 국경세관지점(CCP) 노선에 정차 가능  
 자료: UNECE, 2018, p. 52.

- 2018년 기준 세관통관지역(CCZ)에서 수입 통관에 소요되는 시간은 평균 30분 정도로 보고됨<sup>86)</sup>
- 단 위험관리시스템에 따라 황색 또는 적색으로 선정된 경우 3시간 이상이 소요될 수 있음

85) 위험관리시스템 분석 결과는 총 네 가지임. ① 녹색: 패스 ② 황색: 서류검사 ③ 적색: 물품 스캔 또는 물품개봉검사 ④ 청색: 사후검사

86) UNECE, 2018, pp. 53~54.

- 2016년 기준 녹색 선정 기준은 수출과 유사하게 약 80% 이상이고, 적색 선정 비율은 약 6.7%로 보고됨
- 항만의 경우 국경경찰 시스템과 항만 운영자들의 IT 시스템이 연결되지 않아 모든 서류를 수기로 진행하고 있어 통관처리속도가 지연된다고 보고됨
  - 수출 통관이 30~45분 내 완료되는 반면 수입 통관은 1~2시간 이상이 소요되며, 특히 roll-on/roll-off 페리의 경우 국경경찰이 트럭, 화물 및 운전자에 대한 모든 검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통관처리속도가 더디다고 보고됨

#### 나. 수입신고 준비 등<sup>87)</sup>

- 수입물품의 세관 신고는 전자적인 방법, 서면 제출 및 구두 또는 법률이 정하는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신고의 시기는 반입 전후 모두 가능함
  - 조지아 세관 구역으로 물건이 반입되기 전 또는 국경세관지점(CCP) 또는 기타 통관 장소에 물건이 반입된 후 수입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음
  
- 수입물품은 세관신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물품의 종류나 수입 통관 절차에 따라 수입신고서 양식이 상이함
  - 일반적인 수입신고서
  - 간이수입신고서
  - 개인의 물품에 대한 세관신고서(육로통관의 경우)
  - 차량 세관신고서(국세청 지정 사무소에 제출)
    - 실린더 규격이 50cm<sup>3</sup> 이상이며 전기모터의 최대 출력이 4kW 이상인 경우
    - HS 8716호의 트레일러나 세미 트레일러의 수입인 경우
  - 우편 신고서

---

87) 조지아 국세청, "Release into Free Circulation (Import)," 2020. 9. 16., <https://www.rs.ge/LegalEntityCustomsProcedures-en?cat=1&tab=1>, 검색일자: 2021. 7. 23.

- 전자상거래를 통해 구입하여 조지아 영토에 우편으로 배달되는 물품으로 수입이 제한되거나 허가 또는 승인이 필요한 물품은 제외됨

□ 수입물품 중 국경세관지점(CCP)의 등록대상은 다음과 같음<sup>88)</sup>

- 주요 국제 철도 노선의 예레반-바투미-예레반(Yerevan-Batumi-Yerevan)과 바투미-예레반-바투미(Batumi-Yerevan-Batumi) 고속 여객열차 탑승객의 세관 신고액 1,500라리 미만의 상품을 수입하는 경우
- 수입신고서에 항공 수하물 및 또는 핸드캐리 수하물로 반입되는 물품임이 명시된 경우
- 수입신고서에 조지아 세관 국경에서 개인이 수송하는 1만라리까지의 물품임이 명시된 경우
  - 국경세관지점(CCP) 중 삼타츠키(Samtatskaro), 아케르피(Akhkerpi) 및 쿠라강(Mtkvari)은 제외함
- 6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한 후 조지아에 입국한 개인이 (HS) 28~97류(87류 제외)에 해당하는 1만 5천라리 상당의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로서 경제활동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
- 해외 조지아 공관이나 영사관에서의 순환출장으로 인한 외교공무원의 경우 해외에서 개인용도로 사용한 물품(차량, 냉장고, 컴퓨터 및 TV 등)
- 조지아 법무부 발행 문서를 통해 확인된 자가 조지아에 영구 거주 목적으로 수입한 물품으로 경제활동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가구, 생활용품, 1가구 1량 포함)
- 외국물품을 가공한 후 수입신고하는 경우로서 세관신고액이 3천라리 미만인 물품
- 반품된 소비재로서 수출 시 간이세관신고 또는 선하증권을 제출하거나 필수서류 스탬프 표시가 적용되어 구두로 수출신고했던 물품
- 비거주 개인이 조지아에 출장 또는 고용 계약에 따라 임시 입국할 때 수입한 개인용 물품

88) 조지아 국세청, "Import," 2018. 12. 17., <https://old.rs.ge/4793>, 검색일자: 2021. 6. 20.

- 바투미 항구(Batumi Port) 또는 포티 및 쿨 레비 항구와 포티 산업자유구역(Poti and Kulevi ports and in the Poti Free Industrial Zone)에서 컨테이너 차량과 함께 수입되는 기타 물품
- 수입신고서 외에 운송장 및 물품구매계약서 등 필요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해당 물품
  - 이 경우 물품검사대상이 되며, 샘플취득대상에 선정될 수 있음
  
- 수입신고서 작성은 국세청 세관부서 직원이 작성하거나 수입자가 직접 작성할 수 있음<sup>89)</sup>
  - 국세청 세관부서가 작성하는 경우
    - 수입자 또는 그 대리인이 세관부서에 수입신고서 작성을 요청할 때
    - 우편수입물품
    - 탁송품 운송업자가 세관부서에 물품 세관신고서의 작성을 요청할 때
  
  - 수입자 또는 대리인이 작성하는 경우
    - 수입자 또는 대리인이 직접 본인 명의로 수기 신고하는 경우
    - 국세청의 통관 전산서버인 ASYCUDA 또는 ORACLE에 직접 접속하여 신고하는 경우
  
- 트빌리시 국제공항에 위치한 라사레(Lasare Ltd)는 1989년 설립되었으며, 국제항공 운송협회(IATA) 회원사이면서 민간항공 화물 터미널로서 항공기 화물처리, 세관 창고와 창고시설(인프라) 등을 제공함<sup>90)</sup>
  - 항공화물 대리인 및 화물 취급 서비스 제공
    - 항공사에서 발송하는 화물 예약과 배송 모니터링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
    - 항공운송장(AWB) 발행 및 보험 가입 프로그램 제공

89) 조지아는 관세중개업자의 상습적인 부정행위를 해결하기 위한 개혁조치 중 하나로 국세청에서 관세 중개업을 인수하여 라사레(Lasare LTD)라는 기업에서 통합 관리함(자료: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전문가 간담회, 「조지아 물류보고서」, 2021. 6. 23.).

90) Lasare, <https://lasare.ge/>, 검색일자: 2021. 8. 31.

- 일반화물 이외에도 귀중품, 살아 있는 동식물, 부패하기 쉬운 화물, 위험화물, 특수 (크기 및 무게 등)화물 등 모든 종류의 화물을 취급
- 도로화물, 철도화물, 해상화물, 복합운송화물 등 취급
  - 도로화물로서 독자운송(FTL) 및 혼재운송(LTL), 해상화물로서 항구에서 항구로 운송(port to port), 선박용선, 컨테이너 운송, 벌크화물 운송 및 두 가지 운송수단이 결합된 복합운송화물 등을 취급
- 터미널과 창고 서비스 제공
  - 24시간 운영하며 일반화물 및 특수보관조건이 필요한 화물도 보관 가능
- 세관 중개 서비스 제공
  - 세관 중개 서비스 자격을 갖춘 직원이 세관문제에 대한 모든 부분에 대한 상담을 제공

#### 다. 수입 통관 제출서류<sup>91)</sup>

- 수입 통관 시 세관신고서 이외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들은 기본적으로 운송서류와 물품 계약서류 등이 있으며, 이외의 서류들은 수입물품에 따라 상이하
  - 운송 서류
    - 육로 운송 시 운송 선하증권(CMR) 또는 국제도로수송 서류(TIR-book)
    - 해상 운송 시 선하증권(B/L)
    - 항공 운송 시 항공화물운송장(AWB)
    - 철도 운송 시 철도 화물위탁서(railway consignment note)
  - 물품구매계약을 증명하는 서류의 원본 또는 사본<sup>92)</sup>
    - 물품 구매 계약서

91) 조지아 국세청, "Documentation to be submitted," 2018. 12. 17., [https://old.rs.ge/Default.aspx?sec\\_id=4795&lang=1](https://old.rs.ge/Default.aspx?sec_id=4795&lang=1), 검색일자: 2021. 6. 20.

92) 「조세법」 제199조 (d.d) 및 (d.e)에 따라 6개월 이상 해외 체류 후 조지아에 입국한 자로서 1만 5천 라리에 해당하는 물품수입(HS 28~97류에 한함, 단 87류 제외)과 해외 외교사절단 또는 영사기관에서 개인용도로 사용한 물품의 수입, 그리고 조지아 영주 거주를 위해 수입한 물품으로 경제활동 목적이 아닌 개인물품의 경우 물품계약증빙의무가 제외됨

- 송장 또는 기타 결제확인서류
- 우편으로 수입되는 경우 우편물 신고서 또는 우편물 목록
- 세금감면혜택 대상물품의 경우 해당 문서
- 기타의 서류
  - 수입물품이 비관세장벽에 따라 허가 또는 인증이 필요한 경우 해당 서류
  - 동식물위생서류 또는 해당 물품이 국경통제대상물품의 경우 사전통지서류
  - 유해화학물질 및 살충제 등 수입 통관이 엄격하게 제한된 물품의 수입 시 사전승인 서류
  - 조지아에 최초로 수입되는 물품의 경우 사전계약서류
  - 수입물품이 과거 세금납부 또는 관련 행정절차를 위반한 경험이 있는 경우 해당 법령 위반 규약서와 벌금 완납증명서
  - 수입물품 원산지증명서 또는 실험실 시험성적서 등
  - 도로로 위험물을 운송하는 경우 위험물 운송에 관한 운전자의 특별교육증명서와 위험물 국제운송차량허가증 또는 이와 비슷한 서류로 권한 있는 수출당국에서 발행한 문서
  - HS 2713.20호 석유역청 수입 시 품질담보문서

#### 라. 반입신고와 수입신고 등<sup>93)</sup>

- 수입물품의 반입신고는 조지아 세관영역에 반입된 후 영업일 기준 3일 이내 완료되어야 함
  - 단 차량(컨테이너 포함) 또는 트레일러의 경우 운송장과 물품구매계약서를 국세청 세관부서에 전자적으로 제출하고 국세청 세관부서에서 60일 이내에 내무부의 자동화된 데이터베이스에 정보를 반영하는 것으로 반입신고를 갈음할 수 있음

---

93) 조지아 국세청, "Deadlines," 2019. 8. 15., [https://old.rs.ge/Default.aspx?sec\\_id=4799&lang=1](https://old.rs.ge/Default.aspx?sec_id=4799&lang=1), 검색일자: 2021. 7. 12.

- 차량은 HS 제8701호, 제8702호, 제8703호, 제8704호, 제8705호 및 제8711호에 해당하는 기계식 차량으로 실린더 용량이 50cm<sup>3</sup> 이상인 내연 기관이 있고 전기모터 용량이 4kW 이상인 차량과 제8716호에 규정된 트레일러 및 세미 트레일러에 한함

- 세관통관지역(CCZ) 또는 국경세관지점(CCP)에서 목적지까지 물품과 운송수단의 운송기한은 일반적으로 영업일 기준 10일 이내 완료되어야 함
  - 도로운송(트럭)으로 수입되는 경우 운송거리는 1일을 100km로 계산하며, 총 10일 이내 목적지에 도달해야 함
  - 철도운송의 경우 운송거리와 상관없이 영업일 기준 10일 이내 목적지에 도달해야 함
  - 석유제품의 경우 영업일 기준 5일 이내 목적지에 도달해야 함
  - 조지아 세관에 등록된 차량 등록 장소에서 미등록 세관 관리구역으로 이동하는 경우 운송기한은 영업일 기준 60일 이내 완료되어야 함
    - 단 HS 8429호의 불도저 등 차량은 영업일 기준 30일 이내 이동 완료되어야 함
  - 외국 시민이 외국인 등록차량, 트레일러(세미 트레일러 포함), 버스 또는 오토바이를 수입하는 경우 운송기한은 영업일 기준 90일 이내 완료되어야 함
  - 포티 항에서 반경 12km 이내의 포티 세관구역까지 12시간 이내 운송이 완료되어야 하며, 운송 시작시간은 통관 전자시스템에 등록된 시간을 기점으로 계산함
- 수입물품의 신고는 일반적으로 반입신고 후 영업일 기준 45일 이내 완료되어야 함
  - 세관창고에 일시적으로 물품을 보관하는 경우 반입신고 후 영업일 기준 180일 이내 수입신고를 완료해야 하며, 국세청 세관부서는 해당 기간에서 추가적으로 최대 180일까지 연장할 수 있음
  - HS 제8701~8705호 및 제8711호에 해당하는 기계 차량<sup>94)</sup> 또는 제8716호의 트레일러와 세미 트레일러의 경우 차량 등록일로부터 또는 내무부의 자동화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한 날로부터 영업일 기준 60일 이내 수입신고를 완료해야 함

94) 제8701~8705호 및 제8711호의 차량은 실린더 용량이 50cm<sup>3</sup> 이상이며 전기모터 최대출력이 4kW 이상인 것에 한함

- 차량에 대한 수입신고 기한의 연장은 세관에 임시반입 없이 세관신고서 제출기한 연장에 대한 수수료<sup>95)</sup>를 선납한 경우 추가적으로 영업일 기준 최대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음

- 외국 시민이 외국인 등록차량, 트레일러(세미 트레일러 포함), 버스 또는 오토바이를 수입하는 경우 내무부의 자동차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날로부터 영업일 기준 90일 이내 수입신고를 완료해야 함
- 석유제품의 경우 반입신고에 따라 발급된 인증서를 작성한 날로부터 영업일 기준 5일 이내 수입신고를 완료해야 함
- 우편수입물품(전자상거래 구매물품 제외)의 경우 일반적으로 반입신고일 또는 우편물품 목록제출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90일 이내 수입신고를 완료해야 함
  - 전자상거래 구입 물품 및 소비세 부과품목으로 알콜 음료와 담배제품의 경우 반입신고일 또는 우편물품 목록제출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30일 이내 수입신고를 해야 함
- 국제항해 개항 지역(경질류, 중증류 저장지역 제외)에 임시 보관하는 수입물품의 경우 반입신고 후 영업일 기준 90일 이내 수입신고를 해야 함
- 철도운송 수입물품으로 세관 영역 내 철도역에 임시로 보관하는 경우 반입신고 후 영업일 기준 90일 이내 수입신고를 해야 함

#### 마. 서류심사 및 물품검사<sup>96)</sup>

- 수입물품은 수입신고 후 서류심사 또는 물품검사대상으로 결정된 경우 국경세관지점 (CCP) 또는 지정장소에서 심사 및 검사절차를 거침
  - 국경세관지점(CCP)에서의 서류심사절차
    - 세관은 차량 운전자가 제출한 서류를 확인 및 차량에 부착된 표지 또는 실(seal)

95) 영업일 1일 기준 5라리

96) 조지아 국세청, "Procedures," 2018. 12. 4., [https://old.rs.ge/Default.aspx?sec\\_id=4797&lang=1](https://old.rs.ge/Default.aspx?sec_id=4797&lang=1), 검색일자: 2021. 6. 20.

등 식별 수단의 무결성을 확인함

- 필요한 경우 물품, 운송수단 및 보세창고 등에 대한 추가검사 또는 재표시가 수행되어야 함

○ 서류심사로 불충분한 경우 물품검사를 수행

- 세관은 차량에 탑재된 물품을 검사하고 검사 결과에 따라 물품과 차량을 반출함
- 현장검사가 불가능한 차량은 세관터미널, 세관창고 및 기타 임시보관장소로 이동하여 검사를 진행함

□ 국세청 세관부서는 위험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수출입 물품에 대한 위험관리를 시행하고 있음<sup>97)</sup>

- 세관 내 물품의 반출입, 운송, 보관, 사용목적 등의 위험사항을 사전 규제하는 것이 목적이며 위험기준은 기밀사항임
- 규제방법은 무작위 샘플링을 통한 물품검사와 함께 국제적 기준의 위험탐지, 평가 및 예방조치를 취하기 위한 데이터처리시스템을 기반으로 규제함

□ 위험관리시스템의 채널은 총 네 가지로 녹색, 청색, 황색 및 적색으로 구분됨

- 녹색은 세관신고서와 제출서류에 대한 자체검사를 실시함(물품검사 생략)
- 청색은 세관신고서와 제출서류에 대한 자체검사를 생략하고 통관 후 물품 상황에 따라 조건부 검사를 진행함
  - 사후통관심사의 항목은 대표적으로 관세 평가(과세가격과 관세)의 적정성 검토, 품목분류(HS code) 심사, 물품과 수량의 적합성 검토, 수출입 금지 또는 제한 물품 검토 등이 있음
- 황색은 세관신고서와 제출서류에 대한 전부 또는 일부를 심사함
- 적색은 수출입 물품에 대한 검사가 우선이며 세관신고서와 제출서류는 전부 또는 일부분 심사할 수 있음

97) 조지아 국세청, "Risk Corridors," 2020. 9. 15., <https://www.rs.ge/LegalEntityCustomsProcedures-en?cat=12&tab=1>, 검색일자: 2021. 7. 14.

- 최근 검사를 통해 확인된 사항이 있더라도 반복적, 추가적, 목적적인 검사를 시행할 수 있음

- 세관공무원은 위험관리시스템을 통해 통관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국세청에서 자체 개발한 소프트웨어인 국경 위험 관리 모듈을 활용하여 국경세관지점(CCP)에서 발견된 위험을 점검함<sup>98)</sup>
  - 예를 들어 치텔리 키디(Tsiteli Khidi)의 레드 브릿지 국경세관지점(Red bridge CCP)의 세관 경찰관들은 무작위로 수입의 10%와 수출의 1~2%를 통제한다고 보고함
  - 물품검사의 빈도와 엄격성은 물품 종류에 따라 상이하며, 대표적으로 식품의 의약품 수입의 경우 소비자 안전과 환경상의 이유로 제품안전, 위생, 식물위생관리, 해충과 식물질환으로부터 농업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주 검사대상으로 선별됨
- 위험관리시스템은 2016년에 무역촉진시스템(Trade Facilitation System, TFS)이 세관정보시스템(CP)에 통합됨에 따라 더욱 간소화됨<sup>99)</sup>
  - 진보된 EDI 솔루션인 무역촉진시스템(TFS)은 국세청, 무역업체, 해운 및 항공업체, 철도 및 화물 운송업체 간의 조정을 크게 개선하여 위험관리시스템을 더욱 강화했다는 평가를 받음
    - 무역촉진시스템(TFS)을 통해 지정된 국경 통과 지점에 물품이 도착하기 전에 운송 업체와 수입국 간에 데이터를 적시에 교환할 수 있음
    - 가령, 포티 항으로 물품을 운송하는 해운업체들은 물품을 전자적으로 항구 공동체 시스템으로 보내는데, 해당 정보가 세관에 직접 전달되어 편리하다고 보고됨
    - 관계자들은 무역촉진시스템(TFS)이 세관신고서 작성과 관련된 시간을 단축하고 업체에서 내부적으로 진행해야 할 세관 통과 신고서류를 생략하게 도와준다고 보고함

98) UNECE, 2018, p. 35.

99) UNECE, 2018, p. 35.

## 바. 통관 후 심사

- 「관세법」 제30조에 따라 수입물품의 통관 후 추가 관리는 국세청의 결정에 따라 수행되며 추가 관리를 시행할 때 통관물품과 관련된 다음의 사항을 검토 및 확인할 수 있음<sup>100)</sup>
  - 세관신고서, 임시수입 보관신고서, 반입신고서, 반출신고서, 재수출신고서 또는 재수출신고서에 기재된 자료 등의 정확성, 존재, 정확성, 진정성 및 유효성 등
  - 물품의 통관 전후와 관련된 무역거래 또는 해당 물품과 관련된 신고자의 계좌와 기타 자료 등
  - 또한 국세청은 물품 검사 또는 견본채취가 가능한 경우 이를 행할 권리가 있음
  
- 통관 후 추가 관리 장소는 물품 소유자 또는 대리인, 물품과 관련된 거래를 직간접적으로 수행하는 자의 시설 및 해당 거래와 관련된 자료와 데이터를 보유한 다른 당사자의 시설에서 수행될 수 있음
  
- 통관 후 추가 관리 수행 기간은 일반적으로 3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필요한 경우 국세청장의 동의를 얻어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음
  
- 통관 후 추가 관리 수행 시 국세청은 신고자 등 물품 관련 당사자에게 요청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보유한 정보를 토대로 관세와 관세 제재금액을 결정할 수 있음
  
- 통관 후 추가 관리에 따라 관세의 부과 또는 관세 제재의 필요성이 확인되는 경우, 국세청은 관세부과 또는 관세제재를 시행해야 함
  - 이 경우 국세청은 통관 후 추가 관리에 대한 검토보고서와 결정사항을 「조세법」 제64조에 따라 관세부과통지서와 함께 당사자에게 송부해야 함

100) 통관 후 사후관리는 국세청의 고유 권한이며, 기타 통제기관이나 행정당국에 의해 수행될 수 없음

- 통관 후 추가 관리에 따라 작성된 검토보고서에 근거한 관세부과 제척기간은 추가 관리로 인해 발생한 관세 납세의무일이 속한 연도의 말일부터 3년임
  - 단 「관세법」 제141조 제3항에 따라 최종사용을 목적으로 수입된 물품이나 재사용이 가능하거나 조지아 법률위반의 관리감독을 위해 국세청이 세관통제를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관세부과 제척기간은 물품을 최초 사용한 날의 다음날부터 3년 이내로 연장할 수 있음
    - 해당 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세관 감독이 완료되지 않은 물품에 대해 재무부 장관령으로 재연장이 가능할 수 있음
  
- 통관 후 추가 관리 중 행정 위반이 적발된 경우 국세청의 권한 있는 자는 행정위반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해야 함
  
- 이미 검토된 사항에 대한 재심사는 법원의 명령이 존재하지 않는 한 금지됨

### 3. 수출 통관 절차<sup>101)</sup>

- 조지아의 세관영역에서 반출되거나 보세구역에 반입되는 물품은 일반적으로 수출 신고를 해야 함
  - 단 다음의 물품은 수출절차를 거치지 않고 반출될 수 있음
    - 보세구역이 아닌 외부에서 가공 중인 물품
    - 조지아 세관 영역에서 의도된 용도에 따라 제거된 물품
    - 부가가치세와 소비세가 면제되는 국제 항공과 국제 해상편에 탑재된 물품
  - 다음의 물품은 예외에도 불구하고 수출신고를 진행해야 함
    - 외부에서 가공 중인 물품의 처리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물품 양도 서류를 통관 세관에 제출한 경우

---

101) 조지아 국세청, "Export," 2020. 9. 16., <https://www.rs.ge/LegalEntityCustomsProcedures-en?cat=3&tab=1>, 검색일자: 2021. 7. 13

- 보세구역에 반입된 조지아산 물품으로 해당 물품을 보세구역 내 기업에 양도하는 경우 보세구역 반입 후 90일 이내 해당 양도서류를 등록 세관에 제출한 경우

- 수출물품은 수출신고서 등록 당시의 상태와 원칙적으로 동일해야 함
  - 단 자연적 마모, 운송으로 인한 형질 변경 및 정상적인 보관 중의 자연적 손실 등은 예외로 함
- 수출 신고는 일반적으로 세관에 수출신고서를 제출함으로써 완료되며, 수출물품에 따라 신고 장소와 제출서류가 상이함
  - 국경세관지점(CCP)에서 화물 인도증서(delivery note) 또는 세관신고 관련 필요서류 제출(철 및 비철금속, 고철 또는 차량 수출 제외)
  - 목재 또는 목재 관련 일차 가공품의 경우 화물 인도증서(delivery note) 또는 구매 내역과 함께 목재의 원산지 증명서 또는 구매 증명서를 첨부하여 국경세관지점(CCP)에 제출
  - 국경세관지점(CCP)에서 개인(자연인) 수출신고서(form 4)를 수기로 작성하여 제출
    - 개인이 1만 5천라리 미만의 관세가치를 지닌 상품을 수출하는 경우 또는 해외 영구 거주를 위해 조지아를 떠날 때 내보내는 개인 소지품, 가구 및 가정용품 등의 경우
  - 자동차 수출의 경우 자동차 수출신고서를 조지아 내무부 서비스청(Service Agency of the Ministry of Interior Affairs of Georgia)에 제출
    - 자동차의 범위는 실린더 용량이 50cm<sup>3</sup> 이상이고 엔진 출력이 최대 4kW 이상인 운송수단으로 HS 제8429호, 제8701~8705호, 제8711호 또는 제8716호의 트레일러와 세미 트레일러를 포함함
  - 우편 수출의 경우 우편수출신고서(form N4)를 우편통관세관에 제출
- 수출 통관 시 수출신고서 이외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들은 수입 통관과 마찬가지로 운송서류와 물품계약서류 등이 있으며 이외의 서류들은 수출물품에 따라 상이함

- 운송 서류
    - 자동차로 도로 운송 시 도로 운송장(transport consignment note) 또는 국제 도로수송 서류(TIR-book)
    - 해상 운송 시 선하증권(B/L)
    - 항공 운송 시 항공화물운송장(AWB)
    - 철도 운송 시 철도 화물위탁서(railway consignment note)
  - 물품구매계약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물품 구매 계약서, 송장 또는 기타 결제확인 서류
  - 조지아 법률에 따라 필요한 경우 수출물품 허가, 승인, 인증 확인서 등
- 수출물품의 신고는 일반적으로 세관통관지역(CCZ)에 실제 물품이 존재하는 경우 영업일 기준 30일 이내 이뤄져야 함
- 세관창고에 일시적으로 물품을 보관하는 경우 임시보관 신고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180일 이내 수출신고를 완료해야 하며, 국세청 세관부서는 해당 기간에서 최대 180일을 추가적으로 연장할 수 있음
  - 국제항해 개항지역(경질유와 증중류 저장 지역 제외)에 임시 보관하는 수출물품의 경우 실제 물품을 배치한 날로부터 90일 이내 수출신고를 완료해야 함
  - 철도운송 수입물품으로 세관 영역 내 철도역에 임시로 보관하는 경우 실제 물품을 배치한 날로부터 영업일 기준 90일 이내 수출신고를 완료해야 함
  - 외부 가공절차에 따라 가공한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 가공기간 만료 전 수출신고를 완료해야 함
  - 조지아산 물품으로 자유무역지역(free zone)에 반입된 물품은 자유무역지역 반입일로부터 90일 이내 수출신고를 완료해야 함
- 국세청은 수출신고 취소사유 등의 물품에 대해 결함을 보완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을 제공하며, 해당 기간 내 처리되지 않으면 수출물품을 처분해야 함
- 수출신고 취소 사유로 인해 세관신고서에서 정한 기한 내 수출신고서를 제출하지

- 않거나, 수출 통관 중인 물품을 영업일 기준 5일 이내 세관에서 반출할 수 없는 경우 세관은 수출신고자에게 결함을 보완할 수 있도록 영업일 기준 30일의 기간을 제공함
- 해당 기간 내 신고자가 결함을 보완하지 못하거나 수출신고서의 무효를 요청하지 않는다면 국세청은 해당 물품을 처분해야 함
- 도로 운송 통관의 경우 수출신고를 완료한 물품은 수출신고서와 회계증명서를 세관에 등록한 날부터 영업일 기준 10일 이내 국경세관지점(CCP)에 제출되어야 함
- 수출 통관 중인 차량을 세관 검사장 또는 임시 보관 장소에 반입 완료해야 하는 기간은 운송 거리에 관계없이 수출신고 등록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45일 이내여야 함
- 조지아는 수출세가 별도 없으며 일반적으로 수출 통관 서비스 수수료도 면제되나, 철과 비철금속에 한해 1톤당 10라리에서 160라리의 수수료를 부과함
- 철과 비철금속 스크랩 및 철 또는 비철 금속의 잔여물의 경우 1톤당 160라리
  - 철의 잔류물로 생산한 물품의 경우 1톤당 40라리
  - 비철금속의 미처리 합금의 경우 1톤당 50라리
  - 철도 객차를 처리하여 얻은 철 스크랩의 경우 1톤당 10라리
- 수출 통관 절차는 위험관리시스템에 따라 진행되며 일반적으로 15분 정도 소요된다고 보고됨<sup>102)</sup>
- 수출 사전 신고와 원거리 수출 신고의 경우 화물과 여권검사를 동시 수행하여 약 10분 정도 소요됨
  - 만약 수출검사 대상에 선정되면 통관시간은 최대 1시간 정도 연장될 수 있음
    - 국세청에 따르면, 2016년 사후 통관 감사에 배정된 해외 위탁물 중 1.5% 정도만이 수출검사대상에 해당되며 그 외의 경우 94% 이상의 수출은 검사가 생략된다고 함<sup>103)</sup>

102) UNECE, 2018, p. 51.

103) 이는 대부분의 국경 통관에서 화물 운전자가 차량을 떠나지 않고 통관이 진행됨을 의미함

## 4. 조지아 통관 동향

### 가. UNECE의 2018년 조지아의 통관 동향<sup>104)</sup>

- 조지아는 2016년 유럽과 DCFTA를 체결하면서 신속하고 효율적이며 투명한 관세 서비스를 보장하기 위해 조치를 취할 것에 합의함<sup>105)</sup>
  - 또한 최근 EU가 채택한 연방관세법령 제정과 유사한 입법 및 제도적 약속을 이행하는 방향으로 순조롭게 진행 중임
  
- 국세청은 무역업자의 세관신고 관련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일환으로 관세중개업 활동을 병행하며, 2018년 기준 조지아에 관세중개 산업은 존재하지 않음
  - 관세중개업자의 상습적인 부정행위를 해결하기 위한 개혁조치 중 하나로 국세청에서 관세중개업을 인수했으며 따라서 조지아에는 관세중개인을 위한 어떠한 허가 제도가 존재하지 않음
  
- 조지아는 'EU 공통 환승 절차에 관한 협약(EU Convention on a Common Transit Procedure)'에 동의하고 세관정보시스템(CP)을 EU의 신컴퓨터화된 환승 시스템(New Computerized Transit System, NCTS)과 통합할 준비 중임
  - EU의 신컴퓨터화된 환승 시스템(NCTS)은 EU 회원국의 세관당국 간의 환승 교통량에 대한 사전 정보 교환을 지원하고 세관행정 절차의 자동화를 지원하는 범유럽 세관시스템임
    - 이에 따라 조지아 당국이 발급한 문서와 담보는 EU, EFTA 국가와 터키, 세르비아, 마케도니아에서도 유효하게 됨

104) UNECE, 2018, pp. 56~57.

105) Michael Emerson and Tamara Kovziridze, 2018, p. 55.

- 조지아는 인접국인 이라크와 사우디아라비아와 공통적인 단순화된 환승체제 부재로 인해 중계무역이 방해받고 있음
  - 두 국가가 국제도로운송협약(Transports Internationaux Routiers, TIR)에 서명하지 않음으로 인해 운송시간을 늦추고 조지아를 통과하는 지역 교통의 기능을 복잡하게 하고 있음
    - 해당 국가들에서 출발하는 트럭은 조지아 내부 환승을 인증하는 서류(T1)를 발급받아야 하므로 국경에서 대기시간이 더 길어짐
    - 또한 해당 트럭들은 화물인장(cargo seal)이 없기 때문에 위험관리시스템에 따라 서류 확인과 물품 검사 등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음
  
- 또한 국경을 접하는 터키와 아제르바이잔의 경우 물류기반 시설이 부족하여 국경통관의 혼잡과 지연이 발생되며, 무역거래자들의 통관 완료 시점을 예측하기 어렵게 만들
  - 국경교차지점의 공무원에 따르면 터키의 사르피(Sarpi)와 베일(Vale)과 아제르바이잔의 치텔리 카디(Tsiteli Khati), 쿠라 강(Mtkvari), 초드나(Tsodna) 등 조지아와의 국경교차지점에서 느린 통관절차로 인해 교통이 지연되며 심한 경우 국경통과시간만 하루 이상이 소요될 수 있다고 보고함
  - 무역업자들은 아르메니아와 러시아 연방으로 향하거나 통과하는 화물 운송의 경우 불법 거래와 싸우기 위해 마련된 엄격한 통제 절차를 고려하여 상품과 차량 모두 높은 빈도로 집중 검사를 받는다고 보고함
  
- 조지아 국세청은 언급된 교통 및 통관지연을 완화하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디지털 복합 물류 서비스를 개발하는 것 외에도 인접 국가 및 운송 통로에 걸쳐 절차 및 문서 요건을 추가로 디지털화하고 조화시키는 것을 고려 중임<sup>106)</sup>
  - 조지아 국세청은 세관 영토를 통한 물품의 수출입과 관련된 절차에 대한 포괄적인 정보를 국제 무역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제공함

106) 조지아 재무부와 국세청, *2020 Annual Report*, 조지아 국세청, 2020, p. 24.

- 법률에 따른 특정 품목군에 대한 관세 및 비관세 조치
- 제출할 허가 및 인증 내역
- 허가 및 인증 관련 서류의 발급기관 안내
- 해당 정보는 조지아 국세청이 전자적으로 발급하며 국세청 웹사이트에서 모든 유형의 허가 및 인증서를 단일 창구 원칙으로 전자적으로 요청 및 획득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작업 중임

#### 나. 조지아 국세청의 2020년 통관 동향<sup>107)</sup>

- 국세청은 미국의 수출통제 및 관련 국경보안(EXBS) 프로그램 틀 안에서 관세위험 관리의 체계를 현대화하기 위해 기술 작업을 진행 중임
  - 해당 프로젝트는 2021년에도 계속되며, 이 프레임워크 내에서 자동 데이터 분석 시스템 머신 러닝을 도입할 계획임
- 세계 우편 연합 프로젝트(SECUX)에 따라 조지아 우체국과 국세청 간 양해각서를 체결하였고, 이는 우편 발송에 대한 정보를 사전 교환하는 사전 세관신고의 전자시스템 구축을 위한 노력의 일환임
- 오존층 파괴물질과 혼합물을 식별할 수 있는 특수 장비를 일부 세관통관구역(CCZ)과 국경세관지(CCP)에 배치하여 세관 기술 장비의 현대화를 이룸
  - 유엔개발계획(UNDP)과 조지아 환경보호농업부의 공동사업인 '조지아 몬트리올 의정서 이행을 위한 조치계획' 시행을 위해, 7대의 특수 장비를 세관통관구역(CCZ) '트빌리시', '포티', '바투미' 등 3곳에 배치하고 국경세관지점(CCP) '레드 브릿지', '사다클로-모터웨이', '카즈베기', '사르피' 등 4곳에 배치해 통관 위반을 예방 및 탐지에 기여함

107) 조지아 재무부와 국세청, *2020 Annual Report*, 조지아 국세청, 2020, pp. 32~33.

### 다. 현지 애로사항<sup>108)</sup>

- 유엔유럽경제위원회(UNECE)는 조지아 무역시장과 국제무역의 물류 및 공급망에 종사하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2017년 10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조지아 무역의 효율성, 투명성 및 예측가능성 등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함<sup>109)</sup>
  - 설문대상은 무역업체, 정부기관, 운송업체와 물류서비스 제공자(포워더) 중 광범위한 서비스와 지리적 범위를 가진 업체와 무역시장 지원 기관(협회) 등임
    - 무역업체의 경우 조지아 내 국제무역 참여도가 높은 업체들을 선별하여 65개의 업체들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실시함<sup>110)</sup>
    - 정부기관은 경제지속가능개발부(Ministry of Economy and Sustainable Development), 환경보호농업부(Ministry of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Agriculture), 노동보건 사회부(Ministry of Labour, Health and Social Affairs), 식품의약품안전청(National Food Agency), 국제청 세관부서(Customs Department of the Revenue Service), 세관통관구역(트빌리시, 바투미 CCZ), 국립표준 측정기관(LEPL Georgian National Agency for Standards and Metrology), 인증센터(LEPL Georgian Accreditation Centre) 등이 참여함
    - 운송 및 물류업체는 APM 터미널 포티항(APM Terminals Poti)이 참여함
- 설문조사 대상 무역업체 중 14%만이 골드리스트의 회원인 점을 감안하면, 향후 조지아 내 무역업체들이 골드리스트 회원으로 승격해 그 혜택으로 현재의 애로사항들을 어느 정도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설문에 응한 무역업체 중 대다수는 수출 물량과 자금 회전율이 낮았기 때문에 골드리스트 프로그램에 참여할 자격이 없었으며 향후 기준을 충족하면 골드리스트 프로그램에 참여할 것이라고 밝힘

108) UNECE, 2018, pp. 91~93.

109) UNECE, 2018, pp. 22~25.

110) 설문대상 무역업체의 업종은 산 동물과 식료품이 42%로 가장 높았고, 화학제품 및 관련 제품과 기타제조품이 각각 16%로 뒤를 이었으며 음료와 담배(9%), 공산품(5%), 광물연료·윤활유 및 관련 제품(5%), 기계 및 운송장비(5%) 및 동식물성 기름·지방 및 왁스(3%) 순으로 나타남

### 1) 수입 관련 애로사항

- 부가가치세는 수입물품 통관 후 5일 이내에 전액 지불되어야 하는데, 18%라는 높은 부가가치 세율로 인해 재정 부담이 증가된다고 밝힘
- 높은 항공 운송비용은 무역거래비용을 증가시키는 요인 중 하나이며 이로 인해 해상이나 항공 운송보다 도로운송을 주로 활용한다고 밝힘
  - 트럭은 가장 저렴한 운송수단으로 꼽혔고 설문자 중 33% 정도가 자가용 또는 임대용 트럭을 이용해 운송한다고 답변함

### 2) 수출 관련 애로사항

- 식품관련 무역업체들은 EU에 수출시 EU의 기준에 충족하기 위해 추가적인 비용과 시간을 부담해 수출 잠재력이 약화되고 있다고 밝힘
  - 무역거래비용이 월 총지출액의 20% 이상을 차지한다고 보고한 업체들 중 헤이즐넛(커널, 구운 후 다진 것 등) 수출업체에 따르면 조지아에서 발급받은 아플라톡신(aflatoxin)<sup>111)</sup> 관련 시험증명서를 보유함에도 불구하고 EU로 수출 시 EU 국경에서 재시험을 시행하며 이로 인해 약 200유로에서 600유로 정도의 추가적인 비용과 재시험 결과 통보까지 1주일 정도 시간이 소요되어 큰 손실을 야기한다고 함
  - 건조 및 냉동 과일, 차, 허브 수출업자들은 조지아 내에 미생물학적 검사를 실시하기에 국제적으로 인정된 실험실의 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EU 내 실험실에서 테스트를 수행하는데, 외국 실험실의 높은 서비스 수수료와 샘플 운송비용과 테스트 비용 등 모든 비용을 수출업자가 부담한다고 함
- 중국 시장에 과감히 진출하는 무역업체들의 경우, 중국 통관에 적용되는 행정 절차와 규제 규정에 대한 명확성의 결여 등 수출 기회에 대한 정보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호소함

---

111) 곡물의 곰팡이가 내는 발암성 독소

- 중국은 각 지방마다 고유한 통관 규정과 절차가 있으며, 이러한 규정들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어 동일한 제품을 중국시장에 수출해 온 무역업자들조차 중국 지방당국이 새로운 통관 절차를 시행하고 추가 서류를 요구하거나 새로운 형식을 부과할 때마다 모든 수출이 새로운 경험이 되고 있다고 밝힘
  
- 아르메니아와 이집트로 수출하는 무역업체들의 경우, 국경세관지점(CCP)의 통관 절차와 신고 서류 등에 대한 공식적인 수준의 수수료에 대한 명확성이 부족해 해당 국가들로의 무역이 복잡하다고 밝힘
  
- 조지아에서 한국으로 꿀이나 와인 등의 수출품목에 대한 관세율이 매우 높아 한국시장 진출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함<sup>112)</sup>
- WTO 협정세율 적용 시 조지아산 천연꿀(HS 0409호)에 대한 한국 관세율은 243%이며, 와인(HS 2206.00-9010)은 30%임

---

112)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전문가 간담회, 「조지아 물류보고서」, 2021. 6. 23.

## 참고문헌

### 〈국문자료 및 보고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전문가 간담회, 「조지아 물류보고서」, 2021. 6. 23.

한국무역협회, 「세계무역」, <https://stat.kita.net/stat/world/trade/CtrImpExpList.screen>, 검색일자: 2021. 6. 10.

코트라, 「중국과 조지아 FTA 공식 체결」, 2017. 6. 26., <https://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5/globalBbsDataView.do?setIdx=244&dataIdx=159485>, 검색일자: 2021. 8. 23.

### 〈영문자료 및 보고서〉

조지아 국세청, “Gold list,” 2020. 8. 11., <https://www.rs.ge/LegalEntityAuthorizedPersons-en?cat=1&tab=1>, 검색일자: 2021. 5. 31.

\_\_\_\_\_, “Import,” 2018. 12. 17., [https://old.rs.ge/Default.aspx?sec\\_id=4793&lang=1](https://old.rs.ge/Default.aspx?sec_id=4793&lang=1), 검색일자: 2021. 5. 31.

\_\_\_\_\_, “Structure,” 2020. 6. 17., [https://old.rs.ge/Default.aspx?sec\\_id=5442&lang=1](https://old.rs.ge/Default.aspx?sec_id=5442&lang=1), 검색일자: 2021. 5. 31.

\_\_\_\_\_, “Import,” 2018. 12. 17., <https://old.rs.ge/4793>, 검색일자: 2021.6.20

\_\_\_\_\_, “Procedures,” 2018. 12. 4., [https://old.rs.ge/Default.aspx?sec\\_id=4797&lang=1](https://old.rs.ge/Default.aspx?sec_id=4797&lang=1), 검색일자: 2021. 6. 20.

\_\_\_\_\_, “Documentation to be submitted,” 2018. 12. 17., <https://old.rs.ge/Default>.

- aspx?sec\_id=4795&lang=1, 검색일자: 2021. 6. 20.
- \_\_\_\_\_, “Certificate of origin of goods,” 2019. 2. 27., [https://old.rs.ge/Default.aspx?sec\\_id=5037&lang=1](https://old.rs.ge/Default.aspx?sec_id=5037&lang=1), 검색일자: 2021. 6. 21.
- \_\_\_\_\_, “Deadlines,” 2019. 8. 15., [https://old.rs.ge/Default.aspx?sec\\_id=4799&lang=1](https://old.rs.ge/Default.aspx?sec_id=4799&lang=1), 검색일자: 2021. 7. 12.
- \_\_\_\_\_, “Export,” 2020. 9. 16., <https://www.rs.ge/LegalEntityCustomsProcedures-en?cat=3&tab=1>, 검색일자: 2021. 7. 13.
- \_\_\_\_\_, “Risk Corridors,” 2020. 9. 15., <https://www.rs.ge/LegalEntityCustomsProcedures-en?cat=12&tab=1>, 검색일자: 2021. 7. 14.
- \_\_\_\_\_, “Violation of Customs Law,” 2020. 9. 15., <https://www.rs.ge/LegalEntityCustomsProcedures-en?cat=11&tab=1>, 검색일자: 2021. 7. 19.
- \_\_\_\_\_, “Authorized Economic Operators (AEO),” 2020. 9. 15., <https://www.rs.ge/LegalEntityAuthorizedPersons-en?cat=2&tab=1>, 검색일자: 2021. 7. 20.
- \_\_\_\_\_, “Authorized Exporter,” 2020. 9. 15., <https://www.rs.ge/LegalEntityAuthorizedPersons-en?cat=3&tab=1>, 검색일자: 2021. 7. 20.
- \_\_\_\_\_, “Certificate of Preferential Origin of Goods,” 2020. 9. 17., <https://www.rs.ge/LegalEntityOriginRegimesTreaties-en?cat=2&tab=1>, 검색일자: 2021. 7. 22.
- \_\_\_\_\_, “Release into Free Circulation (Import),” 2020. 9. 16., <https://www.rs.ge/LegalEntityCustomsProcedures-en?cat=1&tab=1>, 검색일자: 2021. 7. 23.
- \_\_\_\_\_, “Auto/Moto Levy Calculator,” <https://www.rs.ge/CarClearance-en?cat=2&tab=1>, 검색일자: 2021. 7. 27.
- \_\_\_\_\_, “Customs Checkpoints,” 2020. 8. 21., <https://www.rs.ge/Contact-en?cat=3&tab=1>, 검색일자: 2021. 8. 4.
- 조지아 법무부, “TAX CODE OF GEORGIA,” 2019. 12. 10., <https://matsne.gov.ge/en/document/view/1043717?publication=152>, 검색일자: 2021. 7. 19.
- \_\_\_\_\_, “CUSTOMS CODE OF GEORGIA,” 2020. 7. 15., <https://matsne.gov.ge/en>

- /document/view/4598501?publication=2, 검색일자: 2021. 7. 19.
- 조지아 재무부, “Tax and Customs Policy Department,” <https://www.mof.ge/en/4531>, 검색일자: 2021. 5. 31.
- 조지아 재무부와 국세청, 2020 Annual Report, 조지아 국세청, 2020.
- 조지아 조세심판위원회, “About Council,” <https://taxdisputes.gov.ge/en>, 검색일자: 2021. 5. 31.
- \_\_\_\_\_, “Applicants Area,” <https://taxdisputes.gov.ge/en>, 검색일자: 2021. 5. 31.
- \_\_\_\_\_, “Decisions of Council(საბჭოს გადაწყვეტილებები)” <https://taxdisputes.gov.ge/4043>, 검색일자: 2021. 5. 31.
- 조지아 통계청, “Employment and Unemployment,” <https://www.geostat.ge/en/modules/categories/683/Employment-Unemployment>, 검색일자: 2021. 6. 8
- \_\_\_\_\_, “Foreign direct Investments,” <https://www.geostat.ge/en/modules/categories/191/foreign-direct-investments>, 검색일자: 2021. 6. 11.
- \_\_\_\_\_, “External Trade,” <https://www.geostat.ge/en/modules/categories/637/export> 및 <https://www.geostat.ge/en/modules/categories/638/import>, 검색일자: 2021. 6. 10.
- \_\_\_\_\_, “External Trade Portal,” <http://ex-trade.geostat.ge/en>, 검색일자: 2021. 6. 10.
- 미국상무부 프라이버시 실드, “Georgia - Import Tariffs,” <https://www.privacyshield.gov/article?id=Georgia-Import-Tariffs>, 검색일자: 2021. 5. 20.
- 조지아-EU DCFTA 협정문, “ARTICLE 17: Movement certificates EUR.1 issued retrospectively,”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PDF/?uri=OJ:L:2014:261:FULL&from=EN>, 검색일자: 2021. 9. 15.
- 조지아-중국 FTA 협정문, “ARTICLE 3.14(5): CERTIFICATE OF ORIGIN,” [http://fta.mofcom.gov.cn/georgia/annex/xdzw\\_en.pdf](http://fta.mofcom.gov.cn/georgia/annex/xdzw_en.pdf), 검색일자: 2021. 9. 15.
- CIA World Factbook, “GEORGIA,” 2020. 9., <https://www.cia.gov/the-world-factbook/countries/georgia/>, 검색일자: 2021. 5. 26.
- China FTA Network, “China-Georgia FTA,” <http://fta.mofcom.gov.cn/topic/>

- engeorgia.shtml, 검색일자: 2021. 9. 15.
- \_\_\_\_\_, “China-Georgia FTA Comes into Force Today,” 2018. 1. 1., [http://fta.mofcom.gov.cn/enarticle/chinageorgiaen/chinageorgiaennews/201801/36885\\_1.html](http://fta.mofcom.gov.cn/enarticle/chinageorgiaen/chinageorgiaennews/201801/36885_1.html), 검색일자: 2021. 8. 23.
- DCFTA, “Agreement,” <http://www.dcfta.gov.ge/en/agreement>, 검색일자: 2021. 6. 11.
- 유라시아 경제위원회(EEC), “Classification of Goods according to the FEACN of the CU,” [http://www.eurasiancommission.org/en/act/tam\\_sotr/departament/KlassPoTNVED\\_TS/Pages/default.aspx](http://www.eurasiancommission.org/en/act/tam_sotr/departament/KlassPoTNVED_TS/Pages/default.aspx), 검색일자: 2021. 8. 4.
- Michael Emerson and Tamara Kovziridze, “Deepening EU-Georgian Relations - what, why and how?,” Rowman & Littlefield International, 2018.
- IMF,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https://www.imf.org/en/Publications/WEO/weo-database/2021/April/select-subjects?c=915>; [https://www.imf.org/external/datamapper/NGDP\\_RPCH@WEO/GEO](https://www.imf.org/external/datamapper/NGDP_RPCH@WEO/GEO), 검색일자: 2021. 6. 8.
- Trade EU, “EU-Georgia Deep and Comprehensive Free Trade Area,” <https://trade.ec.europa.eu/access-to-markets/en/content/eu-georgia-deep-and-comprehensive-free-trade-area>, 검색일자: 2021. 9. 13.
- UNECE, Regulatory and Procedural Barriers to Trade in Georgia, 2018.
- \_\_\_\_\_, Gap Analysis of Current Legal and Technical Framework for Electronic C2C Exchange of Transit Information between Georgia and Neighboring Countries, <https://unece.org/DAM/trans/doc/themes/UNDAC2C/UNDA1213AA-02e14.pdf>, 2014. 10. 28., 검색일자: 2021. 8. 5.
- World Bank, “Types of Tariffs,” [https://wits.worldbank.org/wits/wits/witshelp/content/data\\_retrieval/p/intro/c2.types\\_of\\_tariffs.htm](https://wits.worldbank.org/wits/wits/witshelp/content/data_retrieval/p/intro/c2.types_of_tariffs.htm), 검색일자: 2021. 8. 2.
- WTO, TRADE POLICY REVIEW, 2015. 11. 10., [https://www.wto.org/english/tratop\\_e/tpr\\_e/g328\\_e.pdf](https://www.wto.org/english/tratop_e/tpr_e/g328_e.pdf), 검색일자: 2021. 6. 22.
- \_\_\_\_\_, “Georgia and the WTO,” [https://www.wto.org/english/thewto\\_e/countries\\_e/georgia\\_e.htm](https://www.wto.org/english/thewto_e/countries_e/georgia_e.htm), 검색일자: 2021. 6. 11.

- WTO·ITC·UNCTAD, World Tariff Profiles 2021, [https://www.wto.org/english/ress\\_e/booksp\\_e/tariff\\_profiles21\\_e.pdf](https://www.wto.org/english/ress_e/booksp_e/tariff_profiles21_e.pdf), 검색일자: 2021. 7. 27.
- PWC, “Certificates of Origin,” 2015, [https://www.investingeorgia.org/ru/ajax/downloadFile/567/Certificates\\_of\\_Origin](https://www.investingeorgia.org/ru/ajax/downloadFile/567/Certificates_of_Origin), 검색일자: 2021. 6. 1.
- XE, “USD to GEL Chart,” 2021. 8. 23., <https://www.xe.com/currencycharts/?from=USD&to=GEL&view=5Y>, 검색일자: 2021. 8. 23.

#### 〈국내 웹사이트〉

- 한국무역협회, <https://stat.kita.net>  
코트라, <https://news.kotra.or.kr>

#### 〈해외 웹사이트〉

- 미국 상무부 프라이버시 실드, <https://www.privacyshield.gov>  
유라시아 경제위원회(EEC), <http://www.eurasiancommission.org>  
조지아 국세청, <https://www.rs.ge>  
조지아 법무부, <https://matsne.gov.ge>  
조지아 재무부, <https://www.mof.ge>  
조지아 조세심판위원회, <https://taxdisputes.gov.ge>  
조지아 통계청, <https://www.geostat.ge>  
China FTA Network, <http://fta.mofcom.gov.cn>  
CIA World Factbook, <https://www.cia.gov>  
DCFTA, <http://www.dcfta.gov.ge>  
Eur-lex, <https://eur-lex.europa.eu>  
Lasare, <https://lasare.ge>  
Trade EU, <https://trade.ec.europa.eu>

120

World Bank, <https://wits.worldbank.org>

WTO, <https://www.wto.org>

XE, <https://www.xe.com>

관세연구 21-02  
조지아의 통관환경 연구

---

발 행 2021년 9월 30일  
저 자 정재현 · 김다량  
발행인 김재진  
발행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TEL: 044-414-2114(대) www.kipf.re.kr  
등 록 1993. 7. 15. 제2014-24호  
조 판 및 인 쇄 디자인범신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1 ISBN 979-11-6655-073-7

---

\* 잘못 만들어진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





관세연구 21-02

# 조지아의 통관환경 연구

**kipf**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법연구센터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TEL : 044-414-2114 www.kipf.re.kr



9 791166 550737

ISBN 979-11-6655-073-7